

韓國古代史學會

제199회 정기발표회

- 일시 : 2025년 12월 13일(토) 13:00~18:00
- 장소 :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 주최 : 한국고대사학회·부경역사연구소
- 주관 : 부산대학교 사학과
- 후원 : 삼강문화유산연구원

※ 이 발표자료집은 2025년도 삼강문화유산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한국고대사학회 제199회 정기발표회 일정표

13:00 ~ 13:30	개회사: 여호규(한국고대사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환영사: 백승옥(부경역사연구소 소장)	사회: 홍승우 (경북대학교)
13:30 ~ 14:20	■ 제1주제 고구려 別都 중고기 신라 접경지역의 영역화 城과 戍와 耕種 발표: 이미란(경북대학교) / 토론: 백승옥(부경역사연구소)	
14:20 ~ 15:10	■ 제2주제 고대 중국의 守墓 제도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守墓와 徙民 발표: 안정준(서울시립대학교) / 토론: 장병진(경상국립대학교)	
15:10 ~ 16:00	■ 제3주제 합천 옥전M1호분 출토 로만글라스 발표: 유우창(부산대학교) / 토론: 이동희(인제대학교)	
16:00 ~ 16:30	휴식	
16:30 ~ 18:00	■ 특별강연 나의 한국고대사 연구 발표: 이수훈(부산대학교)	

목차

[제1주제] 중고기 신라 접경지역의 영역화 - 城과 戍와 耕種

발표: 이미란(경북대)	7
토론: 백승옥(부경역사연구소)	28

[제2주제] 고대 중국의 守墓 제도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守墓와 徙民 - 「광개토왕릉비」문 수요인 연호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발표: 안정준(서울시립대)	33
토론: 장병진(경상국립대)	59

[제3주제] 함천 옥전M1호분 출토 로만글라스

발표: 유우창(부산대)	62
토론: 이동희(인제대)	72

중고기 신라 접경지역의 영역화

- 城과 戍와 耕種 -

이 미 란 | 경북대학교

- I. 머리말
- II. 고중세 중국의 변경 안정책과 둔전
- III. 고구려의 변경 경영과 둔전
- IV. 접경지역에서 신라의 戍와 耕種
- V. 둔전의 전환과 고려에서의 둔전
- VI. 맺음말

I. 머리말

상고기의 사로국은 주변 소국이나 정치체를 복속하거나 정복하고 그 재지사회를 재편하거나 재지 세력에게 외위를 수여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영역국가로서의 신라로 성장해왔다. 특히 5세기 무렵 정치적 복속통제의 대상이었던 진한 소국 중 우호적인 재지세력에게 외위를 수여하고 재지사회를 성·촌이라는 행정단위로 편제하여 영역국가로 성장했다. 기존에 신라와 우호적이지 않았던 외부사회에 대해서는 성을 축조하거나 군대를 파견하는 등 군사활동을 단행하며 영역을 확보해 나갔다.

구체적으로 백제나 가야, 고구려 등과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변경 또는 접경지역에는 신라의 이권을 보호·확대하는 요충에 군사거점을 두고 군사를 주둔시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수졸”이 주둔했던 군사거점으로서 여러 성 또는 鎭이 산견된다. 이와같이 신라는 적대적인 공간에 군사거점을 설치하고 戍兵을 주둔시켜 배타적인 지배권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며 영역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戍兵이 주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군량이 전제되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한 무제 시대부터 접경에 장기적인 군사 주둔을 위해 屯田 경작이 시도되었다.

신라에서 접경지역의 수도 식량은 자비부담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매년 식량을 운송해주지도 못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둔전의 존재에 대해서는, 백제 멸망 후 당군이 설치한 평양과 남원의 屯田에 대해 주목된 바가 있다.¹⁾ 신라에 둔전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시대의 屯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安西道 屯田이 8세기 중반에 개척된 패강진 시기에 유래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²⁾ 나아

1) 백남운 저, 하일식 역,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상, 1993, pp.99~102.

2) 안병우, 「고려의 둔전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론』 10, 서울대 국사학과, 1984, pp.25~26.

가 문무왕 11년(671) 설인귀의 서신에 “젊은 과부가 곡식을 나르고 어린아이가 둔전을 하니”라는 구절에 의해 신라에도 屯田이 있었고, <신라단양적성비> “佃畝”가 고려시대와 같이 屯田을 지급받아 경작하고租를 납부하는 둔전 경작민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³⁾ 이후 『구당서』 유인궤전에도 당군이 한반도에 둔전을 경영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고⁴⁾ 『일본서기』 흠명 5년(544)의 “구례산수”의 “耕種”을 屯田으로 이해하는 연구도 제시되었다.⁵⁾ 신라 둔전의 경영방식에 대해서도 戊卒에 의한 경작도 있었지만, 아달성 태수 漢宣이 城民에게 마를 심도록 한 『삼국사기』 기록과 전술한 <단양적성비>의 전사의 사례를 통해 사민된 이후의 둔전 경영방식이나 관둔전에서와 같이 민을 사역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⁶⁾

이상의 연구에서 접경지역에서 주둔한 戍兵은 성이나 진에서 주둔했고 6세기부터 수병의 경작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접경지역에 설치된 모든 戍에서 경종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둔전이라면 그 연원은 어디에 있고 경작형태가 신라의 영역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라의 문헌기록뿐 아니라 최근에 적지만 출토례가 증가하고 있는 문자자료에서도 둔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발표에서는 선학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둔전의 유래와 경작형태를 정리하고, 영역화 과정에서 田畝 처리와 관련된 문제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II. 고중세 중국의 변경 안정책과 둔전

고려는 주지하다시피 북쪽으로는 거란, 여진, 몽고와의 갈등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왜구의 침입으로 국난을 겪었다. 이에 따라 前朝인 신라나 중국왕조에서 시행했던 법제가 참고되었을 것인데,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에 윤관이나 조준 등이 올린 안변책에는 중국 漢 武帝의 故事를 예시로 들고 있다.

<가1> 저 周王之 獫狁 정벌과 漢帝의 匈奴 정복은, 땅을 넓히고 변방을 개척하여[拓土開邊] 백성을 위하고 해로움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었으니, 오늘날과 비교한다면 마땅히 下風에 있습니다.⁷⁾

<가2> 원하건대 漢이 民을 모집하여 변방을 충실히 하여 匈奴를 방어한 故事를 본받아, ①달이나 텅빈 고을의 황무지를 개간한 자에게 20년에 限하여 그 토지에 과세하지 말고 國役に 사역시키지 말 것을 허락하십시오. 오로지 水軍萬戶府로 하여금 ②城堡를 수리하여 세워 그곳에 노약자를 머물게 하고, 멀리까지 정찰하여 烽燧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이 없을 때에는 耕耘·漁鹽·鑄冶로 먹고 살도록 하며, 때때로 배를 만들어 왜구가 이르면 淸野入保하여, 水軍이 배를 내어 그들을 공격하게 하십시오. ... 水軍萬戶와 각 道의 元帥 중에서 ③屯田을 세우고, 戰艦을 수리하고, 人心을 결속하고, 號令을 베풀며 도적을 제거하고 변경을 안전하게 하는 자에게는 섬의 토지를 하사하여 대대로 그 수입을 먹게 하고,

3) 안병우, 「6~7세기 토지제도」 『한국고대사논총』 4집, 1994, pp.322~324.

4) 김창석, 「7세기 신라에 의한 경제통합과 토지제도 개편」 『역사와 현실』 23, 1997, pp.65~66.

5) 김창석, 「신라 縣制의 성립과 기능」 『韓國古代史研究』 48, 2007, pp.141~142.

6) 안병우, 앞의 논문, 1994, pp.311~323.

7) 『東人之文四六』 권10, 표, 林彦 「伐女眞取其地築設城池實入丁戶訖獻功表」, “彼周王獫狁之伐, 漢帝匈奴之征, 所以拓土開邊, 而得爲民去害, 比之今日, 宜在下風”

자손에게 전하게 하소서. ... 8)

<가1>은 최해의 신라와 고려의 사료변려문을 모아 간행한 문집 중 林彦의 「女眞을 정벌하여 그 땅을 취하고 城池를 築設하며 丁戶를 實入을 완료한 후 功을 바치는 表」 내용의 일부이다. 윤관은 12월 부월을 하사받은 이후 13일에 정주에 도착해 14일에 관방을 철거하고 여진을 공격하고 城池 6곳을 쌓았다고 한다. 여기에 6개의 도독부 및 防禦使를 둔 후 채운 丁戶의 수를 열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주왕의 힘윤 정벌과 한무제의 흉노 개척에 비유하고 있다. 한무제의 흉노 정벌 사건이 서주시대 京師를 공격한 힘윤을 周王이 武公과 多友를 보내 그들을 정벌한 사례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한 무제의 흉노 정벌은 지난 B.C.133 마읍전투를 필두로 BC129이후 위청과 광거병 등을 장군으로 삼아 흉노를 축출하고 해서 4군을 설치한 사건을 말한다.

그런데 한 무제의 흉노 축출에 대한 이야기는 <가2>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고려사』 兵志의 둔전 조에는 우왕 14년(1388) 8월에 대사헌 조준이 중앙과 지방의 관제, 역역제도, 안변책 등을 건의한 내용이다. 그런데 안변책을 설명할 때 한무제의 흉노 축출 내용을 “故事”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준이 한무제의 흉노 축출 고사를 모범으로 하여 조준이 제시한 안변책은 ①변방 요새를 구축하고, ②백성을 모집하여 그 요새에 채우고[募民實塞下] ③흉노를 방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본받아 조준이 제시한 구체적인 안변책은 백성들을 채우기 위해[募民實塞下] ④亡邑의 荒地를 개간한 자에게 20년간 과세하지 않고 역도 면제해 주는 우대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백성들을 채우면[募民實塞下] 水軍萬戶府가 그들을 통해 ⑤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게 하며 성보를 수축하고 주둔시키며 봉수도 정비하고 선박도 만들도록 하고 외적이 침입하면 청야입보하게 한다고 한다. 이상의 ⑤를 ⑥“屯田을 세우고, 戰艦을 수리하고, 人心을 결속하고, 號令을 베풀며 도적을 제거하고 변경을 안전”으로 부연하고 있다. 즉 ⑥의 개간 허락과 ⑥屯田은 ⑥의 耕耘·漁鹽·鑄冶 중에서 耕耘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耕耘·漁鹽·鑄冶 중에서 耕耘이 가능하도록 개간을 허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둔전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백성들을 채우면[募民實塞下]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가2>가 『고려사』의 屯田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변방의 개척 방법이 漢 武帝의 대흉노 정책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울지라도, 한무제의 대흉노정책이 나라가 다르고 세월이 지나도 후대사람들에게 대단히 효과적인 정책으로 “故事”로 회자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변경지역 또는 신점령지의 영역화 방식에 대한 하나의 模範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故事로 후대, 특히 약 1000년 후의 고려에까지 되새겨지고 재생되었던 것이다.

한 무제의 대흉노정책이 변경을 개척하여 영역화하는데에 유용한 정책으로 후대에 모범이 된 것은 다만 고려시대만의 일이었을까. 고대 한반도에서도 『한서』나 『후한서』 등의 문헌을 통해 또는 중국왕조와 직접적인 접촉을 했던 고구려를 통해 이미 당시에 실행되고 있었던 방식이 아니었을까.

과문하지만 고대 중국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한서』 식화지에는 한 무제 元鼎 5년(B.C.112)

8) 『고려사』 권82 志36 兵2, 둔전 “...願用漢氏募民實塞下, 防凶奴故事, 許於亡邑荒地開墾者, 限二十年, 不稅其田, 不使國役. 專仰水軍萬戶府, 修立城堡, 屯其老弱, 遠斥候謹烽燧, 居無事時, 耕耘·漁鹽·鑄冶而食, 以時造船, 寇至, 則清野入保, 水軍出船擊之.”

에 上郡, 朔方, 西河, 河西諸郡에 屯田을 주관하는 전관인 開田官을 두고 변방의 요새를 개척하는 斥塞卒 60만명이 변방을 수비하며 屯田을 경작했다고 한다.⁹⁾ 신점령지에 요새를 건설하고 邊郡을 두었는데 기존에는 內郡에서 邊郡에 군량을 공급해왔으나 운송의 수고와 비용이 지나치게 들자 이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戍兵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군량 공급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주로 邊郡에 주둔한 戍兵에게 경작하게 한 것이다. 邊郡 내에서 開田官의 지위, 屯田과 戍兵의 배치 관계 등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전한대의 邊郡 屯田은 지속되었다. 후한대의 경우, 광대한 군사를 보유한 후한 광무제 시기에 건무 5년(A.D.29)에 항복한 병사를 재편하면서 병사 일부에게 內郡에 屯田을 운영하여 군량을 자급하게 하였다고 한다. 건무 6년에 이를 확대하여 후한 통일의 물질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明·桓帝때 邊郡 屯田도 확대되었는데 하서 둔전 외에 西域 伊吾盧에 宜禾都尉를 두어 둔전을 했고 戊己校尉도 車師國 前王庭 柳中城과 後王部 金滿城 서역의 伊尹, 疏勒 등에서 둔전이 추진되었다. 『후한서』 西羌傳, 鄧寇列傳 등에 따르면 황하 연안에 34부 둔전에 17,000명이 경작했다고 하고, 安·順帝 시기에는 서역, 하황, 현도군에도 屯田이 설치되었다.¹⁰⁾ 이처럼 후한 대에는 내지와 변군 모두 둔전 설치가 확대되었는데, 更戍制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둔전에는 募兵한 군사, 변군의 胡騎, 감형된 刑徒 등을 보내 변방 수자리를 채우고 군사시설을 수리하며 둔전을 경영하게 하였다.¹¹⁾

둔전제는 曹魏시대에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한 대와 같이 둔전을 군현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典農部를 신설하여 주관하게 하였다. 전농부 소속의 屯田은 병사가 경작하는 軍屯이 아닌 농민이 경작하는 民屯으로 나뉘었다. 민둔은 군현에 소속되지 않고 전농부의 전농관이 각 둔전에 배치되었다. 민둔은 영천 등 화북지역에 후한 말 쟁란으로 황폐해진 陳荒地나 점령 및 몰수 토지로 충당하였다. 전란으로 유랑하는 농민이나 호족에 隸民, 피정복민등을 屯田客으로 모집하거나 강제하여 둔전을 경작시켰다. 둔전민은 수확의 50%를 납부하였는데, 官牛를 대여하면 수확의 60%를 내야했고 요역도 부담해야 했다. 서진대에는 전농부 관할 둔전은 모두 폐지하여 군현에 편입시키고 둔전민도 일반농민으로 호적에 등재하였다고 한다.¹²⁾ 이로써 위진대에 둔전은 국가 전체 재정에서 비중이 상당히 커졌고, 점전 및 과전제, 北魏와 隋唐의 군전제로 이어지는 국가적 토지분급제의 과도기적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9) 『漢書』 권10, 志24下, 食貨志제4下 “明年, 南粵反, 西羌侵邊。天子為山東不澹, 赦天下囚, 因南方樓船士二十餘萬人擊粵, 發三河以西騎擊羌, 又數萬人度河築令居。初置張掖、酒泉郡, 而上郡、朔方、西河、河西開田官, 斥塞卒六十萬人戍田之<〔二〕師古曰:「開田, 始開屯田也。斥塞, 廣塞令卻。初置二郡, 故塞更廣也。以開田之官廣塞之卒戍而田也。」” 접경지역의 수자리에 군량을 매번 보내지 않고 戍田 또는 “分以屯田, 為貧人耕種, 修理城郭塙壁而已”하는 방법도 있었던 것이다. 즉 고대 중국 왕조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개전관, 둔전관 등을 동반하지 않아도, 접경지역의 戍에 식량을 耕種하는 운영형태를 넓은 의미에서 둔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0) 령평페이 저, 최덕경·김백경 역, 『진한제국 경제사』, 태학사, 2019, pp.325~328.

11) 『後漢書』 80권, 열전16, 鄧寇列傳 “章和二年(A.D.88) ... 護羌校尉張紆誘誅燒當種羌迷吾等, 由是諸羌大怒, 謀欲報怨, 朝廷憂之。... 遂罷屯兵, 各令歸郡。唯置弛刑徒二千餘人, 分以屯田, 為貧人耕種, 修理城郭塙壁而已。”

12) 위은숙, 「고려 전기 전령의 구성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7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pp.37~38.

당대에도 屯田이 경영되는데 당 전령 56조 중 12조가 둔전 관련 내용일 정도로 당의 토지제도에서 둔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당의 둔전이 단지 군사적인 재정기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토지 분급의 물적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된다.¹³⁾ 당령에 따르면 둔전 관할체계는 사농시와 주진제로 나뉘는데 전자는 1둔을 30~20頃, 후자는 50頃을 1둔으로 하였다. 전체 992屯이 있었고 천보 8년(749) 연간 둔전의 수확량은 1,913,960석이었다고 한다. 당대에도 변경에서 병사가 경작하는 屯田과 백성의 役丁을 이용한 營田으로 나뉘었다. 당령에는 둔의 설치와 신설, 역전(휴한지) 규정, 屯官의 자격조건, 耕牛의 배정, 營田 경영에 대한 규정, 둔에서 추수한 각종 곡물의 처리방법과 운송, 이에 대한 관리 및 監察, 둔관의 결손 처리 등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고 한다.¹⁴⁾

둔전은 고대 중국에서 변경지역의 주둔군을 위한 군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책에서 출발했지만 변경지역에 주둔군이 머물면서 수리시설을 만들고 개간하며 경작하여 영속적인 주둔지로 변화시키는 영역화 전략이 되었다. 위진남북조를 거쳐 변경지역뿐 아니라 전란으로 황폐해진 내부에도 둔전이 개발되면서 군둔과 민둔으로 나뉘고 민둔의 경우 유랑민 안정화정책이자 陳田 개간을 통한 公田의 확대 방안으로도 활용되었다.

Ⅲ. 고구려의 변경 경영과 둔전

이와 같이 중국에서의 屯田 전개는 한반도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후한대에 설치되었다는 현도군의 둔전은 동북지방은 고구려뿐 아니라 선비족도 현도 및 요동군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후한의 대응책중 하나였다. 建光 元年(A.D.121), 幽州刺史 馮煥과 玄菟太守 姚光, 遼東太守 蔡諷 등의 고구려 침략, 永建 2년(127)부터 6년간의 南單于를 거느린 張國, 烏桓率衆王과 연합한 烏桓校尉 耿曄, ‘胡兵’ 등이 선비족을 공격했다고 한다. 더불어 幽州·并州·涼州 屯備 戎馬를 정비하였고 順帝 陽嘉 元年(132)에 현도군에 둔전 6부를 설치하여¹⁵⁾ 현도군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고구려의 대외활동을 차단하고자 하였다.¹⁶⁾ 둔전을 기반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장기적인 戍兵은 후한 군사력의 기반이었음을 고구려는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위의 유주자사 관구검이 동천왕 20년(246)에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관구검의 군대가 동천왕의 추격하여 南沃沮까지 추격하고 낙랑에서 퇴각하였다고 전한다.¹⁷⁾ 이때 관구검의 군대가 고구려 내지에 일시적으로 주둔하였지만 점령하지는 못했다. 이는 고국원왕 12년(342) 전연의 모용황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공하여 환도성을 함락시킨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모용황의 근신 韓壽가 “高句麗之地, 不可戍守.”라고 한 것은, 고구려의 내지에 戍를 설치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유지시키기 어

13) 위은숙, 「고려시대 민전의 성립과 그 생산력적 배경」 『민족문화논총』 6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p.12.

14) 위은숙, 앞의 논문, 2019, pp.38~39.

15) 『後漢書』 卷6, 孝順孝沖孝質帝 第6 順帝 陽嘉 元年(132) 12월 丁未, … 庚戌, 현도군 둔전 6부를 다시 설치하였다

16) 김효진, 「2세기 고구려의 對後漢 관계와 국제정세」 『한국고대사연구』 113, 2024, pp.60~62, p.80.

17)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20년조.

그 계기로는 고구려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보기도 하고²⁵⁾, 광개토왕의 남정에서 고구려의 순라병을 수병으로 주둔시킨 뒤에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한다.²⁶⁾ 고구려군이 활동했던 지역이나 고구려 故地였던 곳에 고구려 주둔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고려사』에서 직접적으로 고구려 부곡으로 제시한 다른 기사를 찾을 수 없고 동시대에 편찬된 조선 초의 지리지에서도 해당 부분은 모두 고려의 부곡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杜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충주고구려비>에는 고구려군이 국외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던 상황이 반영되어 있어 주목된다. 비문의 결락이 많아 판독에 이견이 많고 이에 따라 그 해석과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데, 최근 2019년 충주고구려비 발견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판독된 비문의 일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나1> 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奴扶△□□盖盧共◇募人 新羅土內衆人先動□■□□□中□□□
 □城求□□村舍□□□△胜優沙□■□□□□□□□之刺功百二十射功◇□□□節人刺■□□□□六□
 功二百六十四△□十□□□十一□大王國土■□人□□□□□□□□□□□□□□□□□□□□□□□
 □□□□□□□上有之²⁷⁾

<중원고구려비>는 연대가 명확하지 않지만 비문의 내용에서 고구려왕이 동이매금과 복속의례를 거행할 만큼 양국 갈등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기 전인 장수왕 57년(449)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²⁸⁾ <나1>의 앞 부분은 고구려왕과 신라의 동이매금이 의복의 사여와 함께 복속의례를 맺고 각종 위세품을 하사한 뒤에, 12월 23일 영주 순흥으로 추정되는 于伐城에서 회합하여 아마도 신라의 土壤에서 新羅土內幢主 下部 拔位使者 補奴에게 募人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나1>은 전면 9행 10자부터 좌면 2행까지인데, “新羅土內幢主”, “新羅土內衆人”, “村舍”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세기 중반에 고구려는 첫째 신라 영토 내에서 고구려의 幢主와 衆人이 주둔하고 있는 점, 둘째 신라 동이매금의 복속을 근거로 신라 영토 안에서 募人하고 있는 점, 셋째, 노동량을 뜻하는 “숫자+功”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도검이나 활과 관련된 역부를 모집했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村舍”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農家를 뜻하지만, 앞에 고구려의 군사지휘관이 등장하고 “舍”자에 軍營이나 陣地라는 뜻도 있어 ‘村에 설치된 군사시설’이라고 한다.²⁹⁾ 그렇다면 村舍는 군사적인 시설인 동시에 농업과도 관련있는 군사와 농경이라는 두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軍屯田의 경영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락이 많아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체 功의 수 중에 刺功과 射功의 수로 나뉘고 있으므로, 고구려군의 募人은 ‘村에 설치된 군사시설’인 村舍와 관련된 노동력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신라 동이매금의 목인 아래에 신라의 영토 내에 주둔한 고구려군이 ‘村에 설치된 군사시설’인 村舍에

25) 李弘稷, 「高句麗遺民에 關한 一·二의 史料-高句麗僧丘德과 高麗史地理志의 「有疾部曲」-」 『史叢』 10, 고려대학교 사학회, 1965, p.157.
 26) 백승욱, 「문헌자료로 본 泗川 史勿國」 『로컬리티 인문학』 22, 2019, pp.299~306. 장종진,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와 部曲에 대한 시론」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pp.240~214.
 27) 여호규, 「충주고구려비의 단락구성과 건립시기」 『한국고대사연구』 98, 2020, p.122의 판독을 따랐다.
 28) 여호규, 위의 논문, 2020, p.131.
 29) 여호규, 위의 논문, 2020, pp.124~126.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여 어떤 것을 운영했다면, 그것은 한 대부터 위진남북조대까지 볼 수 있는 변경에서의 영역화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구려군이 명백히 “新羅土內”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식량을 고구려 내지에서 운반해오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비문에 나타난 刺功과 射功 외에 신라 내에서 고구려 주둔군은 안정적인 주둔과 영역화를 수행하기 위해 과거 한이나 위진 왕조가 변경에 둔 둔전과 같이 “新羅土內”에서 둔전을 경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 입장에서 신라와의 접경 또는 변경 지역, 신라의 영토 안에서 고구려 세력을 이식하고 영역화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IV. 접경지역에서 신라의 戍와 耕種

고대 중국의 여러 왕조는 일찍이 변경지역에 戍兵을 주둔시키고 이들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屯田을 경영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영역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또한 고대 중국왕조와의 대결에서 고구려는 영역화를 목적으로 한 수자리 설치, 둔전 경영 등의 시도가 영역화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인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접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충주고구려비>에서 고구려군이 신라 영토 내에서 주둔하고 있었고 募人을 통해 신라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었던 점, “村舍”가 군사시설이자 농경의 두 의미를 동시에 갖는 軍屯田과 관련된 점을 근거로, 고구려의 군둔이 신라에 있었다고 추정해 보았다. 그렇다면 신라에서도 고구려와의 대결을 통해, 또는 고대 중국의 史書나 당대 중국왕조의 소식을 통해,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접경지역 등지에 戍兵을 주둔시키고 장기 주둔을 위해 둔전을 경영하고 이것이 안정되면 徙民이나 성·촌과 같은 행정단위로 재편한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신라의 접경지역에서의 설치된 戍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보았다.

<다1>(아달라이사금) 4년 ①춘2월 처음으로 甘勿·馬山에 두 縣을 두었다. ②3월, 長嶺鎮에 순행하여 戍卒을 위로하고 각각 征袍를 사여하였다. ③5년 춘3월 竹嶺을 개통하였다. 倭人이 來聘하였다.³⁰⁾

<다2>이에 신라는 그 上臣 伊叱夫禮智干岐로 바꾸어 보냈는데<신라에서는 大臣을 上臣이라 하는데 어떤 책에는 伊叱夫禮智奈末이라 하였다> ①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칙을 듣기를 청했다. (近江)毛野臣이 멀리 병사들이 둘러싸고 있고 무리가 수천 명인 것을 보고, 熊川으로부터 任那의 己叱己利城으로 들어갔다. 伊叱夫禮智干岐는 ②多多羅原에 머물며 공경하여 돌아가지 않고 ③세 달을 기다리며 칙을 들으려고 자주 청했으나 끝내 선포하려고 하지 않았다. 伊叱夫禮智가 거느린 ④士卒들이 마을에서 걸식하고 있었는데... 上臣은 4개의 村<金官·背伐·安多·委陀가 4개 촌이다. 어떤 책에는 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를 4개 촌이라 하였다.>을 노략질하여 빼앗고 사람과 물건을 다 가지고 본국에 들어갔다.³¹⁾

<다3>壯健한 사람을 뽑아 모두 軍에 입대시켰고, 烽·戍·邏에 두루 屯營과 部伍가 있었다.³²⁾

<다4>眞平王 때에 설씨녀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으나, 正谷에 防秋 갈 순서[番當]가 되었다. ... 沙梁部 소년 嘉實이 ... 설씨녀가 아버지가 늙은 나이에 從軍해야 함을 걱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설씨녀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 번번치 않은 몸으로 嚴君의 역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 설씨녀가 말하기를 “지난 번에 (가실이) 아버지를 편안히 해드렸기 때문에 굳게 가실과 약속하였습니다. 가실은 이를 믿었기 때문에 從軍하여 수년이 흘렀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괴롭고 고생이 심할 것이고, 하물며

30) 『삼국사기』 권2 新羅本紀2, 阿達羅尼師今, “四年 春二月, 始置甘勿·馬山二縣. 三月, 巡幸長嶺鎮, 勞戍卒, 各賜征袍. 五年, 春三月, 開竹嶺. 倭人來聘.”

31) 『일본서기』 권17, 繼體天皇 23년(529) 4월 是月條.

32) 『隋書』 卷81, 列傳46, 東夷新羅 “選人壯健者悉入軍, 烽·戍·邏俱有屯營·部伍”

賊境에 가까이 있어 손에서 무기를 놓지 못하고...”³³⁾

<다5> 3월 백제에서 奈率 阿吒得文·許勢의 奈率 奇麻·物部の 奈率 奇非 등을 보내어 表를 올려 말하였다. … 옛날 印支彌<미상>와 阿鹵旱岐가 있을 때 신라의 핍박을 받아 ①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耕種] 못 하였는데, 백제는 길이 멀어 그 위급함을 구하지 못하였다. 的臣 등이 신라를 왕래함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②논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게 되었다[耕種]고 짐은 일찍이 들었다. 만일 이미 任那를 세웠다면 移那斯·麻都는 자연히 물러났을 것이니 어찌 족히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조를 듣고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신라가 천조를 속이고 칙명을 따르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신라는 봄에 喙淳을 취하고 이어 우리의 久禮山 수자리[我久禮山戍]를 내쫓아 점유하였습니다. ③安羅에 가까운 곳은 안라가 논밭을 일구어 씨를 뿌렸고[耕種], 久禮山에 가까운 곳은 斯羅가 논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는데[耕種], 각각 경작하여 서로 침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移那斯·麻都가 남의 경계를 넘어 경작하다가 6월에 도망하였습니다. 印支彌의 뒤에 온 許勢臣의 때에는<『百濟本記』에는 “우리가 印支彌를 머무르게 한 뒤에 온 既洒臣의 때”라고 하였으나 모두 자세하지 않다> 신라가 다시 남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安羅는 신라의 핍박을 받아 ④농사짓지[耕種] 못함을 말하지 않았는데, 신이 일찍이 듣건대 신라는 매년 봄과 가을에 군사와 무기를 많이 모아놓고 安羅와 荷山을 습격하고자 한다거나 加羅를 습격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³⁴⁾

<다1>는 아달라 4년①, ②와 5년③의 기사이다. 먼저 <다1>-②에 따르면 말갈과 접전하던 함경남도 영흥으로 비정되는 長嶺에 이미 鎭을 설치되어 戍卒이 주둔해 있었고 ②의 시점에 왕이 이곳에 순행했다고 한다. 삼국시대 순행은 일반적으로 새로 편입 또는 점령한 지역에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한 정치 활동이었다.³⁵⁾ 그런데 신라가 영흥에서 말갈과 접전하며 군사활동을 하게 된 것은 2~3세기대가 아니라 빠르면 죽령 이북을 개척한 550년 이후, 늦어도 7세기 무렵 신라의 군사활동이 반영된 기사라고 한다.³⁶⁾ 上代에 보이는 鎭은 전투가 발생할 수 있는 접경지역에서 군사거점으로 설치된 鎭이다. 중대 이후에 보이는 지방지배를 포함한 軍鎭과는 다르지만³⁷⁾ 군사령관인 鎭主와 戍卒이 있었고 최전방에 설치되었으며 상위 군사거점으로 州가 6세기 이후에 설치되었다.³⁸⁾ <다1>-①에서 마산은 충남 서천이나 충주 마산봉수라는 견해가 있고³⁹⁾, 감물은 김천시 개령면 일대의 감물이다. <다1>의 사례를 통해, 접전의 가능성이 있는 최전방 지역에 진을 둔 후, ①과 같이 후방의 안정성이 확

33) 『삼국사기』 권48, 열전8, 薛氏女.

34) 『일본서기』 권19, 흙명 5년(544) 三月 百濟遣奈率阿吒得文·許勢奈率 奇麻·物部奈率 奇非等 上表曰 … 曩者 印支彌 未詳 與阿鹵旱岐在時 爲新羅所逼 而不得耕種 百濟路迴 不能救急 由的臣等往來新羅 方得耕種 朕所曾聞 若已建任那 移那斯·麻都 自然却退 豈足云乎 伏承此詔 喜懼兼懷 而新羅誑朝 知匪天勅 新羅春取 喙淳 仍擯出我久禮山戍 而遂有之 近安羅處 安羅耕種 近久禮山處 斯羅耕種 各自耕之 不相侵奪 而移那斯 麻都 過耕他界 六月逃去 於印支彌後來 許勢臣時百濟本記云 我留印支彌之後 至既洒臣時 皆未詳 新羅無復 侵逼他境 安羅不言爲新羅逼不得耕種 臣嘗聞 新羅每春秋 多聚兵甲 欲襲安羅與荷山 或聞 當襲加羅 頃得書 信 便遣將士 擁守任那 無懈怠也 頻發銳兵 應時往救

35) 김영하, 「신라시대 순수의 성격」 『민족문화연구』 14, 1979, pp.216~224.

36) 선석열, 「『三國史記』 『新羅本紀』 上代 百濟關係記事의 檢討와 그 紀年」 『한국고대사연구』 7, 1994, 342~343쪽에서는 진흥왕 14년(553)에 백제의 동북지역을 공취한 이후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

37) 한준수, 「신라 中·下代 鎭·道·府의 설치와 체제 정비」 『한국학논총』 31, 2009, pp.369~370. 상고기의 鎭은 모두 군사시설로서의 鎭이고, 무열왕 5년에 悉直에 설치된 北鎭이 신라 중대 軍鎭의 시초이지만, 특수 지방행정단위인 하대 軍鎭과도 다르다고 보았다.

38) 이미란, 「상대 신라의 군사거점 鎭의 설치와 고대 부산지역의 영역화 과정」 『지역과 역사』 52, 2023, p.29.

3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7 충청도 한산군조 건치연혁 ; 권14 충주목 봉수조

보된 후에 영토로 재편하고 ③과 같이 도로를 개통시키는 영역화 과정을 알 수 있다.

<다2>는 소지 15년(493) 왜를 방어하기 위한 장봉진과 임해진이 설치된 이후부터 금관가야의 4촌이 이사부의 신라군에게 공격당한 529년까지 여러 시점이 포함된 기사이다.⁴⁰⁾ 上臣 利叱夫禮智干岐는 주지하다시피 이사부를 이르는데 3,000의 신라군을 이끌고 한반도 동남부에서 행군하고 있었다. 소지 15년에 양산 물금 인근에 장봉진, 부산 수영강 하구 배산 일대에 임해진이 설치되었는데 약 26년 후에 上臣 이사부가 이끄는 3,000의 신라군이 부산의 다대포로 비정되는⁴¹⁾ 多多羅原에 주둔하고 있다가 김해 금관가야 관련 4촌을 공격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다2>사건의 3년 후인 532년에 금관가야가 멸망한 후 김해지역이 신라의 영역에 포함되게 되면 가야지역 진출을 위한 군사거점으로서의 鎭은 西進하게 되겠지만 부산지역이 왜에 대한 군사 및 외교거점이기도 하므로 부산지역에 대한 행정지배뿐 아니라 거점성으로서 배산성이 축조되었다.⁴²⁾

그런데 여기서 낙동강 이동지역에 임해·장봉진이 설치되었는데도 다대포에서 3개월 이상 주둔한 이사부의 士卒들이 마을에서 결식했다는 기사가 있다. 즉 이사부가 거느린 신라군이 출병할 때 소지한 군량은 소진했을 것이고 주둔기간이 길어지는데에 대한 군량이 공급되지 않아 신라군이 다대포의 인근지역에서 군량을 공출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만약 529년 당시 거칠산의 재지세력이나 임해장봉鎭이 신라의 지방지배체제에 편제되어 있었다면,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의 사례와 같이 지방지배체제를 기반으로 이사부가 주둔한 다대포로 군량 수급체계가 작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부의 군대가 주둔지인 다대포에서 군량을 공출했다는 점은, 493년에 臨海·長峯鎭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근지역에 行軍 중인 대규모 신라군에 대한 군량 조달이 가능한 안정적인 지방 편제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⁴³⁾ 진과 같은 최전방 군사시설에는 군량이 많이 확보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근지역에 군량을 수급할 체계도 미비했던 것이다.

<다3>는 『수서』동이신라열전의 한 구절로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전반 신라에 대한 기록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면 장건한 자가 군에 입대하였고, 군사시설로는 봉수와 戍所, 邏가 있었는데, 이들 군사시설에는 주둔지[屯營]와 군사조직[部伍]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한다.⁴⁴⁾ 7세기 무렵 신라의 군사시설은 기능적으로 봉수와 戍所와 邏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삼국사기』에서 볼 수 있는 城鎭보다는 하위의 군사시설로 추정된다.

40) 선석열, 「가야신라시기 부산지역 대외교류의 변화와 반전」 『항도부산』 29, 2013, p.29.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공저,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I)』, 일지사, 2009(2쇄), 94쪽. 이근우, 「고대의 낙동강 하구와 왜」 『역사와 세계』 41, 2012, p.7.

『삼국사기』에서 長峯(城鎭)은 왜의 공격지로는 2례(『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유례이사금 11년;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22년), 長嶺(柵鎭)은 말갈의 공격지로 3례(『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일성이사금 6년 8월; 동왕 7년 2월; 권2, 신라본기2, 아달라이사금 4년 3월조)로 등장하고 있다. 후자의 장령진은 함경남도 영흥에 비정되고 소지마립간 15년(493)에 설치된 장령진은 長峯鎭의 오류라는 견해(선석열, 앞의 논문, 2013, 25쪽. 전덕재, 「상고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경영」 『역사문화연구』 45, 2013, 19쪽.)에 따라, 소지마립간 15년에 설치된 장령진을 장봉진으로 표기하겠다.

41) 이근우, 위의 논문, 2012, pp.5~7.

42) 이미란, 앞의 논문, 2023, pp.32~33.

43) 물론 동래북천동고분군에서 출자형금동관과 같은 신라의 위세품이 나타나거나 신라양식토기 출토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면, 부산의 재지세력에 대한 신라의 세력재편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44) 이정빈, 2015, 「신라 중고기의 부방(赴防)과 군역」 『역사와 현실』 97, 한국역사연구회, pp.105~106.

이들 군사시설에 주둔지[屯營]에 주둔한 군사[部伍]들에 대한 정보는 <다4>의 『삼국사기』 설씨녀전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진평왕대의 설씨녀 부친이 맡은 防秋는 원래 북방 유목민족이 가을 추수기마다 침공해오기 때문에 변경지대의 수자리를 이르는 말로, 防戍, 赴防과 같은 의미라고 한다.⁴⁵⁾ 설씨녀 부친을 대신하여 군역[代役]을 가게 된 가실이 3년의 기한으로 부방 즉 수자리로 간 곳은 <다1>에서와 같이 “賊境”이었다. 수자리 복무는 3년이 기한이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 해를 넘길 수 있었다.

접경지역에서 수자리 서는 戍卒의 군량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가1>-②에서 신라의 왕이 정포를 하사하였는데 이는 왕의 순행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다. 변경의 수자리는 설씨녀의 말대로 굶주리고 추위에 고생스럽고 접경지역이므로 전투도 불사해야 할 위험한 곳이었다. 특별한 3년 혹은 6년의 주둔기간의 식량과 의복을 자신이 부담했는지 외부에서 지원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⁴⁶⁾ 수자리로 가는 노정에 드는 식량은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문맥상으로 빈한한 가실이 설씨녀의 부친의 방추를 代役하면서 3년치의 식량까지 가져갔다거나 설씨녀에서 3년치의 식량을 보내주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접경지역에 주둔한 수졸의 식량 조달에 대해 일찍부터 둔전의 가능성이 지적된 기록이 <다5>이다.⁴⁷⁾ 안라를 두고 백제와 신라가 경쟁하던 양상을 전하는 『일본서기』 흠명 4년(544)년에 백제의 성왕이 일본 흠명천황에게 보낸 표문 중 일부인데,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6세기 전반에 백제는 세력을 확장하여 남원으로 추정되는 기문, 섬진강 하류역으로 추정되는 대사를 영유하였다.⁴⁸⁾ <다2>의 사건이 발생했던 529년(백제 무령왕 7년, 신라 법흥왕 16년)에 백제는 加羅의 多沙津을 영유하였다.⁴⁹⁾ 한편 529년 이전에 가라왕과 신라 왕녀의 혼인이 있었고 몇 년 뒤에 신라 왕녀의 종자들이 가라의 곳곳에서 新羅衣冠을 착용하자 가라측과 신라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급기야 신라가 刀伽·古跛·布那牟羅의 3城과 北境 5城을 빼앗았다고 한다.⁵⁰⁾ 소위 근강모야신의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 백제와 신라의 양국 군대가 탁순의 구례모라에 주둔하였고 구례모라성을 축조하고 돌아갔다.⁵¹⁾ 구례모라성의 축조 주체가 백제인지 신라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어서 531년에 백제군은 ‘안라에 이르러’ 걸탁에 백제군이 주둔했다.⁵²⁾

45) 이정빈, 2015, 위의 논문, p.103~105.

46) 박남수, 이재환은 성산산성 목간이 함안 성산산성의 역에 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식량 하찰목간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함안 성산산성은 목간이 서사되었던 시기에는 이미 신라의 접경지역이 아니라 영역으로 편제된 후이고, 성산산성에 있던 지방민들이 3년 이상의 군역인지 30일 또는 60일 한정의 역역인지도 현재 확답할 수 없다. 역역기간이 30일 내지 60일의 기한을 둔 역역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경지역에서의 수의 경우와는 다르다.

47) 김창석, 앞의 논문, 2007, p.141

48) 이근우, 2007. 「웅진시대 백제와 가야」 『백제문화』 37, 백제문화연구소, pp.44~49.

49) 『일본서기』 계체 23년(529) 봄3월 및 시월조

50) 『日本書紀』 繼體天皇 24년(529) 9월조에 久禮牟羅城

51) 『日本書紀』 繼體天皇 24년(529) 9월조에 久禮牟羅城; 김태식, 1997, 「가야의 발전과 쇠망」 『신편 한국사』 17권, 국사편찬위원회, p.358. 안희성, 「안라와 신라의 경계, 대강수」,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p.20에서는 탁순의 멸망은 538년 전후라고 추정하고 있다.

52) 『일본서기』 권17 계체 25년(531) 12월조.

가라왕과 신라왕녀의 혼인과 이혼, 신라의 3성 및 북쪽 5성 점령 등 사건의 발생 시점, 阿利斯等과 己富利知伽, 근강모야신 등의 인물의 정체, 백제 또는 신라가 점령했다는 지역이 어디인지 수많은 논란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현상은, 6세기 전반 백제군이 안라로 인식되는 ‘결탁’에 주둔하거나, 안라와 탁순이 멸망하기 전인데도 백제군 또는 신라군이 구례모라에 주둔하여 구례모라성을 쌓았다는 점이다. 즉 신라군도 백제군도 자국의 영역이 아닌 곳에 군대를 일시적으로 주둔하거나 축성이나 수자리를 설치하는 등의 군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백제나 신라의 군대는 고구려나 왜로부터, 또는 백제나 신라, 가라 등의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명분으로 일시적으로 주둔했다가 재지사회의 용인이나 묵인하에 또는 재지사회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주둔하여 영역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耕種은 사전적인 의미로 ‘논밭을 갈고 곡식을 심다’라는 뜻이므로⁵³⁾ <다5>에서도 “耕種”은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다 즉 농사짓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밀줄을 ‘다스리다, 통치하다’라고 의역해도 의미가 통한다. 그러나 『일본서기』 내에서 다스리거나 통치한다는 의미로 굳이 “耕種”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일본서기』를 통틀어 유독 성왕의 “表”에 인용된 <다5>에서만 7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경종은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즉 경작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6세기 전반 신라가 안라와의 접경지역에 수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한 屯田은, 그 경작주체는 戍兵이었으므로 주둔군이 경작하는 軍屯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례모라성의 축조 주체가 백제인지 신라인지 불분명하고 구례모라성과 “우리(백제)의 구례산 수자리[我久禮山戍]”이 같은 곳인지도 불분명하다. 구례모라성은 문맥상 백제가 축조하여 수자리를 둔 구례산의 군사기지로 볼 수 있지만, 현재 함안 인근에 백제산성으로 볼 수 있는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 다만 <다5>에서 보이는 수자리 위치, 대강수, 안라와 신라가 경종했다고 추정되는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비정한 연구가 참고된다.⁵⁴⁾ 이에 따르면 구례산의 위치는 무릉산과 작대산이고 대강수는 함안 칠원읍을 흐르며 낙동강에 합류되는 광려천으로 추정되며, 광려천을 사이에 두고 서쪽방면은 가야성인 안곡산성, 동쪽방면은 신라성인 무릉산성이 있다고 한다.⁵⁵⁾ 삼국시대 고해수면 시기의 광려천은 지금보다 강폭이 더 넓었고 유량도 상당해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제방이 축조되기 전에는 낙동강과의 합류지점에서 광려천이 범람하고 역류하기도 해서 하천 범람의 피해가 큰 지역이었다.⁵⁶⁾

이에 따라 광려천이 흐르는 함안 칠원지역은, 591년에 건립된 <남산신성비> 제1비에서 “柒吐”,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漆吐”라고 전하고 있고 경덕왕대에는 “漆隄”라고 개명되었다. 모두 제방을 의미하는 “吐”, “堤”가 지명에 들어가 있다. 신라의 영역이 되기 이전의 지명은 『삼국사기』 포상팔국전

53) 『한한대사전』 11권, 245쪽.

54) 구례산과 대강수에 대한 연구사는 안홍좌, 「산성으로 본 6세기 아라가야와 신라」 『아라가야의 산성』, 선인, 2018, pp.6~11 참조.

55) 안희성, 앞의 석사학위 논문, 2020, 44~46쪽.

56) 안희성, 앞의 석사학위 논문, 2020, 52~59. 김재현, 「함안의 자연지리와 산성의 입지」 『아라가야의 산성』, 선인, 2018, pp.71~74에서는 제방 축조 전에는 일제강점기의 지도를 참고해 광려천 하류의 범람지역보다 상류에 경작지가 많았다고 한다.

쟁에 등장한 漆浦⁵⁷⁾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라가 점령한 이후 제방이라는 의미를 지명에 강조한 것은, 광려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신라가 이 지역에 제방을 쌓았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다.⁵⁸⁾ 아쉽게도 칠원지역에 고대의 제방이 발굴된 사례가 없고,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에 하천이 정비되고 제방이 축조된 이후에야 광려천의 하류와 범람원에 경작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5>의 신라 수병의 경종지는 어디로 비정할 수 있을까. 광려천 변 범람원 평야지대로 추정하기도 한다.⁵⁹⁾ 실제로 대구시 칠곡의 팔계평야를 흐르다가 낙동강과 합류하는 팔거천의 경우, 중하류 지점 하천변에 환호로 둘러싸인 청동기시대 취락유적과 삼국시대 우물과 관개시설을 갖춘 수전이 발굴된 사례가 있다.⁶⁰⁾ 그러나 광려천은 전술하였듯이 유량이 많고 폭이 넓어 범람이 잦은 수계였으므로 범람원의 소택지는 위험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유로에서 가장 멀어 범람의 위험이 다소 적은 광려천 중상류지역의 성곽 인근 谷間을 이용한 구릉지 또는 구릉사면 말단부의 개석곡지로 추정된 연구도 있다.⁶¹⁾ 경산 소월리유적에서 6세기대에 서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산 소월리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명문에는 “甘末谷畚”, “谷門弥玆”, “堤上·堤下”, “下只尸谷畚” 등 谷과 堤에 근거한 田畚이 나타나고 있다. 田畚의 성격을 둔전으로 볼 수는 없지만 谷間에 堤를 근거로 개발된 田畚이 존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신라 수병의 경종지는 광려천 인근에 삼국시대 경작지로 볼 수 있는 유적이 현재 발굴되지 않았지만, 범람의 위험이 있는 하천변보다 무릉산이나 작대산의 서쪽 구릉사면에 둔전이 개발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중고기 신라에 둔전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중고기부터 적극적으로 영토확장을 위한 군사활동을 전개했던 신라에서는 成가 설치된 곳이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헌사료나 당대 문자자료에서 屯田을 직접 거론한 사례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후 신라의 둔전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는 절을 달리하여 고찰하겠다.

V. 둔전의 전환과 고려에서의 둔전

중고기 신라의 둔전은 접경지역에서 수병을 통해 경작된 군둔전과 유사한 형태였다. 위진남북조시대에서 볼 수 있듯이 접경지역이 아니라 영토 안에 民屯田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신라에서 적극적으로 영토확장을 위한 군사활동의 역사가 긴데도 불구하고 금석문이나 목간에서 둔전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은 왜일까.⁶²⁾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료는 아래와 같다.

57) 『삼국사기』 권48, 열전8, 물계자전.

58) 안희성, 앞의 석사학위논문, 2020, p.60.

59) 안흥좌, 앞의 책, 2018, p.159.

60)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동천동취락유적』 본문2, 2002, pp.282~286.

61) 강산문화연구원, 『함안 가연리 유적: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및 생활유구』, 2018, 4쪽(안희성, 앞의 논문, 48쪽에서 재인용.)

62) 신라 목간 중에서 7세기 중반에 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월성해자 출토 목간 중에 <월성해자 15호>가 있는데, 앞면에는 × 中 沙喙巴分屯 』 뒷면은 × □文吉過[]으로 판독되는 목간이 있다. 앞면은 굵고 상대적으로 큰 글자로 쓰였고 뒷부분이 파손되어 있다. 뒷면은 앞면보다는 글자가 작고 필체가 달라, 앞면과 뒷면이 연속된 한 시점의 서사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앞면에 “屯”은 대체로 판독이 일치되고 있지만, “巴分屯”앞에 “沙喙”이 있어, “巴分屯”이 인명인지 지명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목간의 검토는 추가

<라1> ①是以後其妻三□□□□□□□□許利之四年 ②小女師文□□□□□□□□公兄鄒文村巴珙
 婁下干支□□□□□□□□前者更赤城烟去使之後者公兄□□□□□□□□異葉耶國法中分與雖然伊□
 □□□□□□□□子刀只小女烏禮兮撰干支□□□□□□□□使法赤城佃舍法爲之 ③別官賜□□□□□□
 弗兮女道豆只又悅利 小子刀羅兮□□□□□□合五人之⁶³⁾

<라2> 문무왕 13년(673) 冬, ... 初, 太宗王滅百濟, 罷戍兵, 至是復置.⁶⁴⁾

<라3> 문무왕 11년(671) 가을 7월 26일에 당 總管 薛仁貴가 琳潤法師에게 편지를 맡겨 보냈다. “... 한쪽 구
 석 궁벽한 작은 땅에서 집집마다 군사를 징발하고 과부가 곡식을 나르고 어린아이가 屯田을 하니[孀姬
 輓粟, 稚子屯田] 지키려 해도 지탱할 수 없고 싸우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高將軍이 거느린 한
 의 기병과 이근행의 번병, 오초의 용감한 수군과 유병주의 사나운 군사들이 ..., 험한 곳에 의지해서 戍
 를 구축하고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闢地耕田] 이는 왕에게는 가슴에 남는 병이 될 것입니다...
 .”⁶⁵⁾

<라4> 근래에 또한 (김)사란(思蘭)이 올린 표문(表文)에서 경(卿: 성덕왕)이 패강에 수자리를 두고자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⁶⁶⁾

<라5> 5년(736) 여름 6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아울러 표문을 붙여 사례하여 아뢰기
 를, “삼가 패강 이남의 땅을 준다는 은혜로운 조칙(詔勅)을 받들어 받았습니다. ... 陛下께서 비와 이슬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해와 달같이 밝은 조칙을 내리셔서 신에게 땅을 주시고 신의 고을(邑居)을 넓혀
 주셔서, 드디어 개간할 수 있는 기약을 갖게 하여 농사짓고 누에칠 자리를 얻게 하셨습니다[遂使墾闢有
 期, 農桑得所].”⁶⁷⁾

<라1>은 550년 이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양적성비>의 7행 15자부터 15행 9자까
 지이다. 선학들의 연구에 따라 이 비는 진흥왕대의 죽령 이북에 대한 영역 확장에서 공훈이 있는 적성
 야이차 등의 유족 등을 포상하고 이와 같이 영역 확장에 기여하는 자를 포상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한
 다. 그 중에서 <라>에 소개한 부분은 적성 야이차의 공적에 따라 그의 가족 등이 받는 은전에 대한
 내용이다. 주지하다시피 상단이 파손되어 있어 비문의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 선학들의 연구에
 따라 야이차는 사망했으므로 그의 처와 연소한 子女 5인에 대한 은전의 내용이다.⁶⁸⁾

다만 여기서 유의하고 싶은 부분은 ①부분은 “許利之四年”으로 끊어 읽어⁶⁹⁾ 어떤 종류의 은전의
 기한이 4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을 유의하고 싶다. 은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외위
 수여, 赤城烟의 更 면제, 야이차의 재산 상속, 佃舍 6家 등으로 제시되었는데⁷⁰⁾ 佃舍가 집단농업인

자료가 나타날 때까지 보류하겠다.

63) 주보돈, 「단양적성비」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35.

64)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6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秋七月二十六日조.

66) 『文苑英華』 권제471 翰林制詔 蕃書4에 전하는 「勅新羅金興光書」 “近又得思蘭表稱 知卿欲於浪江置戍 ”

67)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35년(736) 夏六月, 遣使入唐賀正, 仍附表陳謝曰, “伏奉恩勅, 賜浪江以南地境. 臣生居海裔, 沐化聖朝. 雖丹素爲心, 而功無可効, 以忠貞爲事, 而勞不足賞. 陛下降雨露之恩, 發日月之詔, 錫臣土境, 廣臣邑居, 遂使墾闢有期, 農桑得所. 臣奉絲綸之旨, 荷榮寵之深, 粉骨糜身, 無由上荅.”

68) 鄭求福, 「丹陽新羅赤城碑 內容에 대한 一考」 『史學志』 12, 檀國史學會, 1978, pp.117~129. 다만 처가 3인이라는 점, 야이차의 小女 사문에게 외위를 사여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武田幸男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1979(최경선 역, 진흥왕대의 신라 적성 경영- 武田幸男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1979-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 22, 2017)을 참조.

69) 鄭求福, 앞의 논문, 1978, p.117.

지, 적성연이 사역이 강제적 노역인지는 논란이 있다.⁷¹⁾ 佃舍가 사전적으로는 ‘경작하다’라는 의미지만, 佃은 소작인이라는 뜻도 있어서, 국가에 속한 일정한 토지와 농업도구 등을 받아 토지를 경작하고 지대를 납부하며 균역을 부담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영농단위로 이해된다.⁷²⁾ 이에 따라 ②부분의 ‘國法에서 부여받은’ 토지를 4년간 佃舍 6家를 통해 경작한 생산물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았다고 이해하고자 한다.

赤城은 주지하다시피 죽령 이북으로 신라가 진출하기 위한 관문이자, 진흥왕 12년(551)에 성공한 “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⁷³⁾의 개척에서 기점을 해오던 지역이다. 죽령이북을 점령하기 전에도 적성 인근은 신라의 접경지역으로써 신라군이 오랫동안 戍와 같은 군사거점이 있었을 것이므로, 신라군은 <다5>에서 본 바와 같이 재지세력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인근 지역을 개간하고 둔전을 개발했을 가능성에 대해 선학들의 지적이 있어왔다.⁷⁴⁾ 다만 <단양적성비>에서 수병이 경작했다는 기록이 없이 “赤城佃舍法”, “更赤城烟去使之”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다5>에서 확인된 戍兵에 의한 경작이 아니라, 외위를 받은 재지세력의 협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다가 적성의 영유가 확실해지던 시점에 접경지역의 재지사회를 신라에 의해 “赤城烟”으로 편제되고 “…使法”과 “赤城佃舍法”과 같은 신라의 “국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단위로 전환된 것이다.

여기서 <단양적성비>의 시점은 신라군이 주둔하던 접경지역에서 신라의 행정단위로 편입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라군이 주둔하며 개발·경작했던 軍屯田은 접경지역에서 행정단위로 편제되면서, 더 이상 군둔전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한정적으로 경작할 권리를 사여하는 대상 즉 公田⁷⁵⁾의 영역으로 전환된 것이다. 둔전을 포함하여 신라의 영역확장을 통해 획득한 대규모의 토지는 신라의 국법에 의해 王土 또는 公田으로 일단 전환된 후 영토 확장에 기여한 공로를 일정하게 평가한 결과로 有功者들에게 부여되었다고 한다.⁷⁶⁾

고려에서도 점령지의 수병을 통해 개척된 둔전은 2과공전에 속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개인이나 사찰 등에 사여되었다. 고려 현종때 조정 반대를 무릅쓰고 玄化寺에 安西道 屯田 1,240결을 시주했다는⁷⁷⁾ 사례를 보면, 국가 왕실이 가장 쉽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던 지목이 둔전이었다고 한다.⁷⁸⁾

70) 정구복, 1978, 앞의 논문, p.128.

71) 武田幸男, 앞의 논문, 1979, pp.168~169. <단양적성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추후에 별도의 논고를 기약하겠다.

72) 안병우, 「6~7세기의 토지제도」 『한국고대사논총』 4, 1995, p.323.

73)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

74) 안병우, 앞의 논문, 1995 ; 김창석, 앞의 논문.

75) <경주송복사비> “其成九原 則雖云王土 且非公田” 公田의 개념에 대해서는 李佑成, 「新羅時代의 王土思想과 公田 -大崇福寺碑 및 鳳巖寺 智證碑의 一考-」 『趙明基華甲紀念 佛教史學論叢』, 1965 ; 『韓國中世社會研究』, 일조각, 1991 및 위은숙, 「고려시대 토지개념에 대한 재검토 -私田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4, 한국사연구회, 2004 참조.

76) 김창석, 「통일신라기 田莊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1, pp.83~85. 항복한 골별국왕 아음부나 금관가야 구해왕에게 준 전택과 전장 또는 식읍, 대가야 정벌에 대한 포상으로 하사한 전이나 자칭했던 關川不毛之地, 문무왕 9년(669)에 김유신, 김인문 등에게 나누어 주었던 馬陔, 김인문의 수봉지처 등이 그것이다.

77) 『고려사』 세가 권제4, 顯宗 11년, “八月 丙戌 王以安西道屯田一千二百四十結, 施納于玄化寺, 兩省再三論

고려는 군둔과 민둔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확보된 공전으로서의 둔전은 고려왕조 내내 왕실, 권세가 등에 의해 침탈된 기록이 산견된다.⁷⁹⁾

<라2>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신라 통일기에도 군사적 갈등 지역에 戌의 치폐가 반복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둔전의 가능성이 있다. <라3>은 문무왕 11년 당 총관 설인귀가 보낸 편지이다. ‘한반도에 당군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영역화를 진행하면’이라는 가정이지만 당군이 구 백제지역을 영역화하는 방식과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孀姬輓粟, 稚子屯田”이라는 표현은 신라의 긴박한 상황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당에서처럼 신라도 둔전을 경영했다는 증거로 제시되곤 한다.⁸⁰⁾

통일전쟁기를 거치면서 수병의 주둔을 통한 둔전 개발이 영역화의 한 방식으로 확고해졌다는 점은 8세기 중후반부터 패강이남의 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라4>는 『文苑英華』에 실린 경덕왕 4년(735)에 당 현종이 신라사신에게 패강 이남의 영유권을 인정하겠다는 조칙의 일부이다. 여기서 “於溟江置戌” 즉 패강 이남의 땅을 지키기 위해 수자리를 둔다는 것은, 패강 이남의 땅을 영유하기 위한 鎭戍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라4>를 받은 후 경덕왕이 올린 표문인 <라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6>은 성덕왕이 당이 “賜溟江以南地境”하여 “錫臣土境 廣臣邑居”한 사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 지역의 영역화를 “墾闢”하여 農桑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의 민호 28,200호를 추려 당의 내지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당시 抽戶대상자는 평양성과 그 부근의 거주자 중에서 빈약자만 남겨두고 중산 이상의 계급과 壯健者를 추린 것이었다 한다. 이후 한강 이북이 거의 방치되어 있었으므로⁸¹⁾ 말갈과 발해가 이 지역을 차지했다고 하지만 간벽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관용적 표현만은 아닐 것이다. 결국 패강 이남을 영역화하는 실질적인 과정 및 절차는 墾闢 후 農桑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후 신라는 패강진을 平山에 설치하고⁸²⁾ 민호를 옮겨 진을 강화하였다.⁸³⁾ 이때 옮겨진 민호는 군호적인 성격이었다고 한다.⁸⁴⁾ 후삼국시기 궁예의 수중에 들어간 패서도에는 905년 13진이 설치되어⁸⁵⁾ 계속 군사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고려 초에도 태조왕건은 패서호족들이 개척한 북단근거지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변방세력으로서의 기능을 이용하여 북방수비체제를 편제하였다. 후삼국이 정패하고 있던 무렵에 삼국의 접경지대에 진을 설치하고 백성을 거주케 하였으며 연안과 북방에 設鎭, 築城, 徙民하여 안정시키려 하였다. 사민의 목적이 방수와 토지경작이었으므로 둔전 경작에도 참여했을 것

駁, 不納.”

78) 위은숙, 앞의 논문, 016, p.12.

79) 『고려사』 권제32, 食貨志1, 전제, “恭愍王五年六月 下旨, “一, 西北面土田, ... 近來, 權勢多所兼并…” ; 권36, 兵志2, 둔전 “三年(1377) 三月 崔瑩言於禔曰, “喬桐·江華, 乃倭賊防戍之地也, 兩處土田之出, 皆入兼并之門, 私費何益?...” ; (우왕 원년(1375)) 十月 備北元, 諸軍久屯北界. 北界舊無私田, 官收租以充軍糧, 後勢家爭占爲私田, 以故轉餉不繼, 取糧於民, 民甚苦之, 安州以北, 尤受其害

80) 안병우, 앞의 논문, 1994, pp.317~318.

81) 이기동, 「신라 하대의 패강진 - 고려왕조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학보』 4, 일지사, 1976, p.4.

82) 이기동, 위의 논문, pp.9~10.

83)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선덕왕 3년 2월.

84) 이기백,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81(재판), p.232.

85) 『삼국사기』 권 50, 궁예전

으로 추정된다.⁸⁶⁾

이와 같이 패강 이남을 개척하며 둔전으로 확보한 토지는 公田에 속했을 것이므로, 현종 11년(1020)에 안서도 둔전 1,240결을 현화사에 시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⁸⁷⁾ 안서도는 안서대도호부가 있던 海州일대인데, 북진을 추진하던 고려에서 안서도는 후방이다. 둔전은 접경지역이 군주둔지에 가깝고 설치가 용이한 신점령지에 설치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⁸⁸⁾ 안서도에 둔전이 설정된 때는 신라가 패강진을 개척한 8세기, 구체적으로는 경덕왕 7년(748)에 패서를 경략하고 선덕왕 3년(782) 패강진을 설치하고 민호를 사민시킨 시기부터 유래해서 고려까지 이어졌다고 한다.⁸⁹⁾

이와 같이 신라의 둔전은 고려에까지 그 명맥이 이어졌다. 고려의 전제가 당제를 모방했다는 식화지 전제 서문의 기록으로 보아 각종 토지제도의 법령을 정할 때 당령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또 당령과의 차이는 신라대부터 내려오는 토지개념과 법제가 나말여초의 변혁기를 거쳐 변형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⁹⁰⁾ 고려의 토지 특히 둔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라 멸망시에 신라정부는 府庫를 봉인하여 고려에 넘기고 郡縣의 각종 기록도 넘겼다고 한다.⁹¹⁾ 신라 말 황폐화된 토지, 새로 개간되거나 편입된 토지 등의 변화도 있겠지만 신라 정부의 토지 대장과 지목 등은 대체로 고려정부에 인계되어⁹²⁾ 고려 초의 재정기구 정비의 기초자료가 되었을 것이다.⁹³⁾ 이에 따라 신라의 토지지목을 고려에 전환시켜 등록시킬 때 토지의 지목이나 성격이 계승된 점도 있을 것이고 변화도 있었을 것이다. <신라 촌락문서>에서 烟受有田畝는 국가가 농민에 토지분급했다는 이념이 내포된 토지로, 고려시대의 民田에 비견되는 公田에 속하고⁹⁴⁾ 이에 따라 연수유전답과 함께 합계된 其村官謨畝와 內視令畝도 公田으로 간주된다. 내시령답은 고려의 전시과보다 중국의 직분전과 유사한데⁹⁵⁾ 당의 균전제하에서 직분전과 관청 공해전은 공전으로 분류되었다.⁹⁶⁾

고려시대의 군수의 가장 큰 재원은 民田의 조세였는데, 京倉으로 운반되어 중앙군의 군수로 쓰이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북서양계에 이송되어 주둔군의 군수로 충당되었다. 고려에서 防戍 중의 식량은 국가에서 지급했는데⁹⁷⁾ 북서양계지역은 모든 壯丁이 주둔군에 소속되어 방수하도록 했으므로⁹⁸⁾ 항상적인 軍需가 필요했다. 양계 지역은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여 운송이 지극히 곤란하였는데, 주둔군과 거주민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군량을 조달하는 둔전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둔전은 변방

86) 안병우, 앞의 논문, 1984, p.34.

87) 『고려사』 권제4, 顯宗 11년 八月 丙戌

88) 안병우, 앞의 논문, 1984, p.23.

89) 안병우, 앞의 논문, 1984, pp.25~26.

90) 위은숙, 앞의 논문, 2004, pp.82~84.

91)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論曰… 而乃不待告命, 封府庫, 籍郡縣以歸之…”

92) 위은숙, 앞의 논문, 2004, p.99.

93) 『고려사』 권1, 태조원년 6월 무진 “今悉從新羅之制, 其名義易知者, 可從新制.”

94)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 1992, p.200.

95) 안병우, 앞의 논문, p.296.

96) 위은숙, 앞의 논문, 2004, p.76.

97) 이기백, 앞의 책, 1981, pp.215~216.

98) 이기백, 앞의 책, 1981, 252.

방위라는 군사적 측면과 군수의 운용이라고 하는 국가재정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양계의 民田에서 수납된 조세는 京倉에 납부되지 않고 직접 군수에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⁹⁹⁾ 조운의 비용을 덜기 위해¹⁰⁰⁾ 방수군과 閑民을 동원해 閑曠地를 둔전으로 경영하여 국초부터 둔전이 설치되었다.¹⁰¹⁾

현종 15년(1024) 正月 都兵馬使奏, “發西京畿內河陰部曲民百餘戶, 徙嘉州南, 屯田.”이다. 거주둔전은 청천강 북단에 있던 둔전으로 고려의 북방개척으로 설치한 둔전으로, 광종년간에 축성을 계기로 설치되었다고 한다. 진출방법은 축성과 설진 사민이었다. 축성을 통해 거주 일대의 지배를 영속적이고 완전하게 장악하려는 의도이다. 광종대의 축성 후 성종 14년까지 군사체제하에서 군정관이 이 지역을 통치했을 것인데, 방수군이 주둔하며 진무활동을 전개했을 것이며, 이 방수군의 군량확보를 위해 둔전이 설치되었을 것이다.¹⁰²⁾ 그러다가 현종 15년에 원래는 성에 주둔한 방수군이 경작했던 둔전에 부곡민을 사민시켜 둔전을 경영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경작자의 전환은 해당 지역의 영역화의 마무리단계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고려에는 양계지역 외에 동해안지역에도 둔전이 많았다고 전하는데, 이 지역은 동여진의 침략에 항상 시달리는 지역으로 고려 태조대부터 대대적인 축성이 있었다고 한다. 태조 13년 2월에 昵於鎭에 성을 쌓고 神光鎭으로 개명했으며 徙民하여 채웠으며, 南彌秩夫 北彌秩夫二城이 모두 항복했다.¹⁰³⁾ 현종 2년(1011) 8월 淸河·興海·迎日·蔚州·長鬐에 축성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의 군수를 조달하기 위해 설치한 沿岸屯田을 농장으로 불렀다고 한다. 문종 4년의 安義鎭의 榛子農場에 성을 쌓아 寧朔鎭으로 삼아 여진의 침략을 막도록 했고, 선종 원년에는 동여진이 흥해군의 모산진농장에 침입했다가 수졸들에게 격퇴당했다고 한다. 이 수졸들이 모산진농장의 둔전을 경작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연해지역의 둔전은 고려 조선초까지 확인된다.¹⁰⁴⁾

이상의 검토를 통해 고려의 양계와 동해안지역에는 이와 같이 軍屯田으로 불릴만한 곳이 있었으며, 이들 군둔전의 설치와 개발 등은 신라의 둔전 경영방식에서 유래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군둔과 민둔으로 나뉘던 고려의 둔전과 달리, 신라에서는 사료의 부족때문인지 민둔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신라의 둔전은 접경지역에서 주둔군의 장기 주둔을 지탱하기 위한 군량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한 이후 접경지역이 신라의 영역으로 재편되면 유공자에게 사여되거나 공전의 다양한 지목으로 변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라의 둔전에 대한 기록이 고려에 비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매우 적은 사료에서 산견되는 신라의 둔전 경영은 고대 중국과 고구려의 영향으로 수용되어, 중고기 신라의 영토확장의 한 전략이자 公田확보의 한 방법이었다. 또한 통일 후 패강 이남 지역의 개척의

99) 안병우, 앞의 논문, 1984, p.11. 『고려사』 권제32, 食貨1, 전제 “恭愍王五年六月 下旨, “一, 西北面土田, 未嘗收租, 委之防戍, 其來尚矣. 近來, 權勢多所兼并…”

100) 『고려사』 권82, 병지2 둔전조

101) 강진철, 203~205.

102) 안병우, 앞의 논문, 1984, p.27~28.

103)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3년 2월

104) 『조선경국전』 하 정전 둔전조 “前朝置陰竹屯田. 又於沿海州郡. 皆有屯田. 以資軍食. 法久弊生. 有其名而無其實. 當其收也. 爲戍卒者或自備而納之. 或稱貸而益之. 不堪其苦而逋逃者多矣. 不惟軍食不繼. 而兵額亦減. 弊莫大焉.”

한 방식으로도 활용되었다가 고려의 토지제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공저,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Ⅱ)』, 일지사, 2009(2쇄).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동천동취락유적』 본문2, 2002.
령평페이 저, 최덕경·김백경 역, 『진한제국 경제사』, 태학사, 2019.
백남운 저, 하일식 역,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상, 1993.
이기백,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81(재판).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단양적성비」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 김영하, 「신라시대 순수의 성격」 『민족문화연구』 14, 1979.
김재현, 「함안의 자연지리와 산성의 입지」 『아라가야의 산성』, 선인, 2018.
김창석, 「통일신라기 田莊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1.
김창석, 「7세기 신라에 의한 경제통합과 토지제도 개편」 『역사와 현실』 23, 1997.
김창석, 「신라 縣制의 성립과 기능」 『韓國古代史研究』 48, 2007.
김효진, 「2세기 고구려의 對後漢 관계와 국제정세」 『한국고대사연구』 113, 2024.
백승옥, 「문헌자료로 본 泗川 史勿國」 『로컬리티 인문학』 22, 2019.
선석열, 「『三國史記』 「新羅本紀」 上代 百濟關係記事의 檢討와 그 紀年」 『한국고대사연구』 7, 1994.
선석열, 「가야·신라시기 부산지역 대외교류의 변화와 반전」 『항도부산』 29, 2013.
신가영, 「광개토왕비문의 ‘安羅人守兵’에 대한 재해석」 『東方學志』 178, 2017.
신광철, 「4세기 고구려 南·北道를 통해 본 고구려-전연 戰役 재구성」 『군사』 132, 2024.
안병우, 「고려의 둔전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론』 10, 서울대 국사학과, 1984
안병우, 「6~7세기 토지제도」 『한국고대사논총』 4집, 1994.
안희성, 「안라와 신라의 경계, 대강수」,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여호규,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 南道와 北道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1, 한국사연구회, 1995.
여호규, 「충주고구려비의 단락구성과 건립시기」 『한국고대사연구』 98, 2020.
안홍좌, 「산성으로 본 6세기 아라가야와 신라」 『아라가야의 산성』, 선인, 2018.
위은숙, 「고려시대 민전의 성립과 그 생산력적 배경」 『민족문화논총』 6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위은숙, 「고려 전기 전령의 구성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7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이근우, 「웅진시대 백제와 가야」 『백제문화』 37, 백제문화연구소, 2007.
이근우, 「고대의 낙동강 하구와 왜」 『역사와 세계』 41, 2012.
이기동, 「신라 하대의 패강진 - 고려왕조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학보』 4, 일지사, 1976.
이미란, 「상대 신라의 군사거점 鎭의 설치와 고대 부산지역의 영역화 과정」 『지역과 역사』 52, 2023.
이정빈, 「신라 중고기의 부방(赴防)과 군역」 『역사와 현실』 97, 한국역사연구회, 2015.

李弘稷, 「高句麗遺民에 關한 一·二의 史料 - 高句麗僧丘德과 高麗史地理志의 「有疾部曲」 -」 『史叢』 10, 고려대학교 사학회, 1965.

장종진,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와 部曲에 대한 시론」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전덕재, 「상고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경영」 『역사문화연구』 45, 2013.

鄭求福, 「丹陽新羅赤城碑 內容에 대한 一考」 『史學志』 12, 檀國史學會, 1978.

최경선 역, 진흥왕대의 신라 적성 경영 - 武田幸男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1979 -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 22, 2017.

한준수, 「신라 中·下代 鎭·道·府의 설치와 체제 정비」 『한국학논총』 31, 2009.

「중고기 신라 접경지역의 영역화 - 城과 戍와 耕種」에 대한

토론문

백승옥 | 부경역사연구소

발표자께서는 신라의 영역 팽창 과정에서 접경지역의 성과 진에 주둔한 戍兵이 경작을 하였고 이를 屯田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둔전 경영은 고대 중국과 고구려의 영향으로 수용되었다고 보았다. 신라 영토확장의 한 전략이자 公田확보의 한 방법이기도 한 둔전은 통일 후 패강 이남 지역 개척의 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가 고려 토지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였다.

문자자료에 확인되지 않는 신라(중고기) 둔전에 대해 이러한 결론을 추려낸 것은 발표자의 대단한 노력의 산물로 보인다. 발표자는 논지 전개를 위해 실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광개토대왕릉비>, <중원고구려비>, <단양적성비>, <월성해자 15호 목간>, <경주송복사비>, 『삼국사기』,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우리 측 사료는 물론, 한서 『後漢書』, 『隋書』, 『文苑英華』(北宋, 1013) 등의 중국 측 자료들뿐만 아니라, 『일본서기』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당 시기 전공자들의 논문도 다수 읽고 이 글을 작성하셨다. 노력에 敬意를 표하면서 몇 가지 제안과 질의를 드리고자 한다.

1. '제목과 목차 수정을 통해 주장하는 바의 명확성 提高' 제안

: 결론이 신라가 주변 지역으로 팽창해 나갈 때 屯田을 경영했다는 것이라면, ①「신라 중고기 접경지역 屯田 경영」이라고 함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둔전 경영에 대한 직접적 사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제목이 부담이 된다면, ②「신라 중고기 접경지역 屯田 경영에 대한 시론적 검토」나, ③「신라 중고기 접경지역에서의 戍와 耕種」을 권유드린다. ②와 ③의 경우라면, 둔전 경영에 대한 가능성을 강조하는 내용 정도의 서술이면 좋겠다는 것이 토론자의 소견이다. 목차도 II장과 III장을 하나의 장으로 하고 2개의 절로 나누고(절을 나누지 않는 방법도 좋을 것임), IV장과 IV장도 2개의 절을 가진 하나의 장으로 하는 것을 제안드린다. 논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제언입니다.

- I. 머리말
- II. 주변 국가의 변경 안정책과 둔전
- III. 신라 중고기 변경 경영과 둔전
 - 1. 戍와 耕種
 - 2. 둔전의 전환
- IV. 맺음말

2. '耕種'관련 핵심 사료 <다5>에 대하여.

『일본서기』 권19, 흠명 5년(544) 3월조,

“百濟遣奈率阿毛得文·許勢奈率 奇麻·物部奈率 奇非等 上表曰 … 今의臣·吉備臣·河內直等 咸

從移那斯·麻都指搗而已。移那斯 麻都 雖是小家微者 專擅日本府之政。… 曩者 印支彌 未詳與阿鹵旱岐在時 爲新羅所逼 而不得耕種 百濟路迴 不能救急 由的臣等往來新羅 方得耕種 朕所曾聞 若已建任那 移那斯·麻都 自然却退 豈足云乎 伏承此詔 喜懼兼懷 而新羅誑朝 知匪天勅 新羅春取喙 淳 仍擯出我久禮山戍 而遂有之 近安羅處 安羅耕種 近久禮山處 新羅耕種 各自耕之 不相侵奪 而移那斯 麻都 過耕他界 六月逃去 於印支彌後來 許勢臣時百濟本記云 我留印支彌之後 至既洒臣時 皆未詳 新羅無復侵逼他境 安羅不言爲新羅逼不得耕種 臣嘗聞 新羅每春秋 多聚兵甲 欲襲安羅與荷山。或聞 當襲加羅 頃得書信 便遣將士 擁守任那 無懈怠也。頻發銳兵 應時往救。是以任那隨序耕種 新羅不敢侵逼。而奏百濟路迴 不能救急 由的臣等往來新羅 方得耕種 是上欺天朝 轉成姦佞也。

발표자는 이 사료를 바탕으로 신라가 접경 지역에 耕種하였으며, 곧 접경지역에 屯田을 경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료가 과연 신라가 접경지역에 경종을 하고 屯田을 경영한 것을 보여주는 사료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서기』 권19, 흠명 5년(544) 3월조 기사의 전반적 내용은 백제가 왜에 사신을 보내 가야 지역에서 활동하는 친신라적 관인들(移那斯, 麻都)의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百濟本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는 인정되는 부분이 많다. 단, 백제가 일본 천왕에게 상표문을 올리는 것 등으로 서술한 것은 『일본서기』 찬자의 윤색이 가미된 것이다. 윤색의 과정에서 『일본서기』 특유의 비유적 표현이 차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耕種’도 ‘영역 확보’의 비유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小島憲之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서기 편찬 당시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윤색에 사용한 漢籍은, 『史記』·『漢書』·『後漢書』·『三國志(吳志, 魏志)』·『梁書』·『隋書』·『藝文類聚』·『文選』·『金光明最勝王經』·『淮南子』 등이다(小島憲之, 1962,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上, 塙書房). 이 중에서도 권14 응락기부터 권19 흠명기까지는 漢籍의 語句를 가장 많이 인용하여 윤색이 현저한 곳이다. 권14에서 권19 사이에 중국 한적 인용이 많은 이유는 권14~21과 24~27의 경우, 持統朝(687~696)에 續守言과 薩弘恪이 正音에 의한 正格漢文으로 述作했기 때문이다(모리 히로미치 지음·심경호 옮김, 2006, 『일본서기의 비밀』, 황소자리 참조).

卷17, 繼體 8년(514) 3월조에¹⁾ 보이는 ‘置烽候邸閣’의 경우, 『三國志』 권15, 魏書15, 張既傳의 ‘置烽候邸閣’을 그대로 따온 문구이며, 전후의 문맥도 같다. ‘築城於子吞帶沙’는 장기전의 ‘築郭塞’의 구조와 같다. 뒷부분 ‘以備日本’은 장기전의 ‘以備胡’에서 ‘胡’ 대신 ‘日本’을 넣어서 윤색한 것이다. 이러한 윤색은 繼體 6년(512) 12월조에서도²⁾ 보인다. ‘조석으로 통행하기 쉽고, 닭과 개의 주인도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旦暮易通 鷄犬難別)’라는 표현은 晉 陶淵明의 桃花源記³⁾가운데, ‘밭고랑이 서로 통해 있고,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阡陌交通 鷄犬相聞)’에서 빌어 와 윤색한 것이다. 이 외에도 雄略紀 8년 2월조와 9년 3월조에, ‘新羅王 夜聞高麗軍 四面歌舞’는,⁴⁾ 저 유명한 『史記』 項羽本紀의 ‘夜聞漢軍 四面皆楚歌’을⁵⁾ 빌어 와서 윤색한 것이다(이상

1) “伴跋築城於子吞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復築城於爾列比 麻須比 而經麻且奚 推封 聚士卒兵器 以逼新羅 駟略子女 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2)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 下哆唎 娑陀 牟婁四縣 哆唎國守穉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連百濟 遠隔日本 旦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 合爲同國 固存之策 無以過此 (中略) 依表賜任那四縣.”

3) 陶淵明(365~427), 桃花源記, “晉太元中(376~395) 武陵人捕魚爲業 緣溪行 忘路之近遠 忽逢桃花林 (중략) 從口入 初極狹 纔通人 復行數十步 豁然開朗 土地平曠 屋舍儼然 有良田美池桑竹之屬 阡陌交通 鷄犬相聞 (하략).”

백승옥, 2020, 「반파국 위치 재론」 『전북사학』제58호, 100~102쪽 참조).

발표자가 인용한 사료 <다5>의 앞부분, ‘咸從移那斯·麻都指搗而已. 移那斯 麻都 雖是小家微者 專擅日本府之政’에서 ‘指搗而已’은 『後漢書』皇甫高傳에서 빌어온 것이다. 指搗는 원래 指麾로 쓰는데, 황보고전에 ‘指搗’로 되어 있다. 또 ‘小家’도 『漢書』霍光傳에서 빌어온 것으로 보인다(小島憲之 등, 2004, 『日本書紀』②, 小學館, 390~391쪽 두주 12와 14 참조).

위의 사료에 보이는 耕種은 모두 7번 등장하는데, ‘不得耕種(2회)’, ‘方得耕種(2회)’, ‘安羅耕種’, ‘新羅耕種’, ‘隨序耕種’, 의 형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史記』貨殖列傳의 “宣曲任氏之先, 為督道倉吏. 秦之敗也, 豪傑皆爭取金玉, 而任氏獨窖倉粟. 楚漢相距滎陽也, 民不得耕種, 米石至萬, 而豪傑金玉盡歸任氏, 任氏以此起富”에서의 “不得耕種”이 주목된다. 이는 『漢書』貨殖傳에서도 그대로 실려 있다. “宣曲任氏, 其先為督道倉吏. 秦之敗也, 豪傑爭取金玉, 任氏獨窖倉粟. 楚漢相距滎陽, 民不得耕種, 米石至萬, 而豪傑金玉盡歸任氏, 任氏以此起富”이다.

사료 <다5>의 耕種은 『일본서기』 찬자가 『史記』나 『漢書』에서 빌어와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곳의 ‘小家’을 『漢書』霍光傳에서 빌어온 것으로 추측해 보아 『漢書』에서 빌어와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3월조 기사 7번의 ‘耕種’ 가운데 신라의 耕種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한번 뿐이다. 나머지 6번은 안라나 임나의 耕種이다. 짧은 기사 속에서 7번이나 耕種이란 단어를 사용한 자체가 ‘농사 일’ 자체를 의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월조 기사는 기본적으로 이미 신라에 복속된 가야 제국들의 복건을 위한 백제의 간절한 정책들이 서술된 곳이다. 3월조에 이어지는 11월조에는 백제 성왕이 주최하는 사비회의 내용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 가야지역은 백제와 신라의 팽창에 의해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백제 측 사료를 바탕으로 서술된, 『일본서기』의 내용에 신라의 ‘둔전관련 농사일=耕種’이 서술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토론자는 사료 <다5>의 耕種이 신라가 실제 접경지역에서 耕種했음을 보여 주는 단어가 아니라, 신라와 안라 사이의 영역 접수 과정을 비유적으로 운색한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운색의 참고서는 《漢書》貨殖傳일 것으로 생각한다.

3. 발표자께서는 중국 漢代, 曹魏시기, 唐代 屯田의 경영과 성격이 각각 특색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II장). 신라에 영향을 미친 屯田 경영 방식은 어느 시기의 것인가?

4. “彰善島本高句麗有疾部曲”과 “昆陽郡 本高麗昆明縣”에 대하여

① 『高麗史』 권57, 地理2 晋州牧條. “又有彰善島[島本高句麗有疾部曲 高麗更今名陞爲縣屬于州]”

②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1, 昆陽郡 建置沿革條. “本高麗昆明縣 新羅時稱號未詳 顯宗屬晋州”

* 고구려의 부곡이 남해안에 설치된 이유로서 “광개토태왕릉비문”의 고구려군이 남해안까지 진격했을 때 창선도가 일시 고구려의 부곡으로 되었을 것임을 시사한 최초의 연구는 임건상, 1963, 『조선의 부곡제에 관한 연구』, 과학원 출판사이다.

* ②의 高麗는 高句麗로 보아야 한다.

4) 『日本書紀』卷14 雄略 8年 2월조, “惟有遣高麗一人 乘間得脫逃入其國 皆具為說之 高麗王即發軍兵 屯聚筑足流域[或本云 都久斯岐城] 遂歌舞興樂 於是 新羅王 夜聞高麗軍 四面歌舞 知賊盡入新羅地”

5) 『史記』卷7 項羽本紀 第7, “項王軍壁垓下 兵少食盡 漢軍及諸侯兵圍之數重 夜聞漢軍四面皆楚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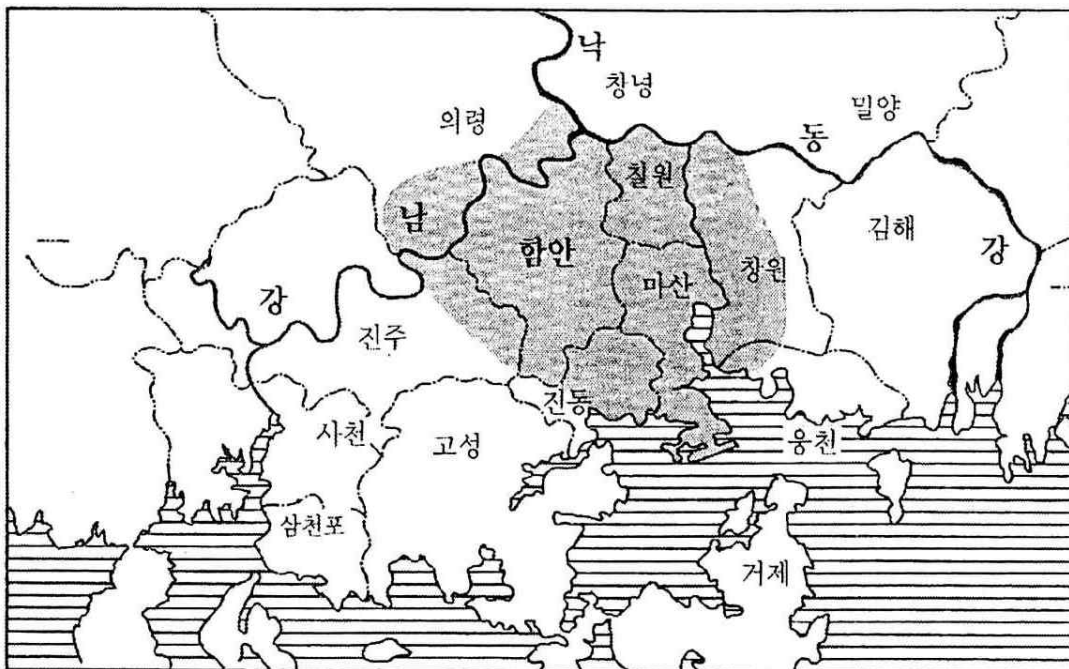
* ‘안라인수병’에서의 안라를 함안의 안라국으로 보는 설을 부정하고 ‘安’을 술어로 보아 ‘安’과 ‘羅人戍兵’을 띄워 읽는 해석의 시초는 중국의 王健群이 제시했다. 그는 과거 일본인 학자들이 ‘안라인수병’을 임나일본부의 용병이라고 한 해석을 억측이라 하면서 이 부분의 해석을 ‘(고구려 군대가 어떤 성을 탈취한 후) 신라인을 안치시켜 戍兵把守했다.’로 해석하였다(王健群著 林東錫譯, 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 중국 漢代의 군대 편성 상의 용어로서 部·曲·屯이 있었는데, 部는 大隊, 曲은 中隊, 屯은 小隊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런데 部曲을 부처 쓸 때는 兵士의 뜻으로 쓰였다고 하며, 이것이 다시 私兵을 나타내는 말로 되었으며, 後漢末·三國時代가 되면 部曲이란 말은 官兵보다는 私兵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 한다(濱口重國, 1966, 「第二篇 晉書武帝紀に見えたる部曲將·部曲督と質任」, 『唐王朝の賤人制度』, 1966, 400~404쪽 참고)

5. <충주고구려비>에 보이는 ‘刺功百二十射功◇□□□節人刺■●□□□□六□功二百六十四’를 설명하시면서, ‘노동량을 뜻하는 “숫자+功(功+숫자?)”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월성해자 출토 신1호 목간의 功과 煞功의 의미는 무엇인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6. 구례산과 대강수의 위치에 대하여

구례산의 위치는 무릉산과 작대산이고 대강수는 함안 칠원읍을 흐르며 낙동강에 합류되는 광려천으로 추정하는 설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대강수가 낙동강일 가능성은 없는지?



<그림 1> 불꽃무늬토기의 분포도로 본 4~6세기 대 안라국의 영역 (백승옥, 2006, 「4~6세기 安羅國의 領域과 ‘國內大人’- 칠원지역 古代史 復元의 一段-」, 『역사와 경계(구 부대사학)』30, 효원사학회, 277쪽에서)

고대 중국의 守墓 제도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守墓와 徙民 - 「광개토왕릉비」문 수묘인 연호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안정준 | 서울시립대학교

1. 머리말
2. 「광개토왕릉비」문 수묘인 연호조의 작성 목적과 연호수
 - 1) 연호목록의 성격과 작성 의도
 - 2) 수묘인 연호의 수와 什伍制
3. 神宮과 始祖廟 제사의 郊廟 제사 체계
 - 1) ‘舊民’과 ‘不知法則’의 의미
 - 2) 國烟과 看烟의 의미와 徙民
4. 맺음말

1. 머리말

고대 중국에서는 능묘 근처에서 이를 守護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다양했다. 일찍이 睡虎地 秦簡에는 진 효공과 헌공의 능묘를 지키는 자를 가리켜 ‘甸人’이라고 표현했다.¹⁾ 이는 당시 군주들의 능묘가 ‘甸人’이라 칭한 전문 수묘인에 의해 제도적으로 守衛·관리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²⁾ 또 한 대 이래로 묘를 지키는 자들을 ‘守塚’³⁾ 혹은 ‘園邑(民)’으로 표현한 경우가 다수 보인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 陵園을 수호하며 잡다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혹은 업무)을 가리키며, 秦簡의 ‘甸人’과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⁴⁾

秦·漢代 이래로 황제 이하 제후의 능묘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이들은 보통 家戶 단위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職役을 세습하는 호로서 황제나 황족·제후묘의 근처에 머물면서 守衛·奉祭祀·청소(雜役)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⁵⁾ 이러한 형태를 기본으로 漢代에 정립된 수묘제는 이후 동아시아

1) 秦簡「法律答問」簡190條 “可(何)謂甸人 甸人守孝公·獻公塚者毆(也)”. 원문은 李文才, 2019, 「汉唐陵户制变迁考论」, 『求是学刊』 2019-4, 167쪽을 참조.

2) 尹在碩, 2013, 「中國古代的 守墓制度」, 『東洋史學研究』 124, 7쪽.

3) “其與秦始皇帝守塚二十家 楚·魏·齊各十家 趙及魏公子亡忌各五家 令視其塚 複亡與它事”

4) 이후에도 唐代에 이르기까지 능묘의 수호·관리를 담당한 자들을 ‘陵戶’·‘墓戶’·‘塚戶’·‘守陵(戶)’·‘守墓(戶)’·‘守塚(戶)’·‘陵守’·‘墓守’·‘塚守’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했다(李文才, 2019, 앞의 논문, 168쪽).

각국의 수묘제의 원형이 되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릉비」문(이하 능비문)과 「집안고구려비」(이하 집안비)에도 가호 단위로 지정된 수묘인에 대한 서술이 있는데, 이들의 임무는 ‘守墓’·‘洒掃’·‘四時祭祀’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일정 수의 가호를 지정하여 직역을 세습하는 형태로 수묘를 담당하게 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고대 중국의 수묘제 운영 방식을 기본 틀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고구려 수묘제 연구는 우선 능비문과 집안비의 수묘인 연호 목록이 석비에 銘記되었다는 점, 그리고 능비문에만 330가라는 많은 수의 연호가 國烟·看烟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사실에 주목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 수묘제의 운영 방식을 다소 특수한 사례로 이해하는 가운데, 석비의 텍스트 자체에 과도하게 천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수묘제 주제의 큰 난관이었던 國烟과 看烟의 의미, ‘差錯’이 가리키는 상황, 총330가에 달하는 연호의 差定 배경 등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한대 이래 중국 수묘제의 큰 틀 속에서 능비문에 보이는 고구려 수묘제의 실상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우선 광개토왕대에 시작된 ‘墓上立碑’, 즉 각 왕릉 곁에 석비를 세운 목적, 그리고 석비에 새긴 내용의 제한성과 불변성이라는 특징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이를 통해 연호의 ‘差錯’이 가리키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비에 연호를 銘記한 배경과 그 의도를 검토해보겠다.

한편 기존 연구는 능비문의 수묘인 연호조가 제도 운영에 관한 서술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 내용에 큰 과장이나 허위가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능비 자체가 왕실의 善政과 통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목적의 선전비이며, 광개토왕의 武勳기사에 이어 기록된 수묘인 연호조 역시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서술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330가에 달하는 수묘인 연호를 동원하기 위해 제시된 명분과 徙民의 실제 의도가 과연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실제로 한대의 능묘 수묘는 피정복지의 주민을 關中 지역(長安을 중심으로 한 분지·평원 지역)으로 遷徙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능비문의 수묘인 연호조에 대한 주요 해석과 관련 논쟁들을 정리하고, 참고가 될 수 있는 한대의 陵邑徙民 제도, 수묘인 편제 문제, 그리고 특수직역으로서 수묘호가 지니는 성격 등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한대 이래 皇陵 등의 수묘를 명분으로 지방에서의 徙民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전례에 주목하여,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명분과 실제 운영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능비문의 수묘인 연호조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해석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2. 「광개토왕릉비」문 수묘인 연호조의 작성 목적과 연호수

1) 연호목록의 성격과 작성 의도

능비문 제3부(3면 8행~4면 9행 부분)는 보통 수묘인 연호조라고 칭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분량

5) 尹在碩, 2013, 앞의 논문, 39쪽.

을 차지하는 것은 330가의 수묘인 연호를 <지역명 + 국연·간연의 수> 형태로 기재한 목록(이하 연호목록)이다. 이어서 총330가가 차정된 배경, 그리고 이를 석비에 기재한 목적 등이 언급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수묘인의 매매를 금지하는 법령이 기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수묘인 연호조가 본래 앞의 武勳기사와는 별개로 작성된 텍스트였다고 보기도 했다. 즉 장수왕이 부왕의 훈적을 기리기 위한 훈적비와 왕릉의 수묘를 위한 수묘인 연호비 내용을 각각 별개로 작성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하나의 비석에 합쳐서 기록했다는 것인데, 결국 양자의 내용적 연관성이 적다고 본 것이다.⁶⁾ 그러나 능비 찬자는 맨 앞에 序言격에 해당하는 시조 추모왕의 건국설화를 적은 뒤에 각 왕의 치적과 더불어 광개토왕의 사망 이후 甲寅年 9월 29일 山陵으로 옮겼다는 내용(於時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 其辭曰)을 기술했다. 여기서 ‘其辭曰’ 이후로 이어지는 무훈기사와 수묘인 연호조 양자는 모두 ‘銘辭’의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하나의 대단락 속에서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다고 생각된다.⁷⁾

한편 수묘인 연호조에서 330가의 수묘인 연호가 차정된 배경과 역대 왕릉들의 守墓에 대한 조치, 매매금지령의 제정 등을 기록한 것은 왕실의 정통을 계승한 존재이자, 선대 왕릉의 수호를 담당했던 광개토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관된 서사 속에서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⁸⁾ 특히 연호목록에 나온(新來) 韓穢 220가의 차정 범위가 대체로 광개토왕대에 정복한 지역 범위로 나타난다는 점, ‘구민’ 대신 ‘한예’를 차정하라는 광개토왕의 교언 등은 무훈기사와의 긴밀한 연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점이 누차 지적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수묘인 연호조를 제도를 서술한 내용으로서 허위나 과장이 없다는 관점에서 주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능비문 전반에 걸쳐 왕실 중심의 정치적 선전 의도가 강하게 표출되며, 특히 무훈기사의 경우 일부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포함되어 있음이 이미 지적된 적 있다.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묘인 연호조 역시 왕실의 善政 및 통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능비문 전체의 서술 맥락과 궤를 같이하며, 제도의 실질적인 이면이나 조치 배경이 사실과 일부 상이하게 윤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광개토왕의 무훈 기사와 수묘제 관련 공적은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으며, 양 내용을 관통하는 능비문 전체의 작성 의도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한편 능비문에서는 永樂이라는 年號로 광개토왕에 관련된 武勳이 나열된 뒤에 별다른 추가 언급 없이 제3면 7행의 “수묘인 연호”라는 문구 아래 연호목록이 나열되고 있다. 이러한 능비문의 서술 형태는 이하에 열거된 330家が 모두 광개토왕에 대한 내용, 즉 광개토왕릉에만 해당하는 수묘인 내역을

6) 임기환, 2014a, 「광개토왕비의 건립 과정 및 비문 구성에 대한 재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54~264쪽.

7) 여호규, 2014, 「廣開土王陵碑의 문장구성과 서사구조」, 『영남학』 25, 24~25쪽.

8) 7세기 후반 일본도 천황권의 강화와 더불어 시조를 정점으로 하는 단일 계보의 확립, 역대 天皇靈이 個別化되면서 왕릉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와 제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현재의 천황이 역대 왕릉의 유일한 수호자라는 위상을 확립하였으며, 公民의 調와 陵戶 차정을 바탕으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여호규, 2014, 앞의 논문, 31쪽).

9) 浜田耕策, 1974,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24~27쪽 ; 浜田耕策, 1973,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虚像と實像」, 『日本歴史』 304, 87~94쪽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23~124쪽.

기재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¹⁰⁾

이와 관련해 능비문의 수묘인 연호조에서 수묘제의 정비 배경 및 과정을 기술한 문구도 주목된다.

위로 조선왕 이래로 능묘 주위에 석비를 안치하지 않아서 수묘인 연호가 差錯되기에 이르렀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만이 모든 조선왕들을 위하여 능묘 주위에 비를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겨 기록하여 差錯되지 않게 하셨다.¹¹⁾

위 기록에 의하면 광개토왕이 처음으로 선조왕들의 능묘 주위에 각각 석비를 세우고 수묘인 연호를 銘記하여 差錯되지 않게 했다고 전한다. 이에 대해 “墓上立碑 銘其烟戶”는 광개토왕의 遺言이며, 祖先王들을 위해 立碑가 시행된 것은 長壽王代라고 보기도 한다. 이는 연호목록이 국내성의 광개토왕릉과 여러 조상왕들의 수묘인 연호를 통합해서 기재했다는 해석으로도 이어졌다.¹²⁾ 그러나 위 기록을 직역하면 祖先王들을 위해 각각의 능묘 주위에 碑를 세우고 연호를 銘記한 행위는 광개토왕대에 이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집안비의 VII행에서 광개토왕(‘好₁₂王’)이 주체가 된 “₁上立碑 銘其烟戶頭”와도 동일한 조처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¹³⁾

한편 광개토왕의 “墓上立碑 銘其烟戶”조치 이후에 일정한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했다.¹⁴⁾ 즉 여러 왕릉 옆에 각각 석비를 세워 연호두의 인명을 새기는 기존 방식 대신, 단일한 비(능비)에 전체 왕릉의 수묘인 연호를 통합하여 기재하는 방식(<지역명+國烟·看烟別 烟戶數>)으로 변경되었다는 설이다. 이에 따르면 능비문에 기재된 330가는 국내성 지역에 소재한 전체 왕릉의 수묘호에 해당한다.¹⁵⁾

그러나 위 기록에는 오직 광개토왕이 조상왕들의 각 능묘에 능비를 세우고 ‘銘記烟戶’를 통해 왕릉별 수묘 담당호를 정했다고 했으며, 이를 그의 업적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이후에 다시 여러 왕릉의

10) 趙仁成, 1988, 「廣開土王陵碑를 통해 본 高句麗의 守墓制」, 『韓國史市民講座』 3, 96쪽 ; 林起煥, 1995,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 研究」,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82쪽 ; 김락기, 2006, 「高句麗 守墓人の 구분과 立役方式」, 『韓國古代史研究』 41, 206쪽.

11) 「廣開土王陵碑」 제4면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12) 浜田耕策, 1982, 「好太王碑文一二問題」, 『歷史公論』 8-4, 雄山閣出版, 111쪽 ; 金賢淑, 1989, 앞의 논문, 10~16쪽 ; 李仁哲, 1997, 「4~5세기 高句麗의 守墓制-廣開土王碑의 守墓人烟戶條를 중심으로-」, 『清溪史學』 13(白山朴成壽教授停年紀念特輯號), 57~58쪽 ; 李道學, 2002, 「광개토왕릉비문의 國烟과 看烟의 성격에 대한 再檢討-被征服民 施策과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 28, 86~87쪽 ; 鄭호섭, 2012, 「廣開土王碑의 성격과 5세기 高句麗의 守墓制改編」, 『先史와 古代』 37, 148쪽.

13) 공석구, 2013, 「集安高句麗碑의 발견과 내용에 대한 考察」, 『高句麗渤海研究』 45, 43~44쪽 ; 여호규,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70, 78~79쪽 ; 임기환, 2014b,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 守墓制의 변천」, 『韓國史學報』 54, 106~107쪽 ; 김창석, 2015, 「고구려 守墓法의 제정 경위와 布告 방식」, 『東方學志』 169, 87~89쪽.

14) 홍승우, 2013, 「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律令의 형식과 守墓制」, 『韓國古代史研究』 72, 110~112쪽 ; 기경량, 2014, 「집안고구려비의 성격과 고구려의 수묘제 개편」, 『韓國古代史研究』 76, 233~234쪽 ; 강진원, 2016, 「고구려 守墓碑 건립의 연혁과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83, 221쪽.

15) 공석구, 2013, 앞의 논문, 49쪽 ; 홍승우, 2013, 앞의 논문, 107~109쪽 ; 임기환, 2014b, 앞의 논문, 114~117쪽 ; 김창석, 2015, 앞의 논문, 94쪽

수묘인 연호를 단일한 비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는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¹⁶⁾ 그럼에도 만약 장수왕이 기존의 체제를 해체하고 연호목록에 여러 왕릉의 수묘인들을 통합 기재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능비문에 광개토왕의 업적을 서술한 맥락과는 상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개토왕대에 각각의 선대 왕릉에 ‘묘상입비’했던 제도 자체가 능비 건립 단계에 이르기까지 폐지되거나 큰 변경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연호목록은 광개토왕대에 각 왕릉을 위해 “묘상입비 명기연호”한 제도를 기본으로 작성된 것이며, 330가는 국내성 전체의 왕릉들이 아닌, 광개토왕릉만을 위해 배정되었다는 해석이 적어도 문장의 표현과 서사의 맥락상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한 왕릉에 220가 혹은 330가에 달하는 인원을 수묘만을 위해 징발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많으며, 이런 규모로 각 왕릉마다 수백 가씩 차정되었다면 좁은 국내성 지역에서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집안비에 ‘연호두 20인명(銘其烟戶頭廿人名)’이라 하여 20명의 연호두를 기재한 사실은, 한 기의 왕릉을 직접 담당할 수묘호의 수가 20가를 크게 상회하기 어렵다는 추정에 힘을 실는다. 따라서 능비문에 330가가 광개토왕릉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기술되었더라도, 이들이 모두 왕릉 주변에서 직접 수묘를 담당했을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한편 능비문에 연호목록을 기재한 목적은 무엇일까. 능비에서는 광개토왕이 조상왕들의 능묘마다 비를 세우고 연호를 銘記한 배경을 수묘인 연호의 ‘差錯’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했다. 집안비에서 ‘연호두’의 인명을 銘記한 것 역시 이 ‘差錯’을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差錯’은 ‘실수’, ‘착오’ 내지 ‘어긋남’, ‘혼란’ 등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현상을 의미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분분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차착’을 수묘인 또는 수묘인들로 구성된 노동집단이 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순서상의 착오나 錯綜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¹⁷⁾ 이후에도 수묘인들이 담당할 왕릉이 아닌, 엉뚱한 무덤에서 역을 이행하는 등의 혼란상,¹⁸⁾ 수묘인의 결원에 대비하여 예비인력을 차출해두었는데, 그 예비수묘인들이 자신이 수묘할 왕릉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현상,¹⁹⁾ 수묘인이 상호 간 담당 왕릉을 바꾸는 ‘轉賣’ 행위와, 일반민을 사서 수묘역을 맡기는 ‘擅買’ 행위로 인해 발생한 현상²⁰⁾ 등의 견해가 제기되었다. 대체로 왕릉이 있는 현장에서 수묘역을 수행하는 과정상의 문제로 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일단 ‘差錯’은 광개토왕대에 이르러 비로소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진 점으로 보아, 갑작스럽게 발생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오랜 운영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누적된 제도적 이완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폐단이 더욱 심해지거나 누적될 수 있는 현상이었다는 뜻이다. 또

16) 이는 장수왕에 의해 구민 110가가 추가로 차정되어서 연호목록의 330가가 되었음을 부연한 앞의 내용과는 대조적이다.

17) 金賢淑, 1989, 앞의 논문, 6쪽.

18) 李仁哲, 앞의 논문, 1997, 67쪽.

19) 공석구, 2011, 앞의 논문, 63쪽.

20) 기경량, 2014, 앞의 논문, 227~230쪽.

한 능비문에는 출신지별 연호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이 역부를 동원한 뒤 실제 노역 과정에서 효과적인 관리 근거로 기능했는지는 의문이다. 집안비 역시 각 연호의 戶主로 추정되는²¹⁾ ‘연호두’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작업 현장에서의 통제보다는, 평상시 연호의 관리와 신고, 혹은 역부를 징발할 시의 행정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본래 수묘인 연호는 각 지방에서 국내성 혹은 그 인근으로 遷徙된 이후에도 家戶 단위로 파악 및 유지·관리되었으며 自己經理가 인정되는 존재였을 것이다.²²⁾ 즉 고구려 조정은 옮겨진 연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적으로 생활·주거가 유지되기를 의도했던 것이다. 이들은 옮겨진 후 戶로 편제되고 田宅을 사여받았을 것이다. 집안비에 보이는 ‘연호두’ 20인은 연령·성별상 丁男(혹은 丁女)으로서 각호의 戶主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최말단에서 국가의 행정적 파악을 보조하는 20인의 고정된 인원이었을 것이다. 국가가 이 20호를 기본 단위로 하여 매년 수묘역에 종사할 인원을 안정적으로 징발하고자 의도했다는 점에서, 이들 戶는 人丁數를 주된 기준으로 편제한 課戶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²³⁾

고구려가 課戶를 편성하고 매년 동원이 가능한 역부수를 상시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각 호의 구성원에 대해 성별·연령별 인원수는 물론 출생과 사망 등 인구 변동 사항이 정기적으로 파악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울러 이들 수묘호의 구성원들은 국가가 지급한 토지와 생활 수단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세를 부담했으며, 일반 요역을 면제받는 대신 수묘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도 한대 이후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르기까지 수묘호에게 요역을 면제한 사례가 확인된다.²⁴⁾ 즉 수묘호는 능묘를 지키고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기타 잡역에서는 면제되는 성격의 집단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²⁵⁾

고구려의 수묘호 역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일반호와 구분되는 특수지역호로 편성되어 특정 업무와 노동에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職役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었으나 하나의 호로 구성되었고, 戶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을 것이다.

이들 특수지역호의 경우, 국가가 호내의 다른 구성원들까지 지역의 대상으로 파악했던 사례가 확인된다. 1996년 湖南省 長沙에서 출토된 走馬樓三國吳簡(이하 주마루오간)에는 국가가 관영 수공업·둔전 경작·운송·잡역 등을 담당시키기 위해 편성한 특수지역호의 기록이 나타난다. 특히 수공업 기술자인 師佐나, 행정·군사 분야의 하급 관원인 吏·卒과 같은 집단은 해당 호의 가족 구성원까지 사역이 가능한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파악·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⁶⁾

21) 여호규, 2013, 앞의 논문, 127쪽 ; 공석구, 2013, 앞의 논문, 43쪽 ; 홍승우, 2013, 앞의 논문, 94~95쪽 ; 임기환, 2014b, 앞의 논문, 113~115쪽.

22) 金錫亨, 1974, 「三國時代の良人農民」, 『古代朝鮮の基本問題』, 學生社, 95~96쪽.

23) 안정준, 2020, 「『集安高句麗碑』의 建立 목적과 守墓制」, 『목간과 문자』 25, 67쪽.

24) 한대의 수묘제도를 기본으로 계승한 위진남북조시기에도 선왕의 능묘를 수묘하는 자들(수총호)에게 정부는 ‘復除’라는 특혜를 일괄적으로 부여했던 기록들이 다수 보인다. 曹魏대에도 과거 東吳의 손견과 손책의 무덤을 수묘하는 인원 배치를 요청하면서 수묘역을 수행하는 이들의 요역 면제를 요청한 기록이 있다[“伏見 吳平之初 明詔追錄先賢 欲封其墓 愚謂二君並宜應書。二君 堅·策也。(중략)二君私奴 多在墓側 今爲平民。乞差五人 鑿其徭役 使四時修護頽毀 掃除塋壟 永以爲常。”(『文選』 卷第38 表下)]. 자세한 내용은 尹在碩, 2013, 앞의 논문, 49쪽을 참조.

25) 李文才, 2019, 앞의 논문, 169~170쪽.

고구려 수묘호의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디까지가 수묘역의 동원 대상이 되었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수묘역이 고도의 전문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이상, 능묘 주변에 거주하던 이들 가호에서 丁男 이외의 인원들도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묘호가 세습하여 역을 담당한 특수직역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가호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개별적인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의 명단이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파악·관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근대시대에는 각 가호별로 신고된 호적의 현황이 사실인지 여부를 상부에서 매년 일일이 확인·대조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잦은 부정행위가 발생했는데, 특히 각 가호에서 避役 등의 목적으로 출생이나 구성원의 나이 변동 등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²⁷⁾ 수묘호의 경우에도 避役을 목적으로 새로 발생한 구성원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하거나, 장애·질병·도망 등의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을 매도하여 노비 신분으로 전락하는 등의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의 배경에는 가호의 관리·신고 주체인 호주, 즉 ‘연호두’가 관계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집안비 X행의 매매금지령에는 ‘연호두’ 20인명이 銘記된 내역을 보고(‘看其碑文’) 위반한 자에게 ‘罪過’를 주라는 문구가 있다.²⁸⁾ 그런데 ‘연호두’ 명단을 기록한 것은 ‘差錯’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차착’과 수묘인의 매매는 분명 다른 종류의 위반 사항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호두’ 명단을 통해 두 가지를 모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²⁹⁾ 그렇다면 이 ‘차착’과 ‘매매’라는 문제는 모두 ‘연호두’가 평상시 담당했던 역할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⁰⁾

특히 ‘연호두’가 매년 연말에 戶內 토지·재산·호구 등의 내역을 관부에 보고하는 手實의 작성 주체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국가가 이들을 가호 관리의 책임자이자 행정 말단으로 인식하고, 그 임무에 대한 책임 의식 부여와 관리·감독 강화를 천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문에 나타나는 ‘差錯’은 국가의 관리와 감시가 미흡하여 수묘호 구성원의 현황 파악과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역부 징발 시점에 장부 기재와 실제 상황 사이에 생긴 불일치나 착오, 혹은 그로 인한 혼란을 지칭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집안비의 연호두 20인명과 능비의 연호목록이 위의 ‘差錯’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장부의 성격이었을까. 그러나 <20인 정도의 人名> 혹은 <차정된 지역명+家戶數> 형태로 적힌 한정적인 내용을 불변의 근거로 하여 수묘제의 장기적인 운영 상황을 상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고구려가 이미 신대왕 15년(179)경에는 20가 정도의 수묘호를 두고 이들을 계속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했을 것이라는 점,³¹⁾ 그리고 한대 이래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된

26) 李周炫, 2020, 「中國 古代 帝國의 人力 資源 편제와 운용」,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11~245쪽.

27) 金秉駿, 2008, 「樂浪郡 初期의 編戶過程과 胡漢稍別」, 『목간과 문자』 1, 148쪽.

28) “若違令者 後世嗣 看其碑文 与其罪過”

29) 기존에도 수묘인 연호의 差錯 현상과 수묘인 매매금지령이 관련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기경량, 2014, 앞의 논문, 227~230쪽). 다만 이는 수묘인들끼리의 거래를 통해 담당 왕릉을 바꾸는 행위를 ‘轉賣’로, 수묘인이 일반민을 사서 수묘역을 수행하게 한 것을 ‘擅買’로 보고, 이를 통한 수묘역 수행상의 문제가 생긴 상황을 差錯으로 본다.

30) 안정준, 2020, 앞의 논문, 61쪽.

31) “王自臨慟 罷朝七日 乃以禮葬於質山 置守墓二十家”(『삼국사기』 고구려본기 新大王 15年)

수묘 제도의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본다면, 고구려도 광개토왕대 이전부터 문서 행정을 통해 수묘인 연호를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하는 시스템이 존재했을 것이다.

특히 능비문에 따르면 ‘묘상입비’, ‘명기연호’하는 방안은 광개토왕대에 처음 제기된 것이다. 이미 그 이전부터 가호의 구성원을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석비에 銘記한 내역이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목간 혹은 종이 문서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자체를 제도의 ‘改善’이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집안비와 능비에 새겨진 연호 목록은 기존에 이루어지던 수묘인 연호 관리 방식에 추가된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

석비의 건립과 연호 명기는 통상적인 행정 문서와는 달리, 현장에서 왕명을 공시·공표하는 상징적 기능과 의례적 효과에 더 큰 비중이 두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왕명에 따라 수묘인을 관리하고 있음을 현지의 수묘 담당자와 주민들에게 명확히 인식시키고, 동시에 엄정한 관리·감독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제도의 이완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³²⁾ 이러한 연호목록의 성격과 의도를 고려할 때, 비문에 등장하는 330가라는 숫자와 국연·간연의 의미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수묘인 연호의 수와 什伍制

전한대에 황제의 陵邑에 배치된 陵邑戶는 최소 5천호에서 5~6만호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³³⁾ 능읍이란 황제가 생전에 자기의 묘를 조영하여 이를 중심으로 ‘起邑置縣’한 것을 말하는데,³⁴⁾ 후술하겠지만, 능읍에 이처럼 많은 민호가 사민된 것은 궁극적으로 관중 지역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고 한다.³⁵⁾

한편 한대에는 황족과 외척, 高爵者의 분묘에 두어진 園邑이 있다. 원읍의 수묘인은 관리자인 長·丞과 일반 수묘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법규에 따라 분묘를 수위·관리하고 봉제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³⁶⁾ 수묘를 위한 守塚家의 규모는, 昭帝의 황태후인 鉤弋婕妤의 雲陵邑에 3,000호가 두어진 사례도 있지만,³⁷⁾ 대체로 30가에서 300가의 가호가 배치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功臣 등 비황실 성원을 대상으로 守塚家가 두어진 경우들이 있는데, 적게는 5호부터 10·20·30·70·100·200호 정도 규모로 지정된 이들은 대부분 奉祭祀·청소(雜役) 등의 수묘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2) 안정준, 2020, 앞의 논문, 66~70쪽. 고구려가 수묘인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한 것은 석비가 아닌 호적 등의 장부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어도 광개토왕비의 연호목록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 새겨졌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홍승우, 2013, 앞의 논문, 111쪽 註70). 다만 이 글에서도 집안비의 연호목록은 여전히 인명 기재를 근거로 한 관리 용도로 상정하고 있다.

33) 전한대의 황릉별 능읍의 호수와 기타 현황에 대해서는 尹在碩, 2013, 앞의 논문, 10~11쪽의 표1을 참고하기 바람.

34) 閔斗基, 1957, 「前漢의 陵邑徙民策」, 『歷史學報』 9, 4쪽.

35) 관련 내용은 閔斗基, 1957, 앞의 논문, 2~3쪽을 참고.

36) 尹在碩, 2013, 앞의 논문, 48~49쪽

37) 『漢書』 卷97上 外戚傳第67上 孝武鉤弋趙婕妤

No	기록	호수	출처	시기
1	“진시황제에게 守塚 20호, 楚·魏·齊는 각 10호, 趙 및 魏公子亡릉에게는 각 5호를 배정하였으며, 그 무덤을 돌보게 하되, 다른 일은 면하게 하라 하였다.” ³⁸⁾	20호, 10호, 5호	『漢書』 卷1 下 高帝 劉邦 紀第1下 12 年條	漢代
2	“고조가 진섭을 위해 守塚 30호를 탕(飭)에 두었고,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낸다.” ³⁹⁾	30호	『史記』 卷48 陳涉世家	漢代
3	“고조 12년, 경포를 토벌하고 돌아오며 공자를 위해 守塚 5호를 두고, 매해 사시로 奉祠하게 하였다.” ⁴⁰⁾	5호	『史記』 卷77 魏公子列傳	漢代
4	“황제는 즉시 丞相과 御史에게 명하여, (중략) 列侯로 하여금 淮南王을 雍에 장사지내게 하고, 守塚 30호를 두었다.” ⁴¹⁾	30호	『史記』 卷118 淮南衡山列傳 第58	漢代
5	“황제는 張賀의 은혜를 되새기며, 그의 무덤에 ‘恩德侯’라는 작호를 봉하고, 守塚 200家 배정하고자 하였다. (중략) 이에 안제는 장하의 작호 봉작을 극구 사양하였고, 守塚 戶數 또한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호수는 점차 줄어들어 30호가 되었다. (중략) 곧 황제가 조서를 내려 「고(故) 예정령 장하를 위하여 守塚 30家를 두도록 하라」고 하였다.” ⁴²⁾	200호, 30호	『漢書』 권59 張湯傳 第29 子 安世	漢代
6	“태후의 어머니도 일찍이 세상을 떠나 櫟陽 북쪽에 장사지냈다. 이에 태후의 아버지를 추존하여 靈文侯로 삼았다. 會稽郡에서 園閭 300가를 바쳐서, 長·쑤 이하 관리들로 하여금 寢廟를 받들어 지키게 하였고, 上食과 제사는 법대로 행하게 하였다. 여양에도 靈文夫人의 園을 설치하고, 그 명령은 靈文侯園의 의례에 따르게 하였다.” ⁴³⁾	300가	『漢書』 卷97上 外戚傳 第67上 高祖薄姬	漢代
7	“霍光이 죽은 뒤 그 일족이 모두 주살되었으나, 成帝 때에 이르러 곽광을 위해 守塚 100家를 두고, 관리와 병졸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⁴⁴⁾	100호	『漢書』 卷68 霍光傳	漢代
8	“옛 황태자는 시호를 ‘戾’로 하고 奉冢 200가를 두었으며, 史良娣는 ‘戾夫人’으로 하고 守塚 30가를 두었습니다. 園에는 長·쑤를 두고, 주위에 받들고 지키는 것은 법에 따라 하게 하였습니다.” ⁴⁵⁾	30가	『漢書』 卷63 武五子傳·戾太子劉據	漢代
9	“(文帝는) 왕위에 오른 뒤 조인을 車騎將軍으로 임명하고 (중략) 아버지 조치를 추증하여 ‘陳穆侯’라 하고, 守塚 10가를 두었다.” ⁴⁶⁾	10가	『三國志』 魏書9 諸夏侯曹傳 曹仁 弟純	曹魏
10	“(義熙)14년 관직에 있다가 죽었는데 당시 나이 40세였다. (중략) (世祖가 大明 3년에) 또 守墓 5戶를 늘렸다.” ⁴⁷⁾	(增置) 5호	『宋書』 卷52 袁湛傳	劉宋
11	“(육완이) 향년 64세로 사망하였다. 시호는 강(康)이며, 병사 1,000명을 지급하고 守塚 70가를 두었다.” ⁴⁸⁾	70가	『晉書』 卷77 陸玩傳	東晉
12	“太常을 겸한 盧度世를 사절로 보내 獻王의 장례를 遼西로 옮기게 하고, 비석을 세워 사당을 세우	100가	『魏書』 卷83上	北魏

	며, 守塚 100가를 두었다.” ⁴⁹⁾		外戚傳上 常英	
13	“國珍의 아내 皇甫氏를 京兆郡君으로 추존하고, 守塚 10戶를 두었다.” ⁵⁰⁾	10호	『魏書』 卷83下 外戚傳下 胡國珍	北魏
14	“惠太后的 사례에 따라 별도로 寢廟를 세우고, 守陵 200가를 두었다.” ⁵¹⁾	200가	『魏書』卷13 皇後傳·文成 昭太後常氏	北魏
15	“또한 蒙遜을 위해 守墓 30가를 두었다.” ⁵²⁾	30가	『魏書』卷99 盧水胡沮渠蒙 遜傳	北魏
16	“梁의 두 임금(후경·원제)에게 각각 守墓 10호를 지급하였다.” ⁵³⁾	10호	『周書』卷48 蕭琮傳	北周

**표 내용은 王子今, 2020, 「兩漢“守冢”制度」, 『南都學壇』 40-3, 3~7쪽의 사료를 참조

특히 표의 1번과 같이 한대에 趙와 魏의 公子 亡·忌에게 守塚 각 5호를 배정하거나 3번처럼 高祖 12년에 (魏)公자를 위해 守塚 5家を 배정한 것은 前代의 王公 등을 대상으로 최소 5호를 기준으로 수묘호를 두었던 사례이다. 또 10번에서 459년에 劉宋의 世祖가 袁湛의 무덤을 지나다가 守墓 5戶를 增置한 사례는 후대에도 그 증원 규모를 5호 단위로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요컨대 황제의 능읍과 황족·高爵者의 園邑에는 5천가부터 1600·400·300·200·100가 등의 수묘호가 배치되었고, 비황실성원의 무덤에는 5·10·20·30·70호 등이 배치되었다. 여기서 최소 5가부터 시작해서 그 배수로 증가한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러한 가호수 설정은 수묘호를 什伍制로 편제하려는 목적과 관련된다고 보기도 했다.⁵⁴⁾ 什伍制는 秦代 이래 5가 혹은 10가 단위로 里를 구성

38) “其與秦始皇帝守塚二十家 楚·魏·齊各十家 趙及魏公子亡忌各五家 令視其塚 複亡與它事”

39) “高祖時爲陳涉置守塚三十家 至今血食”

40) “高祖十二年 從擊黥布還 爲公子置守塚五家 世世歲以四時奉祠公子”

41) “上即令丞相·御史逮考諸縣傳送淮南王不發封餽侍者 皆弃市 乃以列侯葬淮南王於雍 守塚三十戶”

42) “上追思賀恩 欲封其冢爲恩德侯 置守塚二百家 (중략) 故安世深辭賀封 又求損守塚戶數 稍減至三十戶(중략) 遂下詔曰 其爲故掖庭令張賀置守塚三十家 上自處置其里 居冢西鬪雞翁舍南 上少時所嘗游處也”

43) “太后母亦前死 葬櫟陽北 乃追尊太后父爲靈文侯 會稽郡致園邑三百家 長丞以下使奉守寢廟 上食祠如法 櫟陽亦置靈文夫人園 令如 靈文侯園儀”

44) “至成帝時 爲光置守塚百家 吏卒奉祠焉”

45) “故皇太子諡曰戾 置奉邑二百家. 史良娣曰戾夫人 置守塚三十家. 園置長丞 周衛奉守如法”

46) “[文帝] 及即王位 拜仁車騎將軍 都督荊·揚·益州諸軍事 進封陳侯 增邑二千 并前三千五百戶 追賜仁父熾 諡曰陳穆侯 置守塚十家”

47) “十四年 卒官 時年四十 (중략) 世祖大明三年 幸籍田 行經湛墓 (중략) 又增守墓五戶”

48) “(陸玩) 薨年六十四. 諡曰康 給兵千人 守塚七十家”

49) “遣兼太常盧度世持節改葬獻王於遼西 樹碑立廟 置守塚百家”

50) “追崇國珍妻皇甫氏爲京兆郡君 置守塚十戶”

51) “依惠太後故事 別立寢廟 置守陵二百家”

52) “又爲蒙遜置守墓三十家”

53) “梁二主各給守墓十戶”

하는 최하층의 鄰保조직인 伍 혹은 什을 둔 것이다. 기존에는 이를 什伍連坐를 통해 伍 구성원의 적극적인 범죄 고발(告姦)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보았다.⁵⁵⁾

근래에는 湖南城 龍山縣 里耶鎮古城의 북측 해자 옹덩이인 K11에서 51매 정도의 호적 목독이 출토되었는데, 일부 호적 목간의 하단에 '伍長'이라는 표현을 特記한 것이 발견되었다.⁵⁶⁾ 伍長은 5戶 1伍로 편제된 단위의 대표자였는데, 이때의 伍는 伍長이 特記된 호적을 중심으로 나머지 4호의 호적을 묶어서 보관하는 호적의 묶음 단위이기도 했던 것이다. 후한대에도 이처럼 伍를 단위로 한 5호의 戶籍簡이 발견됨으로써 이 시기 伍制의 시행을 추정할 수 있다.⁵⁷⁾

한대 이래로 園邑을 비롯한 수묘호들을 伍로 편제했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 본래 황제릉과 관련된 陵邑으로의 徙民은 지방의 유력세력을 약화시키고 關中 지역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지역의 吏 2천석과 富戶, 호족 등 舊六國 출신과 유력 관료 집안을 황릉 주위로 이주시킨 것이었다.⁵⁸⁾ 園邑도 마찬가지로 무덤 근처의 주민 이외에 외지에서 새롭게 이주된 사람들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수묘호를 새롭게 사민하여 집주시키거나 혹은 주변 민들과 분리하여 새로운 集居 단위가 생겼다면, 개별 가호의 통제 및 수묘호의 守衛 조직 편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什·伍로 편제했을 가능성이 있다.⁵⁹⁾

능비문 수묘인 연호조에 보이는 국연과 간연의 숫자는 각각 30호와 300호이며 이는 본래 韓穢 220가(국연 20, 간연 200), 舊民 110가(국연 10, 간연 100)로 구성되었다고 나타난다. 여기서 보이는 숫자들은 모두 5나 10의 배수이며, 이들은 광개토왕대에 정복한 지역(韓穢)과 그 이전의 정복지(舊民) 출신 주민이다.

기존에는 전체 330가가 모두 수묘를 담당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국연과 간연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연이 수묘를 주도하였고 간연이 그를 보조하였다는 해석이 일찍이 제기되었다.⁶⁰⁾ 이는 국연과 간연의 1:10 비율이 수묘역을 수행할 때의 노동조 편성과 관련있다는 견해도 이어졌다.⁶¹⁾

이후 1:10 비율은 사회계층상 우월한 지위로서 국역을 책임진 國烟 1호에 그보다 낮은 계층인 看

54) 尹在碩, 2013, 앞의 논문, 36쪽.

55) 秦에서는 獻公이 “爲戶籍相伍”를 실시하였던 바 있다. 또 商鞅의 變法에서는 기존 씨족 형태의 族的 질서를 해체하고, 군주의 일원적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什伍制 시행을 주장했다. 什伍의 민은 조직 내에서 姦人을 伺察하고 이를 고발할 의무를 지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모두 連坐된다. 姦人을 고발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형벌은 腰斬의 중형이었는데, 이는 同伍의 戶長에게 내려졌고, 匿姦者의 처벌은 降敵과 같이하여 본인은 斬刑, 그 가족은 노비로 沒官되는 것이었다. 십오연좌법은 告姦을 위주로 하여 범죄자를 찾는 것이 그 목적이었기에 告姦만 하면 伍의 다른 구성원은 면죄되었다고 한다(金燁, 1975, 「商鞅의 什伍連坐制 研究」, 『大丘史學』 9, 38~40쪽).

56) 尹在碩, 2011, 「秦·漢初의 戶籍制度」, 『中國古中世史研究』 26, 110쪽.

57) 尹在碩, 2011, 앞의 논문, 110~113쪽.

58) 閔斗基, 1957, 앞의 논문, 2~3쪽.

59) 尹在碩, 2013, 앞의 논문, 35~36쪽.

60) 那珂通世, 1915, 『那珂通世遺書』, 大日本圖書, 49쪽.

61) 박시형은 조선시대의 각종 國役에서 보는 戶首·奉足 관계처럼 고구려 왕릉 수호에서 국연이 주가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간연이 국연의 복무를 각 방면으로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았다(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226쪽).

烟 10호씩을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새롭게 편성한 결과로서,⁶²⁾ 국연1家+간연10家(총11가)가 수묘역의 기초적인 노동편성의 단위가 된다고 보기도 했다.⁶³⁾ 또 한에는 수묘의 규정을 모를 것이기 때문에(“不知法則”) 구민 수묘호 1조와 한예 수묘호 2조, 즉 3조(=33가)가 합동으로 수묘역을 수행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⁶⁴⁾ 제출되는 등, 대체로 33가와 국연·간연의 수는 수묘역 수행 시의 노동조 편성을 감안해 산정된 것으로 보는 연구가 다수였다.

그러나 능비문에 나타난 국연과 간연의 1:10 비율 자체가 무언가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구성인지, 또 다른 왕릉에도 국연과 간연이 있었고, 그 비율 역시 1:10이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 또한 기본적으로 가호 단위로 최소 노동조를 구성한다면 1가에 반드시 1인을 징발하지 않는 이상, 징발될 인부수가 항상 일정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2012년 공개된 집안비에는 국연과 간연의 표현이 아예 보이지 않는데다, 광개토왕의 선대에는 왕릉 1기당 20호의 수묘호가 존재했음이 유력해지면서, 능비문의 1:10의 비율(총11×n家) 조합이 고구려의 수묘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도 신대왕 15년(179)에 죽은 國相 明臨答夫에 대해 왕이 수묘 20家를 두었다는 기록이 보인다.⁶⁵⁾ 이때의 ‘置守墓二十家’라는 기록은 주민 遷徙를 통한 수묘호 집락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⁶⁾ 즉 2세기 후반부터 광개토왕대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수묘제의 기본 형태는 대략 20가 정도의 수묘인 가호를 대상으로 하여 역부를 동원해 수묘역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⁶⁷⁾

그렇다면 집안비의 20가라는 숫자, 그리고 능비문의 국연20, 간연200, 국연30, 간연300, 혹은 구민 110가와 한예 220가 등의 연호수 가운데, 국연 대 간연의 비율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이들 전체의 숫자가 5 혹은 10의 배수로 설정된 배경을 논의해볼 수 있다. 이는 수묘역 관련 노동조의 편성이 아니라, 국가가 각 지방에서 차출하여 국내성 혹은 그 인근에 집주시킨 주민 집단의 원활한 통제와 관리를 위해 기초 鄰保조직인 什·伍로 편제했던 결과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다.⁶⁸⁾ 특히 수묘인 연호 다수는 피정복지에서 이주된 주민이었기에, 什伍連坐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 고발(告姦)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내부의 범법 행위를 예방하려는 방안이 강구되었을 것이다.

62) 武田幸男, 1989, 앞의 책, 39쪽.

63) 金賢淑, 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韓國史研究』 65, 22~23쪽 ; 趙法鍾, 1995,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守墓人의 編制와 性格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8, 199쪽.

64) 조인성, 1988, 앞의 논문, 99쪽 ; 임기환, 1994, 「광개토왕비의 국연(國烟)과 간연(看烟)」, 『역사와 현실』 13, 202~203쪽.

65) “王自臨慟 罷朝七日 乃以禮葬於質山 置守墓二十家”(『삼국사기』 고구려본기 新大王 15년)

66)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4년조 “二月 命有司徙民於諸王陵園 各二十戶”도 수묘호의 기본 구성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된다.

67) 임기환, 2014b, 앞의 논문, 121~122쪽 ; 조법종, 2006, 『고조선·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393~395쪽 ; 김창석, 2015, 앞의 논문, 83쪽.

68) 기존에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高麗의 “人稅布五匹 穀五石 遊人則三年一稅 十人共細布一匹 租戶一石次七斗 下五斗”의 기록을 근거로, 고구려에 징세 단위로 10인 또는 10가 하나의 단위로 파악되는 체계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조법종, 1995, 앞의 논문, 218~219쪽 ; 손영종, 2001,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수묘인 연호」의 계급적 성격과 립역방식에 대하여」,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중심, 109쪽).

예컨대 가호의 구성원을 은닉하여 요역이나 관청 사역에 징발되지 않도록 하는 ‘匿戶’, 혹은 호적에 ‘大男’으로 등재해야 할 자를 ‘小男’으로 속여 戶賦 징수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傲童不傳’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향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장치로서 什·伍制가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별 가호의 구성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감시·관리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능비문에 보이는 수묘인들은 이주(徙民) 후 효율적인 지배와 감시 아래 놓였을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는 기층 조직의 편제가 고려된 5.10의 배수로 총호수를 설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정기적인 호적 파악과 내부 감시체계를 통해 수묘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한대 이래 중국의 수묘제 운영 방식과 기본적인 틀을 공유하였음을 보여준다.

3. 수묘인의 구분과 徙民의 목적

1) ‘舊民’과 ‘不知法則’의 의미

능비문에는 연호목록이 나열된 뒤에 총 330가에 달하는 연호가 차정된 배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살아 계실 때에 敎言하시길, “祖王과 先王께서는 단지 멀고 가까운 곳의 ㉔舊民을 取하여 守墓·洒掃하게 하셨다. 나는 ㉕舊民이 점차 羸劣해질 것이 염려된다. 만일 내 오랜 뒤에도 수묘하는 자를 둔다면, 다만 내가 몸소 다니며 略來해 온 바의 韓·穢만을 取하여 하여금 지키고 洒掃하게 하라”고 하였다. 言敎하신 바가 이와 같았으므로 이로써 敎令과 같이 韓·穢 220가를 取했다. 그러나 이들이 法則을 모를 것이 염려되어, 다시 ㉖舊民 110가를 取했다. 신·구 守墓戶를 합치니, 국연이 30가, 간연이 300가로 도합 330가이다.⁶⁹⁾

위에서 기록된 ‘舊民’의 의미는 무엇일까. 新來韓穢의 ‘新來’는 광개토왕 이전부터 존재했던 舊來의 ‘舊’民에 대비해서 특징이 부여되었다.⁷⁰⁾ ‘(新來)韓穢’가 ‘吾躬巡所略來韓穢’, 즉 광개토왕대의 복속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舊民 역시 광개토왕대 이전(舊)의 주민들 가운데서도 복속민이라는 한정된 범주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⁷¹⁾ 즉 ㉔에 보이는 ‘遠近舊民’의 ‘구민’은 광개토왕대 이전에 복속된 피지배민 일반(廣義)을 가리킨다고 보는 데 거의 이견이 없다.

그런데 ㉕·㉖의 ‘舊民’이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는 문맥상 廣義의 구민이 아

69)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敎言, 祖王先王, 但敎取遠近㉔舊民, 守墓洒掃, 吾慮㉕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備洒掃. 言敎如此,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廿家. 慮其不知法則, 復取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卅看烟三百, 都合三百卅家.”

70) 박시형, 1966, 앞의 책, 224~225쪽 ; 武田幸男, 1989, 앞의 책, 22쪽.

71) 林起煥, 1996, 「廣開土王陵碑文에 보이는 ‘民’의 성격」, 『廣開土王陵碑文 研究 100年』, 高句麗研究會, 775~779쪽.

닌, 그중에서도 특정한 주민 일부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다.⁷²⁾ 선왕인 광개토왕의 생전 교언에 따르면, 자신은 ㉔舊民이 점차 羸劣해질 것이 염려되므로 자기 이후에 수묘하는 자로서 韓穢 220가를 차정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수왕이 이들(韓穢 220가)이 法則을 알지 못할까 염려해서 다시 ㉔舊民' 110가를 차정했다고 전한다.

이때의 '法則'은 문맥상 <수묘에 대한 법규(규정)>로 해석하는 의견이 많다.⁷³⁾ 그런데 이렇게 볼 경우 (廣義의) 구민 지역에서 새롭게 수묘인을 차정했을 때, 이들이 <수묘에 대한 법규(규정)>를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위의 ㉔구민 110가는 광개토왕 이전에 이미 선대왕릉의 수묘역에 종사해온 수묘인으로만 한정해서 보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이에 광개토왕이 점차 羸劣해질 것을 우려한 ㉔'구민'은 기존에 국내성으로 遷徙되어 선대 왕릉들의 수묘를 담당해왔던 수묘인들만을 한정하는 것이며, 장수왕이 추가로 차정한 ㉔舊民 110가 역시 ㉔舊民' 즉 이전에 수묘역을 담당하던 주민들 가운데서 선정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⁷⁴⁾

이러한 해석은 광개토왕대와 장수왕대의 수묘제 운영 방식을 구분해서 보는 논리로도 이어졌다. 예컨대 장수왕이 추가로 구민 수묘호를 차정했다면, 이는 이전에 수묘인이었던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110가나 되는 기존 선대왕릉의 수묘인들을 차정했다는 것은 결국 장수왕대에 기존의 선왕릉에 있던 수묘인 집단 전체를 재편하거나 재조직한 상황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⁷⁵⁾ 이러한 설은 이후에도 광개토왕대의 집안비와 장수왕대의 능비문에 기재된 수묘제가 각기 다른 제도 형태로 운영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로 이어지기도 했다.⁷⁶⁾

그러나 능비문의 '法則'이 <수묘에 대한 법규(규정)>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가운데, 장수왕대의 큰 제도 개편이 있었다고 상정하거나, ㉔와 ㉔의 '舊民'을 모두 기존 수묘인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 추론인지 의문이 든다. 그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㉔의 '구민'이 국내성의 기존 수묘인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광개토왕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이 수묘인들의 '轉當羸劣'이라는 문제였다면, 이는 국내성에서 벌어진 수묘제 운영상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㉔와 ㉔가 가리키는 대상은 이미 국내성에 거주하던 수묘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㉔에서 굳이 이들의 출신이 遠近의 舊民이라고 밝히는 한편, ㉔·㉔에서도 이들을 舊 수묘인이 아닌, 구민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표현한 이유는 광개토왕이 새롭게 정복한 '한예' 지역 출신으로 교체한 조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광개토왕이 구민 출신을 한예 출신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기대한 효과는 무엇일까. 현재까지 '舊民轉當羸劣'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며, 한예로의 교체가 그에 대한 해결방안

72) 조인성, 1988, 앞의 논문, 96~98쪽 ; 김현숙, 1989, 앞의 논문, 5~6쪽.

73) 박시형, 1966, 앞의 책, 222쪽 ; 武田幸男, 1989, 앞의 책, 40~41쪽 ; 김현숙, 1989, 앞의 논문, 5쪽 ; 김현숙, 1999, 「廣開土王碑文의 守墓制와 守墓人」, 『廣開土王碑文의 新研究』, 서라벌군사연구소, 149쪽 ; 정호섭, 2012, 「廣開土王碑의 성격과 5세기 高句麗의 守墓制 改編」, 『선사와고대』 37, 147~148쪽 ; 기경량, 2014, 앞의 논문, 222쪽.

74) 김현숙, 1989, 앞의 논문, 5~6쪽.

75) 김현숙, 1989, 앞의 논문, 8쪽 ; 임기환, 2014b, 앞의 논문, 117~118쪽.

76) 홍승우, 2013, 앞의 논문, 110~112쪽 ; 기경량, 2014, 앞의 논문, 233~234쪽 ; 강진원, 2016, 앞의 논문, 221쪽.

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적절한 해명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⁷⁷⁾ 예컨대 기존에 수묘를 담당하던 주민의 생활 여건이나 수묘역의 과도함으로 인한 문제(혹은 체력 저하) 등이 상정될 수 있는데, 이는 수묘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역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 혹은 추가적인 수묘호 충원 등이 필요할뿐, 다른 지역 출신(한·예)으로의 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⁷⁸⁾ 즉 문제의 원인과 대응조치의 관계가 좀처럼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광개토왕대까지의 수묘제는 각 왕릉별로 배정된 수묘인 연호들이 해당 왕릉을 전담하여 수묘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왕릉을 조영할 때 각 지방에서 차출하여 국내성으로 이주시킨 주민들은 수묘 경험이 없고 관련 규정에도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들이 수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는 상황은 매번 조정에서 새로 수묘인을 징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새로운 왕릉이 조영될 때마다 이전 왕릉의 기존 수묘인 가운데 일부를 차출하여 문제를 해결했을까. 또 그때마다 불가피하게 전체 왕릉의 수묘인 집단을 재편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을까. 나아가 생전에도 수묘제 보완에 힘썼던 광개토왕이 한예 지역의 220가를 새롭게 차정해서 이전의 수묘인을 대체하라고 言敎할 당시, 새로 온 인원들의 ‘不知法則’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까. 기존 수묘인을 새로운 수묘인의 직무 교육에 일시적으로 동원할 수는 있겠으나, 이들을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다른 왕릉에 재배치함으로써, 연쇄적으로 각 왕릉의 기존 수묘인 배정을 해체하고 재편(재조직)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설정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漢代 이래로 황제나 황족·제후묘의 수묘인들이 담당했던 직무는 守衛·祭禮와 기타 雜役(청소 등)으로 나타나며,⁷⁹⁾ 고구려의 수묘인이 담당했던 직무는 능비문에 ‘守墓’·‘令備洒掃’로, 집안비에는 ‘四時祭祀’·‘守墓’로 표현돼 있다. 적어도 표현상 양자의 직무는 큰 차이가 없으며, 오랜 숙련과정이 필요한 직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중국의 수묘제에서 漢代 이래 새로운 가호를 수묘호로 지정하여 복무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장기간 별도의 직무 교육을 하거나, 혹은 새로 이주시킨 수묘호와 기존 수묘호를 雜居시킴으로써 직무 전수를 피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法則’을 수묘의 규정으로 한정해서 파악하는 동시에, 장수왕대에 이르러 이 ‘법칙’(규정)을 알려주기 위해 기존 수묘인 110가를 새 왕릉으로 배정했다는 식의 설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이러한 가정 하에 ㉔·㉕에 보이는 ‘구민’의 의미를 기존에 수묘를 담당했던 이들을 한정해서 가리킨다고

77) 舊民 지역이 전반적으로 농업생산력이 떨어져 경제적 기반이 파쇄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력이 높고 풍족한 지역인 韓穢로 교체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었다는 견해도 있었다. 광개토왕대에 ‘전체 舊民’의 경제적 기반이 파쇄해져 있었고, 이로 인해 광개토왕대의 적극적인 남진 정책이 실시되었다는 가정 하에 당시 경제적 기반이나 농업 생산력이 월등한 남부 한강유역에 거주하던 韓穢들을 수묘인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수묘제의 보완을 위한 주요한 해결책이었다고 본 것이다(朴性鳳, 1979, 『廣開土好太王期高句麗 南進의 性格』, 『韓國史研究』 27 ; 조법종, 1995, 앞의 논문, 5쪽). 그러나 당시 한예(구백제) 지역의 농업생산력이 구민 지역들에 비해 크게 우월했는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게 입증된 바 없으며(김현숙, 1999, 앞의 논문, 151쪽), 한예인들이 본거지를 떠나 국내성으로 徙民된 이후에 그들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구민 수묘호와 과연 큰 차이를 보였을지도 의문스럽다(林起煥, 1995, 『高句麗 執權體制 成立過程의 研究』,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81쪽).

78) 林起煥, 1995, 앞의 논문, 180~181쪽.

79) 尹在碩, 2013, 앞의 논문, 39쪽.

해석해왔던 것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㉔·㉕는 구민이라는 표현 그대로 광개토왕대 이전에 복속된 지역의 주민 일반(廣義)을 의미한다고 보는 가운데 해석할 필요가 있다.⁸⁰⁾ 이 경우 광개토왕이 본래 해결하려던 문제, 즉 ‘舊民轉當羸劣’은 국내성에서 발생한 수묘인 연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선대 왕릉을 조영할 때마다 일정한 가호를 이주시켰던 구민 지역 일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고구려는 그동안 舊民 지역에서 매년 수묘인 연호를 뽑아서 국내성으로 사민시켰는데, 아마도 잦은 민戶 사민은 구민 지역에 일정한 사회경제적 ‘소모’를 요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예컨대 한대에 陵邑徙民을 중단하게 元帝는 선대 황제들의 능읍이 백성의 생업을 파괴하고 고향을 등지는徙民의 고통을 강요했음을 비판하면서 “동부 지역에서는 虛耗의 피해(虛耗之害)를 입고, 關中에는 無聊한 민이 생기게 되었으니, 이는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⁸¹⁾ 이때 ‘虛耗之害’란徙民으로 인해 동부 지역이 허비되고 피폐해졌음을 묘사한 것이다.⁸²⁾ 아마도 광개토왕대 이전까지 구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된 사민 정책은 이 지역의 상주 인구를 감소시켜 사회·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㉔舊民轉當羸劣은 (廣義의) 舊民 지역이 점진적으로 쇠퇴(羸劣)해 가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선대 왕릉의 수묘인 연호를 매년 이 지역에서 차출하면서 발생한 상주 인구 감소와 空洞化 현상의 심화를 의미한다. 이에 광개토왕은 자신의 왕릉 수묘인 차정 대상을 새로 정복한 타 지역민(韓穢)으로 대체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 조치는 광개토왕의 무훈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위 조치에 따르면 비록 선대 왕릉을 수묘해 온 기존 수묘인들의 부담은 지속되었지만, 이들은 애초에 정책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핵심 수혜자는 구민(廣義) 지역의 주민이다. 광개토왕은 새 정복지(韓穢) 출신 연호의 배정을 통해, 기존에 왕릉 수묘인 차출로 인해 일정 가호가 이주(遷徙)함으로써 구민 지역의 공동화 현상(轉當羸劣)이 심화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장수왕대에 한예 220가가 ‘不知法則’할 것이 염려되어 구민 110가를 추가로 차정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가. 이는 신복속민과 구복속민의 雜居 상황 및 ‘법칙’의 다양한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능비문에 보이는 고구려 수묘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수묘인 연호가 각 지역에서 이주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수묘제에서는 인근의 주민을 수묘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능비문의 한예 220가는 고구려의 국내성 지역이나 그 인근에 집단적

80) 朴性鳳, 1979, 「廣開土好太王期 高句麗 南進의 性格」, 『韓國史研究』 27, 24~26쪽 ; 趙法鍾, 1995, 앞의 논문, 211~212쪽 ; 조법중, 2006, 앞의 책, 409~410쪽 ; 林起煥, 1995, 앞의 논문, 181쪽 ; 林起煥, 1996, 앞의 논문, 775~776쪽.

81) “九月戊子 罷衛思后園及戾園 冬十月乙丑 罷祖宗廟在郡國者 諸陵分屬三輔 以渭城壽陵亭部原上為初陵 詔曰 安土重遷 黎民之性 骨肉相附 人情所願也 頃者有司緣臣子之義 奏徙郡國民以奉園陵 令百姓遠棄先祖墳墓 破業失產 親戚別離 人懷思慕之心 家有不安之意 是以東垂被虛耗之害 關中有無聊之民 非久長之策也 詩不云 民亦勞止 迄可小康 惠此中國 以綏四方 今所為初陵者 勿置縣邑 使天下咸安土樂業 亡有動搖之心 布告天下 令明知之 又罷先后父母奉邑”(『漢書』卷9 元帝 劉奭 紀第9 永光4年). 尹在碩, 2013, 앞의 논문 37~38쪽 참조.

82) “長信少府勝獨曰 武帝雖有攘四夷廣土斥境之功 然多殺士衆 竭民財力 奢泰亡度 天下虛耗 百姓流離 物故者(過)半”(『漢書』卷75 眭兩夏侯京翼李傳 第45 夏侯勝)

으로 徙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한예의 ‘不知法則’을 이유로 구민 110가를 추가 차출한 것으로 보아, 사민된 한예와 구민 주민은 함께 거주(雜居)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한예의 ‘不知法則’과 舊주민(구민)과의 잡거 조치는, 한예가 고구려 주민으로 편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고대 중국에서 새로 정복한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내지의 舊주민을 이주시켜 피정복 新주민과 함께 거주하게 했던 사례들과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염두에 두고, 秦代에 정복지에 새로 설치한 縣에 피정복민과 秦人을 함께 거주시켰던 사례를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史記』본기와 열전에 따르면, 전국시대 秦은 점령지의 원주민을 축출하고 그 자리에 秦民을 이주시켜 해당 지역의 주민 구성을 재편한 것으로 전한다.⁸³⁾ 그러나 매년 원주민 ‘전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秦民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이므로, 실제로는 원주민의 부분적 遷徙와 秦民의 제한적 이주를 통해 양자가 雜居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⁸⁴⁾ 이러한 양상은 전국 말기에서 秦 통일 직후의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보이는 秦代 고분들에서, 秦의 이주 집단과 더불어 기존 거주층이었던 楚人 문화가 함께 나타나는 점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⁸⁵⁾

진은 이처럼 점령지의 원주민을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주로 秦의 奧地)으로 遷徙시키는 한편, 일정수의 秦人을 그 지역에 이주시킴으로써 기존의 전통적 사회 관계망을 재편하고자 했다. 이러한 대규모·빈번한 遷徙는 점령지의 인적 구성을 크게 변화시켜 기존 질서를 동요시켰으며, 그 결과 국가 권력이 해당 지역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전국 초부터 전국 말에 이르기까지 진이 점령지를 통치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했던 정책이었다.⁸⁶⁾

고구려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로 비교할만한 사례가 기록상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광개토왕 18년(408)에 동남쪽 변경에 새로 여섯 성을 쌓고, 평양의 民戶를 그곳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가을 7월에 나라 동쪽에 禿山 등 여섯 성을 쌓고, 평양의 民戶를 [그곳으로] 옮겼다.⁸⁷⁾

83) 춘추시대 이래 각국은 정복지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확고한 지배를 위해 ‘滅國置縣’의 방식을 택했다. 즉 置縣은 종래 畠의 原住氏族의 질서를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닌, 그 原住氏族 질서를 해체시킨 뒤 지배하는 방식이었다. 정복지에 가장 먼저 현을 설치한 국가는 秦(기원전 688, 武公 10년)이었으며, 置縣 과정에서 점령지의 전통적인 기존 질서를 파괴 내지는 改變시킴으로써 피정복원주민의 조직적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통치 시스템을 더욱 용이하게 적용하고자 했다. 이는 전국 시대에 이르러 타국의 군현을 병합하여 자국의 군현으로 편입시키는 경우에도 필수적인 절차였을 것이다(李成珪, 1985, 『秦帝國의 舊六國統治와 그 限界』, 『閔錫泓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三英社, 780~781쪽).

84) 李成珪, 1985, 앞의 논문, 781~782쪽.

85) 예컨대 雲夢秦簡의 출토로 유명한 睡虎地秦墓群은 전국말에서 통일 후의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보이는 고분들이 있는데, 이 지역은 진이 점령한 후 두었던 南郡 安陵縣城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고분의 주인공들은 진에서 이주한 집단과 더불어 원래 거주했던 楚人들의 문화가 함께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즉 양자의 잡거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1979~1980년 사천성 青川縣 郝家坪에서 발굴된 72기의 전국시대 고분들에도 전국말 南郡 설치 시에 秦에 의해 집단적으로 사천에 遷徙된 楚人들의 사례가 있다(李成珪, 1985, 앞의 논문, 782~785쪽).

86) 李成珪, 1985, 앞의 논문, 799~800쪽.

이 시책은 평양 지역의 유력한 토착 세력을 그 기반으로부터 분리시켜 고구려의 평양 일대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⁸⁸⁾ 그러나 4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가 이미 평양 지역을 확고히 장악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408년에 광개토왕이 평양의 주민을 秃山 등 6城에 이주시킨 조치는 새로 설치된 변경의 성 단위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려는 정책과 연관이 필요 있다. 즉 평양성의 ‘구민’을 변경의 신설 성곽 지역으로 옮겨 그곳 원주민과 雜居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 사회 관계를 재편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통치를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능비문에서 광개토왕의 교언에 따라 국내성으로의 이주가 예정되었던 ‘신래한예’는 여러 지역에서 차출되어 재배치된 사례로, 앞서 언급한 경우와 동일한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은 정복된 지 오래지 않은 舊백제민으로서 고구려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고구려의 사회적 법도나 규범에도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다수였을 것이다. 광개토왕은 이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듯하지만, 장수왕의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질서 체계에 익숙하지 않고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예인들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읍락을 수도권에 두는 것이 통제와 안보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된다고 보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는 해당 읍락의 주민 구성을 재편하여 상당수의 기존 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장수왕은 광개토왕대 이전의 복속민이었던 구민 110가를 한예 220가의 절반 수준으로 차정하여 이들과 雜居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110가에 달하는 많은 구민을 차출하여 신·구 주민 비율을 2대 1로 설정하게 된 배경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慮其不知法則”에서 ‘法則’은 구체적인 準則·規則뿐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거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도·규범(典範)을 의미하는 용례도 확인된다.⁸⁹⁾ 수묘인 연호조의 내용 또한 광개토왕의 업적을 서사적으로 부각하는 구성의 일부이며, 국왕의 행위와 조치는 일관되게 왕가의 德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그 배경이 제시된다.

따라서 장수왕이 한인·예인이 ‘法則’을 알지 못할 것을 염려했다는 표현은, 광개토왕대에 새로 정복된 舊백제인들이 고구려 사회에서 요구되는 법도와 규범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데 대한 우려를 완곡하게 서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는 이들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이나 잠재적 위협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우려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배경은 선대 정복 활동의 당위성과 국왕의 德治를 강조하는 능비문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2) 國烟과 看烟의 의미와 徙民

87) “秋七月 築國東秃山等六城 移平壤民戶”(『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광개토왕 18년)

88) 徐永大, 1981,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 『韓國文化』 2, 98쪽.

89) 『荀子』 王制 “本政教 正法則 兼聽而時稽之”; 『荀子』 勸學 “君子之學也 入乎耳 箸乎心 布乎四體 形乎動靜 端而言 鯁而動 一可以爲法則”; 『史記』 周本紀 “及爲成人 遂好耕農 相地之宜 宜穀者稼穡焉 民皆法則之”

한편, 능비문에는 수묘인 연호를 국연과 간연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看烟을 살펴보면, ‘看’은 ‘지켜보다’, ‘주시하다’라는 뜻을 지니므로 이를 왕릉의 看守·看視·看護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⁹⁰⁾ 이에 따르면 간연을 왕릉 또는 그와 관련된 대상을 보호·관리하는 수묘 관련 명칭으로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한편 국연은 간연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되어 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집단이다. 따라서 국연의 ‘國’을 단순히 ‘국가’라는 의미로 파악하기는 어렵다.⁹¹⁾ 즉 ‘國’은 간연과는 다른 공간(國)에 배치되었음을 가리키는 동시에, 두 집단의 성격을 구분하는 의미도 지닌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국연의 ‘國’은 광개토왕릉과 능비가 현존하는 ‘國岡上’ 지역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⁹²⁾ ‘國岡上’은 고구려 국왕의 諡號에 붙은 葬地名으로, 현재까지는 고국원왕과 광개토왕의 시호에서만 확인된다. 이를 王都 주변의 고유한 구역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⁹³⁾ 특정한 장소가 아닌, 4세기 이후 확장된 도성 공간에서 국왕의 왕릉이 입지한 공간이 갖는 초월적 위상을 드러내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⁹⁴⁾ 즉 ‘國岡上’은 해당 장지가 종전의 다른 고분들과 구별되는 ‘초월적 위상’을 갖는 입지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된 장지명이라는 것이다.

후자의 해석을 따른다면, 국연의 ‘國’은 초월적 위상을 지닌 왕릉이 자리한 ‘국강상’을 줄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국연이 광개토왕릉의 곁에서 수묘 임무를 직접 수행했던 역할과도 연관된 글자로 이해된다. 집안비의 발견을 통해 한 왕릉에서 순수하게 수묘를 담당했던 인원이 대략 20가 내외였다고 추정되는데, 능비문 내에서 국연이 20가 혹은 30가로 논의된 점을 고려하면, 국연은 왕릉 인근(‘國岡上’)의 공간에 배치되어 수위·제사·청소 등 왕릉의 직접적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 ‘看烟’의 경우에도 ‘看’의 의미가 수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문맥상 광개토왕릉에만 3백가나 되는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이들이 모두 광개토왕릉 인근에 集居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며, 개별 왕릉의 수묘 인원으로 보기에 그 수가 지나치게 많다. 만약 국연의 명칭이 왕릉 인근(‘國岡上’)의 공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간연과의 공간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면, 간연은 일단 ‘수묘’라는 명분으로 遷徙되었지만 실제로는 국연과는 다른 지역에 머물며 별도의 역할을 수행했던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선행 연구에서는 간연이 國岡上이 아닌 별도 지역에 사민되어, 농경 및 제반 생산 활동을 통해 국연의 수묘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존재였다고 추정하기도 했다.⁹⁵⁾ 이는 국연과 간연

90) 武田幸男, 1989, 앞의 책, 38~39쪽.

91) 李道學, 2002, 「광개토왕릉비문의 國烟과 看烟의 성격에 대한 再檢討」, 『韓國古代史研究』 28, 95쪽.

92) 武田幸男, 1989, 앞의 책, 38~39쪽 ; 김현숙, 1989, 앞의 논문, 20쪽.

93) 武田幸男, 1989, 앞의 책, 248~249쪽.

94) 4세기 전반에 이르러 國內都城에는 귀족들을 포함한 많은 인구가 集住하면서, 集安盆地 전체를 도성지역 곧 ‘國’으로 파악하는 인식이 점차 확립되었다. 그런데 천추총·태왕릉·장군총 등 4세기 중반 이후의 초대형 적석총들은 집안 분지 중에서도 禹山이나 七星山 등 서북쪽 산기슭을 따라 형성된 일반 고분군과 상당히 동떨어진 입지(도성의 岡지형)에 자리했다. 이는 고국원왕 이래 國岡上이라는 葬地名이 나타나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데, 4세기 이후 확장된 도성 지역 전체를 아우른 국왕의 초월적 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여호규, 2010, 「高句麗太王號의 제정과 國岡型왕릉입지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5, 23~29쪽).

의 거주 공간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국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광개토왕이 한에 출신으로만 200가에 달하는 인원을 지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접 왕릉을 수묘하지 않는다면 장수왕이 이들의 ‘不知法則’을 염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간연을 별도의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시켜야만 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등이 명확하게 해명되지는 않는다.

한편, 國烟은 국내성으로 옮겨져 왕릉을 看守하였으며, 看烟은 국연에 결원이 생겼을 때 이를 충원 하도록 지정된 일종의 예비 수묘호라고 보기도 한다.⁹⁶⁾ 즉 간연은 광개토왕릉의 수묘가 시작될 당시에는 동원되지 않고 본래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국연 가운데 免役되거나 결호가 생길 경우 충원되는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특수지역호로서 대를 이어 직역을 세습한다고 여겨지는 수묘호가 과연 일정 시점 이후 면역되는 조건이 있었는지, 또 국연의 열 배에 달하는 예비 수묘호를 굳이 미리 지정해 둘 필요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결국 관건은 300가에 달하는 많은 피정복지의 주민을 수묘와 관련된 명칭인 ‘간연’으로 지정한 가운데, 일정 지역으로 사민시킨 배경을 해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漢代 이래로 ‘수묘’를 명분으로 하여 수도 인근으로 사민시킨 주민이 모두 농묘의 수위·제사·청소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인원으로 편제되지는 않았던 사례를 주목해보고자 한다.

漢이 興起하자, 長安에 도읍을 세우고, 齊의 모든 田氏, 楚의 昭·屈·景氏와 여러 功臣의 가문들을 長陵으로 이주(徙)시켰다. 그 후 대대로 二千石 관리들, 재산이 많은 부유한 사람(高訾富人), 그리고 호걸과 세력이 강하여 재산을 겸병(兼併)한 가문들을 여러 陵 주변으로 이주시키니, 이는 대개 또한 중앙의 힘을 강화하고 지방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함(彊幹弱支)이었지, 농묘를 받들고 지키기 위함(奉山園)만은 아니었다.⁹⁷⁾

한대의 陵邑徙民은 高后 6년(기원전 182) 張陵邑 설치부터 永光 4년(기원전 40) 중단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 정책은 2천 석 이상의 관료와 부호, 舊六國 귀족 등 유력 가문을 황릉 주변으로 이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면적으로는 ‘奉山園’, 즉 황제의 능원을 수호하고 제사를 받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 능원의 수위·청소 등 직접적인 관리 업무는 일부 평민을 지정하여 담당하게 했고, 대다수 주민은 조세를 통해 능원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徙民의 본질적 목적은 지방의 잠재적 위협 세력을 본거지에서 격리하여 황제의 감시하에 두고, 동시에 인구와 부를 關中 지역으로 집중시켜 중앙 권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彊幹弱枝’에 있었다.⁹⁸⁾ 즉, 능읍사민은 ‘守墓’를 구실로 삼아 중앙집권 강화를 꾀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띤

95) 조법종, 1995, 앞의 논문, 218~219쪽.

96) 김락기, 2006, 「高句麗 守墓人의 구분과 立役方式」, 『韓國古代史研究』 41, 223~224쪽 ; 공석구, 2011, 앞의 논문, 63쪽.

97) “漢興 立都長安 徙齊諸田 楚昭·屈·景及諸功臣家於長陵 後世徙吏二千石·高訾富人及豪桀兼兼之家於諸陵 蓋亦以彊幹弱支 非獨爲奉山園也”(『漢書』志 卷28下 地理志第8下 秦地).

인구 이동 정책이었다.

보통 중국 고대의 전형적인 徙民은 피정복지(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滅國 내지 滅邑 후에 점령지를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다. 예컨대 진은 통일 직후인 秦始皇 26년(기원전 221)에 천하를 나누어 36개의 郡으로 삼고, 천하의 부유한 호족들 가운데 12만호를 수도 咸陽으로 이주시켰는데,⁹⁸⁾ 이는 京畿 지역의 인구수를 늘리는 동시에 수취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적이 내재해 있었다.¹⁰⁰⁾ 漢初 高祖代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민이 행해졌다.¹⁰¹⁾ 당시 高祖는 북방의 흉노와 齊·楚·趙 등 동방지역의 유력세력들을 제어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었는데, 劉敬의 건의에 따라 舊六國의 잔존세력들을 관중으로 사민시킴으로써 정복지역의 확고한 장악과 더불어 관중 지역을 강화하고, 동시에 사민시킨 주민을 흉노의 침입에 대비한 저지 세력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⁰²⁾

결국 한대의 능읍 사민 역시 帝陵의 ‘수묘’ 사업을 빌미로 피정복 지역의 주민을 대거 이주시키고, 이들을 관중 지역의 경제적 기반으로 삼는다는 종래 피정복지 徙民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능읍 사민은 그 과정에서 황제의 사망을 계기로 건립된 능묘를 받들고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국가는 被徙者들에게 국가 입장에서 필연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帝陵의 ‘수묘’ 사업을 위해 選民했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¹⁰³⁾

이처럼 피정복 지역의 주민을 수도 인근으로 이주시켜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한 사례는 4세기 전후 화북에 존재했던 여러 국가들에 대한 기록에서도 적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慕容廆·慕容皝 시기의 선비 모용부는 4세기 초반에 중원에서 도망해온 이주민과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투항자와 피정복민 등을 수도 龍城 부근에 안치했다. 특히 서진·부여·고구려·단부·우문부 등의 세력을 공격한 뒤에 그 포로들을 모용부의 경내로 이주시켰다.¹⁰⁴⁾ 이중에 상당한 숫자가 수도 棘城 혹은 341년에 천도한 龍城 인근에 두어졌는데,¹⁰⁵⁾ 모용황 집권 시에 도성쪽에 있는 고구려·우문부·단부 출신의 이주민이 10만호에 달한다는 기록도 있다.¹⁰⁶⁾

98) 閔斗基, 1957, 앞의 논문; 尹在碩, 2013, 앞의 논문, 12쪽.

99) “分天下以爲三十六郡 郡置守·尉·監 更名民曰黔首 (중략) 徙天下豪富於咸陽十二萬戶”(『史記』 卷6 秦始皇本紀第6 始皇26年)

100) 이성규, 1985, 앞의 논문, 795~796쪽.

101) “九年 趙相貫高等事發覺 夷三族. 廢趙王敖爲宣平侯. 是歲 徙貴族楚昭·屈·景·懷·齊田氏關中”(『史記』 卷8 高祖本紀 第8 9年); “十一月 徙齊楚大族昭氏·屈氏·景氏·懷氏·田氏五姓關中 與利田宅”(『漢書』 卷1下 高帝 劉邦 紀第1下 9年)

102) 李哲浩, 2013, 「前漢의 陵邑徙民 政策과 豪族」, 『東洋史學研究』 124, 145~148쪽.

“劉敬從匈奴來 因言「匈奴河南白羊·樓煩王 去長安近者七百里 輕騎一日一夜可以至秦中. 秦中新破 少民 地肥饒 可益實. 夫諸侯初起時 非齊諸田 楚昭·屈·景莫能興. 今陛下雖都關中 實少人. 北近胡寇 東有六國之族 宗彊 一日有變 陛下亦未得高枕而臥也. 臣願陛下徙齊諸田 楚昭·屈·景 燕·趙·韓·魏後 及豪桀名家居關中 無事 可以備胡 諸侯有變 亦足率以東伐 此疆本弱末之術也 上曰善 迺使劉敬徙所言關中十餘萬口”(『史記』 卷99 劉敬叔孫通 列傳 第39)

103) 李哲浩, 2013, 앞의 논문, 152~157쪽.

104) 최진열, 2015, 「16국시대 遼西의 인구 증감과 前燕·後燕·北燕의 대응」, 『백제와 요서지역(7)』, 한성백제박물관, 91~98쪽.

105) 최진열, 2015, 앞의 책, 100쪽.

106) “句麗·百濟及宇文·段部之人 皆兵勢所徙 非如中國慕義而至 咸有思歸之心 今戶垂十萬 狹湊都城 恐方

선비 모용부뿐 아니라 당시 西秦·南涼·夏·北魏 등도 피정복민을 수도나 정치적 근거지로 대거 이주시킨 사례가 있다.¹⁰⁷⁾ 이는 피정복민을 보다 용이하게 통제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인구를 확보하고 수취 기반을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4세기 이후 고구려 역시 빈번한 전쟁을 통해 정복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심부 주민들에 대한 반복적인 인적·물적 징발로 상당한 소모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복한 지역의 토착 유력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필요로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 연구에서도 고구려 왕릉의 조영과 ‘수묘’를 계기로 과거 정복한 지역의 주민을 수도 인근으로 이주시킨 조치를 피정복민 정책의 관점에서 파악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국연과 간연의 구분은 본래 지역에서 형성된 사회적 계층 차이에 기원한 것으로, 지배층에 속하던 계층을 수도로 사민시킨 烟을 ‘국연’으로, 피지배층으로서 기존 거주지에 계속 남겨 둔 烟을 ‘간연’으로 보았다.¹⁰⁸⁾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원래 지역에 잔류한 민호를 굳이 간연으로 지정하여 능비문의 연호목록에 銘記한 이유가 불분명하며, 국연 없이 간연만 단독으로 차정된 지역들이 나타나는 이유 역시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능비문에서는 국연과 간연 도합 330가를 모두 ‘수묘인 연호’로 표현했다. 설령 이 300가가 모두 직접 왕릉의 수묘 임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능비문에 이들이 수묘인이자, ‘간연’으로 표현된 배경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필자 역시 장수왕대에 총 330가의 수묘인이 지정되어 사민된 것을 고구려의 피정복민의 사민책과 관련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모두 수묘를 명분으로 遷徙되었으나, 실제로 왕릉 인근에 옮겨져 守衛·제사·청소 업무에 동원된 연호는 국연 30가로 한정된다. 반면 300가에 이르는 간연은 실질적으로 ‘국강상’이 아니라 수도 인근의 다른 지역에 별도로 안치되어, 국연의 수묘 활동에 소요되는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질병이나 사망·도망 등으로 인한 국연의 缺戶 발생 시에 이를 충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존재로 설정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간연은 수묘를 명분으로 이주된 계층이었으며, 동시에 왕릉을 모시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간연’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광개토왕대에 한예 200가라는 많은 수의 간연이 산정된 배경에는, 피정복민을 고구려의 직접적 통제 아래 두는 한편 수도권의 강화와 수취 기반 확대에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나아가 광개토왕 사후 장수왕대에 이르러, 많은 수의 한예만을 수도 인근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고구려에 비교적 장기간 순응해 온 舊복속지 주민(舊民)을 함께 거주시켜 한예의 ‘不知法則’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300가라는 대규모의 간연이 다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능비문의 국연·간연을 비롯한 수묘 관련 표현들과 서사는 광개토왕의 무훈과 왕실의 권위, 그리고 그 통치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재되었다. 수도권 강화라는 목표 아래 실시된 간연의 徙民 조치 역시, 무훈기사에서 강조된 광개토왕의 대대적 영토 확장을 근

將為國家深害 宜分其兄弟宗屬 徙于西境諸城 撫之以恩 檢之以法 使不得散在居人 知國之虛實”(『晉書』卷 109 載記 第9 慕容皝)

107) 최진열, 2015, 앞의 책, 101~110쪽.

108) 李道學, 2002, 앞의 논문, 96~97쪽.

거로 가능했던 것이다. 실제로 무훈기사의 영락 6년조에서는 백제 58성을 확보한 사실을 강조하며 그 城名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수묘인 연호조에 등장하는 지역명들, 그중에서도 구백제민(신라한예)의 지명들과 다수 일치한다. 이러한 점은 광개토왕의 무훈 업적이 고구려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의 사정을 호전시키는 조치로 이어졌음을, 국내성의 지배층에게 선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광개토왕대에 건립된 집안비는 각 선대 왕릉의 곁에 立碑하고, 연호두 인명을 銘記함으로써 수묘인 연호의 ‘差錯’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목적이 강했다. 왕릉 주위에 머물면서 그 가호의 구성원들이 수묘라는 직역을 대대로 담당하는 것은 국연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집안비에는 국연 20가의 연호두 인명만이 기재되었을 뿐이며, 아예 국연·간연의 명칭조차도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遷徙의 명분은 수묘였으나 실제로 해당 직역을 담당하지 않은 간연은 애초부터 수묘제의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안비 단계에서 국가가 수묘인의 매매금지 및 ‘차착’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들은 오직 20가의 연호, 즉 국연만을 대상으로 기술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능비와 집안비에 나타나는 수묘제 관련 서술상의 차이는 양자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제도의 변화에 기인했다기보다는, 각 비가 지닌 기재 목적과 독자에게 제시하고자 한 내용의 차이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4. 맺음말

능비문은 광개토왕의 무훈과 왕실 권위, 그리고 통치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선전적 성격이 강한 비문으로, 이에 연계된 수묘제 관련 서술 역시 정치적 목적 아래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수묘인 연호조의 ‘差錯’이 가리키는 상황, ‘舊民’과 ‘不知法則’의 의미, 총 330가의 연호가 差定된 배경, 그리고 國烟·看烟의 성격 등을 재검토하였다.

우선 능비의 건립과 연호목록 銘記는 통상적인 행정 문서와는 달리, 현장에서 왕명을 공시·공표하는 상징적 기능과 의례적 효과에 더 큰 비중이 두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왕명에 따라 수묘인을 관리하고 있음을 현지의 수묘 담당자와 주민들에게 명확히 인식시키고, 동시에 엄정한 관리·감독의 지를 드러냄으로써 제도의 이완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능비문에 보이는 수묘인 연호는 徙民 이후 국가의 체계적 지배와 감시 아래 편제되었으며, 이러한 통제를 위해 국가는 5·10의 배수를 기준으로 호수를 설정하고, 이들을 編戶한 뒤 什伍制를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기적인 호적 파악과 내부 감시 체계를 바탕으로 한 중국 한대 수묘제의 기본 틀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한편 ‘舊民轉當羸劣’과 ‘不知法則’에 대한 기존 해석도 재검토하였다. 본고는 ‘舊民’을 광개토왕 이전 복속민 일반으로 이해하며, 반복된 사민 정책으로 인해 이들 지역 전체에 누적된 인구 감소와 사회 기반 약화가 “轉當羸劣”로 표현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광개토왕은 새 정복지인 韓穢 출신 연호를 수묘인으로 대체함으로써 구민 지역의 공동화 심화를 막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수왕대에는 고구려 질서에 충분히 통합되지 않은 한예인들만으로 구성된 대규모 이주 집단을 수도권에 두는 것이 통제와 안보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이에 구민 110가를 추가 차정하여 한예 집단

과 雜居시키는 방식으로 안정화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능비문의 연호목록 330가는 문맥상 광개토왕릉에 배정된 수묘인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국연 30가는 ‘國岡上’, 즉 왕릉 인근에 실제 배치되어 직접 수묘를 담당했던 집단이며, 간연 300가는 수묘를 명분으로 사민되었으나 실제 직역에는 참여하지 않고 별도 지역에 안치되어 국연에 대한 경제적·인적 지원을 담당했던 집단으로 해석된다.

본고는 간연 300가의 사민 조치를 고구려의 피정복민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즉, 이들은 수묘를 표면적 명분으로 하여 수도권 인근에 이주되었지만, 실상 피정복민을 국가의 직접적 통제 아래 두고 동시에 수도권 강화와 수취 기반 확대에 활용하려는 고구려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집단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통해 능비와 집안비에 나타나는 수묘제 관련 서술상의 차이 역시 양자 사이의 제도 변화에 기인했다기보다는, 각 비가 지닌 기재 목적과 독자에게 제시하고자 한 내용의 차이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 논문

- 강진원, 2016, 「고구려 守墓碑 건립의 연혁과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83
- 공석구, 2013, 「集安高句麗碑의 발견과 내용에 대한 考察」, 『高句麗渤海研究』 45
- 기경량, 2014, 「집안고구려비의 성격과 고구려의 수묘제 개편」, 『韓國古代史研究』 76
- 김라기, 2006, 「高句麗 守墓人의 구분과 立役方式」, 『韓國古代史研究』 41
- 金秉駿, 2008, 「樂浪郡 初期의 編戶過程과 ‘胡漢稍別」, 『목간과 문자』 1
- 金錫亨, 1974, 「三國時代의 良人農民」, 『古代朝鮮의 基本問題』, 學生社
- 金燁, 1975, 「商鞅의 什伍連坐制 研究」, 『大丘史學』 9
- 김창석, 2015, 「고구려 守墓法의 제정 경위와 布告 방식」, 『東方學志』 169
- 金賢淑, 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韓國史研究』 65
- 김현숙, 1999, 「廣開土王碑文의 守墓制와 守墓人」, 『廣開土王碑文의 新研究』, 서라벌군사연구소
- 李道學, 2002, 「광개토왕릉비문의 國烟과 看烟의 性格에 대한 再檢討」, 『韓國古代史研究』 28
- 李文才, 2019, 「汉唐陵戶制变迁考论」, 『求是學刊』 2019-4
- 李周炫, 2020, 「中國 古代 帝國의 人力 資源 편제와 운용」,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閔斗基, 1957, 「前漢의 陵邑徙民策」, 『歷史學報』 9
- 朴性鳳, 1979, 「廣開土好太王期 高句麗 南進의 性格」, 『韓國史研究』 27
- 徐永大, 1981,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 『韓國文化』 2
- 손영중, 2001,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수묘인 연호」의 계급적 성격과 립역방식에 대하여」,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중심
- 안정준, 2020, 「「集安高句麗碑」의 建立 목적과 守墓制」, 『목간과 문자』 25
- 여호규, 2010, 「高句麗太王號의 제정과 國岡型왕릉입지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5
- 여호규,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70
- 여호규, 2014, 「廣開土王陵碑의 문장구성과 서사구조」, 『영남학』 25
- 尹在碩, 2011, 「秦·漢初의 戶籍制度」, 『中國古中世史研究』 26
- 尹在碩, 2013, 「中國古代의 守墓制度」, 『東洋史學研究』 124
- 李道學, 2002, 「광개토왕릉비문의 國烟과 看烟의 性格에 대한 再檢討-被征服民 施策과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 28
- 李成珪, 1985, 「秦帝國의 舊六國統治와 그 限界」, 『閔錫泓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三英社
- 李仁哲, 1997, 「4~5세기 高句麗의 守墓制-廣開土王碑의 守墓人烟戶條를 중심으로-」, 『淸溪史學』 13(白山朴成壽教授停年紀念特輯號)
- 임기환, 1994, 「광개토왕비의 국연(國烟)과 간연(看烟)」, 『역사와 현실』 13
- 林起煥, 1995,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 研究」,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林起煥, 1996, 「廣開土王陵碑文에 보이는 ‘民’의 성격」, 『廣開土王陵碑文 研究 100年』, 高句麗研究會

임기환, 2014a, 「광개토왕비의 건립 과정 및 비문 구성에 대한 재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임기환, 2014b,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 守墓制의 변천」, 『韓國史學報』 54

정호섭, 2012, 「廣開土王碑의 성격과 5세기 高句麗의 守墓制改編」, 『先史와 古代』 37

趙法鍾, 1995,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守墓人의 編制와 性格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8

趙仁成, 1988, 「廣開土王陵碑를 통해 본 高句麗의 守墓制」, 『韓國史市民講座』 3

최진열, 2015, 「16국시대 遼西의 인구 증감과 前燕·後燕·北燕의 대응」, 『백제와 요서지역(7)』, 한성백제박물관

홍승우, 2013, 「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律令의 형식과 守墓制」, 『韓國古代史研究』 72

浜田耕策, 1973,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虚像と實像」, 『日本歴史』 304

浜田耕策, 1974,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浜田耕策, 1982, 「好太王碑文一二問題」, 『歴史公論』 8-4, 雄山閣出版

○ 단행본

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조법중, 2006, 『고조선·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고대 중국의 守墓 제도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守墓와 徙民」에 대한 토론문

장병진 | 경상국립대학교

안정준 선생님의 발표는 그동안 「광개토왕릉비」 수묘인연호조의 문장을 곧바로 당시 수묘제와 수묘역 동원의 구체적 실상을 복원하는 자료로 삼아 온 연구 경향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중국 秦·漢 이래의 守墓·徙民 제도라는 제도사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舊民’과 ‘新來韓穢’, ‘國烟’과 ‘看烟’, 그리고 ‘不知法則’의 의미를 중국의 陵邑 사민 구조와 什伍制 등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고구려 수묘제가 단순한 의례나 역역 제도가 아니라 피정복민 통제, 수도권 재편과 강화, 정치적 선전 기능이 결합된 복합적 장치였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 하였습니다.

또한 발표문에서는 비문에 나타난 ‘差錯’이 수묘역 운영상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행정적 규정이 아니라, 이러한 차착을 예방하고 수묘인 관리 및 제도 운영에 대한 왕실의 의지를 공표하는 상징적·의례적 장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수묘인연호조를 실질적 제도 기록으로 간주하던 기존 연구와 달리, 비문의 성격에 주목하여 왕명의 공표, 제도의 정당화, 국가 권위의 시각화라는 측면을 부각한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연과 간연을 ‘직접 수묘’와 ‘간접 지원’이라는 기능적 차이로 재해석하고, 특히 300가에 이르는 간연을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수묘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으로 이주된 피정복민 집단으로 파악한 점은 매우 주목됩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의 수묘제가 국가 의례를 위한 역역 동원 제도로 기능했을 뿐 아니라, 인구 재편과 정치적 통제, 수도권 강화가 결합된 복합적 정책으로 기능했음을 밝힌 것은 이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 역시 「광개토왕릉비」 수묘인연호조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관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문의 서술을 곧바로 제도의 실상으로 환원하지 않고, 그 서술의 성격과 정치적 상징성을 함께 고려해 읽어내려는 시각은 연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소 비판적 관점에서 약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은 토론자가 과문한 까닭에 선생님의 논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고구려 수묘제를 前漢의 능읍 사민과 비교하신 부분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한의 능읍 사민은 기원전 40년경 이미 폐지되었고, 이후 後漢·魏·晉을 거치는 동안 수묘제의 조직과 운영 방식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후한 이후에는 묘역 관리를 지방 관청이나 주변 주민에게 맡기는 등, 전한 시기 능읍 사민과는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두 제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속성을 상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학계 내외에서 강조되는 ‘동아시아사’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여러 국가가 공유했던 정복민 이주

와 통제라는 일반적 통치 원리, 혹은 왕릉을 매개로 수도권을 재편, 강화하려는 보편적 전략을 고구려의 맥락에서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된 설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문의 서술로도 알 수 있듯이 전한 능읍 사민과 고구려 수묘제는 구성과 기능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전한에서 부호층의 능읍 이주를 적극 피하여 정치, 경제 기반 강화와 상대적인 지역의 열세화를 도모한 것이 드러나지만, 고구려의 경우는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실제 수묘역에 동원되는 대상들에 국한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수묘를 명분으로 한 사민’이라는 표면적 유사성만으로 비교하기에는 여전히 그 차이가 커 보입니다.

둘째로, 간연 300가를 ‘수묘 명분 아래 수도권에 이주시킨 피정복민 집단’으로 해석하셨지만, 이들의 역할이나 관리에 대한 설명은 다소 모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발표문에서는 간연에 대해 ‘수묘’라는 명분으로 遷徙되었지만 실제로는 국연과는 다른 지역에 머물며 별도의 역할을 수행했던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국연의 缺戶 발생 시에 이를 충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존재라고 설명하는 것에서도 그 모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 간연이 국연과 분리된 지역에 사민되어 거주한 것을 상정하면서도, 이들이 원주지에 잔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해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역의 동원이 가호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면, 지역별로 연호 목록을 명기하는 것이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올러 “광개토왕대에 한예 200가라는 많은 수의 간연이 산정된 배경에는, 피정복민을 고구려의 직접적 통제 아래 두는 한편 수도권의 강화와 수취 기반 확대에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나아가 광개토왕 사후 장수왕대에 이르러, 많은 수의 한예만을 수도 인근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고구려에 비교적 장기간 순응해온 舊복속지 주민(舊民)을 함께 거주시켜 한예의 ‘不知法則’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300가라는 대규모의 간연이 다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묘를 명목으로 간연을 설정해 사민한 것은 특수한 사례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祖先王의 능묘에도 간연과 같은 수묘호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부족한 질문이지만, 선생님의 논의를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천 옥전 M1호분 출토 로만글라스

유우창 | 부산대학교

1. 머리말
2. 4세기 후반 ~ 5세기 초 삼국 및 가야의 상호관계
3. 고구려와 북방민족과의 관계
4. 옥전 로만글라스의 유입경로
5. 맺음말

1. 머리말

지금의 합천지역에는 스스로의 국명을 ‘다라국’이라고 표방한 가야 정치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합천 박물관이 소재하고 있는 합천군 쌍책면에는 다라국의 왕릉급 무덤을 포함한 무덤떼인 옥전고분군이 조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M1호분에서 당시 유럽에 존재했던 로마제국에서 생산된 로만글라스¹⁾인 ‘청색 반점무늬 유리완’이 출토되었다.²⁾

합천 옥전M1호분에서 출토된 로만글라스(이하 ‘옥전 로만글라스’라고 약칭함)는 김해 대성동91호분에서 로만글라스 1조각³⁾이 출토되기 전까지는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유일한 로만글라스였다. 지금도 옛 가야지역에서는 발굴조사가 거듭되고 있지만, 새로운 로만글라스의 출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옥전 로만글라스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로만글라스 자체가 그만큼 희귀한 존재라고 할 것이다. 과문의 소치이겠지만,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故地에서의 발굴조사에서도 더 이상의 로만글라스 출토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⁴⁾

옥전 로만글라스는 완형으로 출토되었다. 한반도에서 완형으로 출토된 로만글라스는 신라 고지에서 출토된 것들을 제외하면 옥전 로만글라스가 유일하다.⁵⁾ 옥전고분군에서 출토된 위세품적 유

1)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476년까지 광대한 로마제국의 강역 내에서 생산된 유리그릇을 총칭하는 말이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진남색 반점무늬 유리완과 같은 유형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3) 길이가 3.9cm라고 한다.
4)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가라국의 고지 즉 경북 고령지역에서도 출토되었어야 마땅한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꽤 의아하다.

물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여겨지는데, 옥전 로만글라스도 1000년이 넘도록 땅속에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왔다.

이와 같은 로만글라스가 어떻게 한반도에서 출토되는가?6) 이 점에서 대해서는 그동안 꽤 많은 연구가 있어 왔는데, 스텝루트를 통한 선비족 등 유목민족의 중계로 인해 한반도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가설이 대체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치에 부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합천 옥전고분군에 로만글라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종래 신라와의 지리적 거리 및 신라계통 유물들의 출토 등을 통해 옥전 로만글라스도 신라가 다라국에 사여한 것으로 이해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생각해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 글을 작성하는 목적 중 하나이다.

2. 4세기 후반 ~ 5세기 초 삼국 및 가야의 상호관계

미천왕대의 고구려는 313년에 낙랑군을, 314년에 대방군을 공격하여 그곳에 웅거하고 있던 중국 통치세력들7)을 한반도 밖으로 축출하였다.8) 그럼으로써 적어도 한반도에서만은 중국 세력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9)하는데 성공하였다.

미천왕의 뒤를 이은 고국원왕은 낙랑 故地에 대한 경영을 확고히 하고자 한 듯하다.10) 그러던 중 342년에 선비족 前燕의 대대적인 침공이 있었다. 고구려는 패전하고 말았는데, 미천왕의 시신, 왕모, 왕비, 그리고 남녀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새로 수리했던 국내성 및 환도성이 불타버리거나 훼손당하였다.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패전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국난이었다.

이후 10여 년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355년 고국원왕은 전연의 책봉을 받았다.11) 그럼으로써 전연

5) 백제지역인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로만글라스는 좀 큰 조각이거나 거의 분쇄되다시피한 파편에 지나지 않다.

6) 1세기가 되면서 지중해 동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롱불기법’이 창안되었다. 대롱불기법은 로만글라스 생산체계에 커다란 혁신을 초래했다. 생산의 혁신으로 로만글라스는 로마제국 영토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는데, 로만글라스는 유럽뿐 아니라 극동아시아지역에까지 전파되었다.

7) 『資治通鑑』 권88, 晉紀10, 孝愍上 建興 원년, “遼東의 張統이 樂浪과 帶方 2군에 웅거하고 있었다. 高句麗의 왕 乙弗利와 함께 서로 공격하여 해마다 화해할 수 없었다. 樂浪의 王遵이 장통에게 유세하여 그 백성 천여 가를 이끌고 慕容廆에게 귀순하였다. 모용외는 그를 위하여 樂浪郡을 설치하여, 장통을 太守로 삼고, 왕준을 參軍事로 삼았다.” 이 기사에 의하면, 장통과 왕준 등이 이에 해당된다.

8) 300년 정변에서 왕으로 추대된 고구려의 미천왕은 302년, 현도군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漢郡縣(당시는 핏의 郡縣)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후 10년 정도의 기간을 둔 고구려는 311년 평 본토와 한반도 내의 낙랑군·대방군을 연결하는 길목에 해당하는 西安平을 함락시킨 바 있다.

9) 고구려는 낙랑군·대방군을 축출한 기세를 타고 이듬해인 315년에는 현도군의 현도성을 재차 공격하여 한반도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10) 유우창, 「4~6세기 가라국의 대외관계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9쪽.

11) 『晉書』 권110, 載記10, 慕容儁의 기사에 의하면, 고국원왕은 모용준으로부터 ‘營州諸軍事 征東大將軍 營州刺史 樂浪公 高句麗王’이라는 책봉호를 받았는데, 여기서 ‘낙랑공’이라는 봉작은 313년·314년 고구려가 낙랑군·대방군을 요동으로 축출한 이래, 전연이 낙랑 및 대방 고지에 대한 고구려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과는 평화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전연과 화친으로 고구려는 전통적인 서진정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결과적으로 남진정책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¹²⁾ 이제 백제와 대방고지¹³⁾를 사이에 둔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A-① (369년) 가을 9월, 고구려왕 斯由가 步騎 2만을 이끌고 와서 雉壤에 주둔하고 군사를 나누어 民戶를 침탈하였다. 왕이 태자를 보내니 (태자는) 군사를 이끌고 신속히 雉壤에 이르러 급히 공격하여 깨뜨리고 5천여 급을 죽였다. 虜獲한 것을 장수와 사졸에게 나누어 주었다.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24년)

A-② (371년) 高句麗가 군사를 일으켜 왔다. 왕이 그것을 듣고 溟河의 상류에 군사를 매복시켰다. (고구려 군사가)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급히 공격하니, 고구려 군사가 패배하였다. 겨울, 왕은 태자와 함께 精兵 3만을 이끌고 高句麗를 침공하여 平壤城을 공격하였다. 高句麗王 斯由가 힘써 싸워 저항하다가 流矢에 맞아 죽었다. 왕은 군사를 이끌고 퇴각하였다. 漢山으로 도읍을 옮겼다.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26년)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을 충분히 예상하고 군사를 강하게 조련하여 대비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인접국에 대한 외교관계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364년 이전에 백제는 우선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가야와 우호관계를 맺었고,¹⁴⁾ 366년과 368년에 걸쳐 신라와 ‘화호’ 혹은 ‘화친’하였다.¹⁵⁾ 이제 백제는 적어도 가야나 신라로부터의 침공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고구려와 대결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¹⁶⁾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대결 국면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었다. 369년 9월, 고구려군이 대방 고지인 치양(황해도 배천)을 공격하였지만, 백제 태자 근구수에 의해 격퇴당하였다(A-①). 371년에 고구려가 백제를 재침하자 백제는 패하(예성강)의 상류에서 매복 작전으로 고구려군을 격퇴하였다. 그리고 이 해 겨울, 백제 근초고왕은 태자와 함께 군사 3만을 이끌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 고국원왕이 유시(流矢)에 맞아 전사¹⁷⁾하였다(A-②).

백제는 366년 가야를 매개로 왜와도 통교하였는데, 372년에 칠지도를 왜에 하사함으로써,¹⁸⁾ 완결

봉작이다.

12) 유우창, 「5~6세기 ‘나제동맹’의 전개와 가야의 대응」 『역사와 경계』 72, 2009, 119쪽 참조.

13) 아래 제시한 A-① 사료를 보면 백제는 치양(황해도 배천)으로 대표되는 대방고지를 이미 점령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전연과 투쟁에 전념하는 동안 백제가 공취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14) 『日本書紀』 권9, 神功紀 46년 춘3월조 참조. 신공기의 기년은 『삼국사기』의 백제왕력과 비교하여 120년 즉 2주갑을 인하여 이해하는 설과 『삼국사기』에 출현하는 인물과 비교하여 부분적으로는 3주갑 즉 180년 인하여 이해하여야 한다는 설로 대별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느 설이 옳다고 확정된 바는 없다. 이 글에서는 2주갑 인하설에 따랐다.

15)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1년 및 近肖古王 23년. 같은 내용이 신라본기에도 전한다.

16) 白承忠, 「《일본서기》 神功紀 소재 한일관계 기사의 성격」 『광개토대왕비와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 174쪽. 유우창, 「4~6세기 가라국의 대외관계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20쪽.

17) 백제는 A-①과 A-② 사료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의 선제공격을 잘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구려의 평양성을 역공하여 낙랑고지까지 옛보게 되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다만 곧바로 철군하고 漢山으로 왕의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보아 애초에 고국원왕을 제거하고자 의도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고국원왕은 불운하게도 기록된 그대로 ‘流矢’에 맞아 전사했던 듯하다.

지었다.¹⁹⁾ 동진과는 372년에 사절을 파견하여 이전부터의 교섭·교류를 공식적인 우호관계로 발전시켜 서쪽으로부터도 고구려를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²⁰⁾ 이상과 같은 백제의 적극적 외교 교섭은 모두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던 중 백제와 화친관계를 맺고 있던 신라가 갑자기 이탈하여 고구려와 연결되는 단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373년 백제의 독산성주가 3백 명을 이끌고 신라로 투항한 사건이었다. 백제는 신라에 대하여 송환을 요구하였다. 신라가 이를 거부하자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양국 관계는 파탄에 직면²¹⁾하게 되었다.

이때 공교롭게도 고구려가 신라를 포섭하게 되었는데, 신라는 377년, 당시 북중국의 패자 前秦에 사신을 파견하였다.²²⁾ 지리적 위치나 당시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신라의 사신은 고구려의 사신을 따라갔던 것²³⁾으로 여겨진다.²⁴⁾ 고구려는 ‘중국’이라는 선진문물 공급처를 소개함으로써 신라를 자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던 것이다.²⁵⁾ 이후 고구려는 신라 왕족 실성을 볼모로 받아들임으로써²⁶⁾ 양국 관계는 더욱 공고해지게 되었다.²⁷⁾

4세기 후반부터 한반도는 ‘고구려-신라 연합’ 대 ‘백제-가야-왜 연합’의 대결의 양상이 성립되었는

18) 『日本書紀』 권9, 神功紀 46년~52년에 걸치는 기사들 참조.

19) 李根雨,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994, 66쪽. 白承忠, 「『일본서기』 神功紀 소재 한일관계 기사의 성격」 『광개토대왕비와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 133쪽.

20)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7년 및 『晉書』 권9, 帝紀9, 簡文帝 咸安 2년. 『晉書』는 東晉이 같은 해 6월, 사신을 파견하여 근초고왕을 ‘鎮東將軍領樂浪太守’로 책봉하였음을 전한다. 백제가 역대 중국 왕조로부터 수여받고 있는 것처럼 ‘영대방태수’라는 봉작이라면 몰라도 ‘영낙랑태수’라는 봉작은 백제 왕에게 씌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372년 정월의 백제 ‘건진사’ 임무는 조공뿐 아니라 371년 10월 백제가 고구려와 치른 ‘평양성 전투’에서의 승리와 그에 부수한 평양성 확보를 알리며 그에 걸맞은 봉작을 요청했던 듯하다. 동진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근초고왕에게 ‘영낙랑태수’라는 봉작을 수여했던 것이었다. 즉 백제는 ‘평양성 전투’ 후 평양성을 중심으로 한 옛 낙랑 지역까지 영유했던 것이다. 다만 그 영유 기간은 그리 오래지 않았던 것 같다(유우창, 「4~6세기 가라국의 대외관계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22쪽).

21)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 53쪽. 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1996, 100쪽. 孔錫龜,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1998, 204~205쪽.

22) 『資治通鑑』 권104, 晉紀26, 烈宗上之中 太元 2년.

23)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118쪽.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401쪽. 李弘植,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437쪽.

24) 적어도 고구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 58~59쪽. 宣石悅, 『新羅國家 成立過程研究』, 혜안, 2001, 146~147쪽. 강종훈, 「신라의 입장에서 본 나제 동맹」 『백제와 신라의 소통 나제동맹』,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8, 64쪽. 한편 노중국은 최근에 신라가 백제의 도움을 받아 전진에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여 이전의 설을 수정하였다. 즉 『태평어람』에 위두의 전진 견사 때 ‘신라국은 백제의 동쪽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신라의 위치를 고구려가 아닌 백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노중국, 「4~6세기 나제동맹의 성격과 의미」 『백제와 신라의 소통 나제동맹』,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8, 38쪽 참조).

25) 유우창, 「4~6세기 가라국의 대외관계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23쪽.

26)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6, 故國壤王 9년. 「광개토왕릉비문」에 의하여 고국양왕 9년은 광개토왕 2년에 해당한다.

27) 유우창, 「4~6세기 가라국의 대외관계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23쪽.

기야 고구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실성왕과 눌지왕을 선택적으로 즉위시키기도 하였다. 즉 신라에 대하여 아주 강한 내정간섭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3. 고구려와 북방민족과의 관계

조부 司馬懿, 부친 司馬昭의 뒤를 이어 魏나라의 권신이 되었던 司馬炎은 蜀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를 찬탈한 다음, 새로 晋나라를 건국하여 武帝로 즉위하였다. 3세기 후반인 280년이 되자 蜀나라마저 멸망시켰다. 진나라는 사실상 중국의 삼국인 위·촉·오 모두를 멸망시키고 삼국시대를 종식시켰다. 그런 진나라도 무제가 죽자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3세기 후반 새로이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西晋)는 3세기 말부터의 왕실의 내부적 혼란, 즉 8왕의 난³³⁾을 겪으면서 그 국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만리장성 밖의 이민족들이 봉기하여 수도 낙양을 함락시키는 永嘉의 亂³⁴⁾이 발생하였다. 사실상 진나라는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洛陽이 폐허가 되자 317년 진나라의 瑯邪王 司馬睿는 지금의 남경인 건강에서 새로이 東晋을 건국하고 元帝로 즉위하였다. 그렇지만 통치지역은 강남지방만으로 한정되었고,³⁵⁾ 중국 북부지역은 匈奴, 氐, 羯, 鮮卑, 羌 등 이른바 '5胡'로 불리는 유목민족들이 거듭 봉기하여 16개의 나라가 명멸하는 5호 16국시대³⁶⁾가 도래하였다.

'5호' 중 한국사와 가장 관련이 깊은 유목민족은 선비족이었다. 선비족으로 한국사에서 알려진 세력으로는 '우문씨', '단씨' 등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慕容氏'와 '拓拔氏'가 고구려와 상호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주목된다. 먼저 모용씨가 크게 성장하는데, 고구려는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국조차 강남지역만 통치하기에 급급했던 동진의 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나중에 前燕을 건국하는 선비족 모용씨³⁷⁾가 곧바로 요동지역으로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동진의 東夷校尉 崔毖 및 선비족 우문씨, 단씨 등과 함께 연합하여 모용씨를 협공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연합은 모용외가 우문씨, 단씨 등을 각개 격파하는바람에 실패하게 되고 최비는 결국 고구려로 망명해 버리고 말았다.³⁸⁾ 결과적으로 요동지역은 모용씨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고구려는 서쪽에서 모용씨와 강력히 대립하고 있던 갈족³⁹⁾의 後趙⁴⁰⁾와 연합을 맺고 모용씨를 압박하고 있었다. 모용씨는 337년 慕容皝이 燕王을 칭하며 前燕의 건국을 선포하더니 342년 고구려를

33) 진나라 때인 291년~306년에 일어난 내란으로 황족인 사마씨 8명의 왕이 관여하였다. 국도 낙양은 전란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여러 왕이 병력 보급을 위하여 끌어들이던 흉노·선비 등 북방 유목민족은 그후 화북 각지에서 증식하여 이른바 '5호16국'의 주 원인이 되었다.

34) 서진 말기인 회제의 영가연간(307~312)에 흉노가 일으킨 큰 반란이다. 서진은 흉노 왕조인 前趙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35) 그러나 산둥반도만큼은 여전히 영유하고 있었다.

36) 달리 '五胡亂華'라고도 한다.

37) 모용외→모용황→모용준 순으로 계승해갔다.

38) 이후 중국 방면에서 고구려로 망명해온 인사들이 다수 생겨났다. 안악3호분의 동수, 그리고 덕흥리고분의 유주자사 진이 그 예이다.

39) 흔히 高鼻人이라고 한다.

40) 석륵→석호로 계승되었다.

대대적으로 침공하였다. 패전한 고구려는 결국 전연⁴¹⁾과 화친하게 되고 국가의 진출방향을 남쪽으로 선회하게 되었다.⁴²⁾

한편 중원에서는 저족 前秦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고구려는 이전의 선비족 전연과는 달리 전진과 화친을 맺었다. 전진은 뜻밖의 사건 발생으로 한국사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370년, 전진이 전연을 멸망시키고 요동지역을 장악한 것이 그것이다.

고국원왕은 고구려로 망명해 왔던 전연의 왕족 모용평을 전진으로 압송하였는데, 이것이 전진과 화친하게 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국원왕의 뒤를 이은 소수림왕도 372년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⁴³⁾하여 공인하였는데, 전진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한 화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른바 5호16국시대의 나라들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곤 했는데, 전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진도 갑자기 몰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진은 중국대륙을 통일하기 위하여 383년 강남의 동진을 침공하여 병합하려다 오히려 淝水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⁴⁴⁾ 허무하게 몰락하고 말았다.

전연의 왕자 출신이었던 慕容垂가 전진이 몰락한 틈을 타 선비족을 규합하여 384년 後燕을 건국하였다. 후연도 건국하자마자 요동지역을 장악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던 고구려와 필연적으로 대결하겠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마침내 고구려와 후연은 요동을 사이에 두고 강력하게 대치하였다. 이윽고 고구려와 후연의 공방전이 발발하였다.

고구려는 후연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다. 385년 소수림왕의 아우로 뒤를 이은 고국양왕은 후연이 요동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그곳을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영유하는 듯했다. 그러나 같은 해 후연의 반격을 받아 요동은 다시 그들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제 요동진출이라는 대업은 고국양왕의 아들인 광개토왕이 맡게 되었다.

광개토왕은 적극적으로 후연을 정벌하여 마침내 요동지역을 항구적인 고구려의 영토로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400년,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기 5만의 군사를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시키자, 후연은 그 틈을 타 고구려를 공격하였다.⁴⁵⁾ 잠시 위기에 봉착한 고구려는 후연의 침공에 강력히 대응하였다. 즉시 신라로 파견했던 5만을 철군시켜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 후연을 역습하였다.

402년에는 요하를 건너 요서의 숙군성을 함락시키기도 하였다. 그 후 지속적으로 서진하여 마침내 404년에는 대릉하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비록 요서는 국력의 미비로 계속 영유하지 못했지만, 요동은 완전히 장악하여 이후 당나라에게 멸망될 때인 668년까지 고구려의 영토로 유지되었다.⁴⁶⁾

41) 모용황을 계승한 모용준은 352년 11월 황제를 칭하였다.

42) 이때부터 고구려는 평양에 큰 관심을 두고 서서히 천도를 진행시킨 듯하다. 「광개토왕릉비문」에 의하면 광개토왕은 평양에 머문바 있고, 그 아들이 장수왕 때 마침내 평양으로 천도하게 된다.

43) 순도가 불상과 불경을 들고 입국하였다. 순도는 초문사에 거쳐하였다.

44) 전진이 동진을 정벌하기 위해 남하했다가 회하의 지류인 비수에서 80여 만의 전진군이 동진 사현이 이끈 8만의 군사에게 대패하였다.

45) 이때 신성과 남소성이 함락당했다.

46) 이후 중국 왕조는 고구려왕을 요동군공 혹은 요동군왕으로 책봉하였다.

그 후 중국의 정세는 비교적 짧았던 5호16국시대가 종식되고 새로 남북조시대로 전개되었다. 420년, 중국 강남에서는 동진이 멸망하고 劉裕⁴⁷⁾에 의해 宋나라가 건국되었다. 한편 북중국에서는 선비족 탁발씨의 北魏가 등장⁴⁸⁾하여 북중국을 통일하고 5호16국시대를 종식시켰다. 남조의 송나라와 북조의 북위가 서로 중국대륙의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조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이에 긴장한 고구려는 북위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 북위의 팽창은 고구려에게도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특히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여 본격적으로 남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고구려로서는 서쪽 국경의 안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우선 고구려는 송나라와 유연과 외교교섭을 통하여 북위를 견제하였다.

고구려와 북위 사이에는 北燕⁴⁹⁾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었다. 436년 북위가 북연을 멸망시키자 고구려와 북위는 이제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멸망당한 북연의 왕 풍홍은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북위는 풍홍을 압송하라고 고구려에 요구하였는데, 고구려의 장수왕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약 20여 년간 고구려와 북위는 상호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고구려와 북위 양국은 화해하게 되었다. 462년 장수왕은 단절되었던 양국관계를 개선하고자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남쪽의 ‘나제동맹’⁵⁰⁾이 가시화되어 고구려를 위협한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북위 또한 대립하고 있던 남쪽의 송나라나 북쪽의 유연 등과의 관계를 고려, 고구려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양국의 관계는 급속히 개선되었다.

고구려는 매년 사신을 파견하다시피하며 북위와의 우호관계 유지에 노력하였다. 그러면서도 고구려는 남조(송-제) 및 유연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등 특유의 남북양조 다원외교를 구사하였다.

4. 옥전 로만글라스의 유입 경로

로만글라스의 가치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굴했다면 수천에서 1~2만 점의 유물이 출토되는 가야 및 신라의 고분에서 로만글라스는 기껏해야 한두 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⁵¹⁾ 많아야 열 점 내외 정도로 출토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나라 고대인들은 로만글라스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 아마도 현대의 보석만큼이나 귀중했던 것이 당시의 로만글라스였을 것이다. 단적으로 황남대총 남분⁵²⁾ 출토의 봉수형 수병은

47) 동진의 장군이자 남조 송나라의 제1대 황제이다. 묘호는 고조이고 시호는 무제이다. 무공뿐 아니라 통치 수완도 뛰어났다고 하지만 즉위 3년 만에 사망하였다.

48) 북위의 초대 황제는 탁발규였다. 묘호는 태조이고 시호는 도무제이다. 중국적 국가체제를 채용하였다고 한다.

49) 한족인 풍발이 찬탈한 왕조. 풍홍으로 계승되었다.

50) 나제동맹에 대해서는 유우창, 「5~6세기 ‘나제동맹’의 전개와 가야의 대응」 『역사와 경계』 72, 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51) 특히 가야의 경우, 합천 옥전M1호분에서 1점만 출토되었고, 김해 대성동91호분에서 출토된 것은 그나마 완형도 아닌 파편에 지나지 않았다.

52) 무덤 주인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17대 나물왕설, 제18대 실성왕설, 제19대 눌지왕 설 등이 나와 있다.

손잡이가 깨진 것을 금줄을 이용하여 파손 부분을 보수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매우 귀하게 사용되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대 고분군에서 출토된 로만글라스의 생산지와 의미는 무엇일까? 가야 및 신라에서 출토된 로만글라스의 경우 대부분 지중해 동쪽 해안 지방⁵³⁾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및 신라가 지중해 동쪽 해안 지방과 직접 교류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무역업자들의 활약이 숨어있다. 로마의 유리 산지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로만글라스⁵⁴⁾는 널리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수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급하는 무역업자들이 각지에서 활약했을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중해 동쪽 해안의 로만글라스는 흑해 서쪽 해안과 북쪽 해안 지방에까지 대량으로 수출되었는데, 지금의 남러시아 일대에서 대량으로 발굴되고 있다. 신라에서 출토되는 로만글라스는 초원의 기마민족에 의해 중앙아시아, 몽골, 요령⁵⁵⁾을 거쳐 들어온 것들이다. 유사한 로만글라스들이 ‘초원의 길’ 주변에서 출토된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로만글라스의 유입 경로는 어떠할까? 당시 가야 및 신라는 한반도 남단에 격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 가져올 수는 없었다. 그것이 육로든, 바닷길이든 반드시 중간 매개자를 통해서 들여왔을 것임은 명확하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가야의 경우 3세기 이전부터 낙랑군 및 대방군의 중국 세력과 고구려 및 백제와 바닷길을 이용한 교류를 행하고 있었다. 특히 고구려와의 관계가 주목되는데, 4세기 후반을 제외하고 가야는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지속하였다.⁵⁶⁾ 신라는 왜의 침공을 받아 고구려의 도움으로 이를 물리쳤으며, 이후 실성왕과 눌지왕은 고구려왕에게 임명되는 등 5세기 후반까지 친고구려화가 지속되었다.⁵⁷⁾ 특히 가야지역에서는 5세기 이후 고구려계 유물이 꾸준히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이 무렵 가야와 고구려의 우호관계를 반영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천마총에서 출토된 로만글라스 2점의 경우, 시리아에서 4~5세기에 만들어졌으며, 흑해에서 북상하여 크림 반도에 상륙했다가, ‘초원의 길’을 거쳐 고구려를 통과해 5세기에 경주에 도달했을 것이다.⁵⁸⁾ 또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로만글라스의 유입 경로는 흑해 북쪽 해안에서 ‘초원의 길’을 통해 동쪽으로 전해지고 중국 북부의 대동(大同)을 경유하여 신라의 경주에 이른다고 한다.

이치에 합당하고 또 충분히 인정될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동은 고구려와 화친관계를 맺

53) 대체로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다.

54) 1세기 전후 출현한 대롱불기법에 의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55) 지금 요령지역은 중국 땅이지만, 5세기 이후 7세기 후반까지는 안정적인 고구려의 영토였다.

56) 4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의 노력으로 가야가 백제에게 포섭되기 전후 가야는 고구려와 좋은 관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7) 고구려-신라 우호 관계의 경우,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73년 독산성주가 백제로부터 망명해와 백제와 우호관계를 정리하고 고구려와 새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이후 고구려남정을 통해 결정적으로 고구려의 영향력하에 있게 된다.

58) 요시미즈 츠네오 지음 / 오근영 옮김, 『로마문화 왕국, 신라』,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2, 133쪽.

<표1> 5~6세기 가야지역 출토 고구려계 유물

시기	유적명	유물	참고문헌
5C	함안 도항리8호분	馬冑·馬甲	⑩
5C 전반	합천 옥전23호분	馬冑·馬甲	⑨
5C 중반	함안 마갑총	馬冑·馬甲	⑦
5C 중반	합천 옥전M1호분	馬冑 馬甲	⑥
5C 2/4	고령 지산동32호분	鎧子·轡·銅鈴	③⑫
5C 2/4	고령 지산동35호분	馬具	⑫
5C 2/4	합천 옥전M3호분	馬冑·蛇行狀鐵器	⑤
5C 3/4	합천반계제가A호분	馬冑	④
5C 3/4	합천 옥전28호분	馬冑·馬甲	⑨⑪
5C 3/4	고령 지산동45호분	馬甲	①
6C 1/4	진주 수정봉 2호	蛇行狀鐵器	②
6C 2/4	진주 옥봉 2호	蛇行狀鐵器	②
6C 3/4	고령 고아동벽화고분	壁畵技法	⑧

<참고문헌>

- ①啓明大學校博物館, 『大加耶古墳發掘調査報告書』, 1979.
- ②崔鍾圭,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7, 1983.
- ③申敬澈, 「古式鎧子考」 『釜大史學』9, 1985.
- ④國立晋州博物館, 『陝川礪溪堤古墳群』, 1987.
- ⑤慶尙大學校博物館, 『陝川玉田古墳群』II, 1990.
- ⑥慶尙大學校博物館, 『陝川玉田古墳群』III, 1992.
- ⑦洪性彬·李柱憲, 「咸安 말갑옷(馬甲) 出土古墳 發掘調査概報」 『文化財』26, 1993.
- ⑧崔光植, 「大加耶의 信仰과 祭儀」 『加耶史研究 -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1995.
- ⑨慶尙大學校博物館, 『陝川玉田古墳群』VI, 1997.
- ⑩昌原文化財研究所, 『咸安道項里古墳群』IV, 2001.
- ⑪中山清隆, 「馬具からみた鮮卑と加耶」 『清溪史學』16·17, 2002.
- ⑫姜賢淑, 「考古學에서 본 4·5세기 高句麗와 加耶의 成長」 『加耶와 廣開土大王』(第9回 加耶史國際學術會議 發表要旨), 金海市, 2003.

은 북위의 수도였다. 어쩌면 고구려는 북위를 포함한 여러 기마민족을 통하여 로만글라스를 입수하고 서관관자 2호분에 매납하기도 하였고, 우호관계에 있던 가야 및 신라에 선물했던 것은 아닐까?

한편 김해 대성동 91호분에서 출토된 유리과편의 경우, 발굴자는 4세기대 동진과 삼연권역에서 서역계유리가 출토되므로, 중국대륙을 거쳐 가야로 들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그러나 삼연(전연·후연·북연)은 기록 자료에 의하는 한, 가야 및 신라와 직접 통교한 적이 없다. 이 점은 동진 또한 마찬가지이다. 발굴자의 언급처럼 중국대륙을 거쳐 김해로 왔다고 하더라도 먼저 고구려를 경유한 다음 김해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천 옥전M1호분에서는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것과 거의 같은 로만글라스가 출토되었다. 그 동안 신라 금관과 동일한 모티브로 제작된 금동관 등이 옥전고분군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옥전 로만글라스 또한 신라로부터 이입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되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옥전 로만글라스의 경우, 그 제작자를 신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입 가능성은 시각을 좀 더 넓혀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가 옥전글라스의 고구려로부터 유입 가능성일 것이다.

5. 맺음말 - 생략

「합천 옥전M1호분 출토 로만글라스」에 대한 토론편

이동희 | 인제대학교

발표자는 합천 옥전 M1호분(5세기중엽) 출토 로만글라스(Roman-Glass)에 대해 당시 고구려가 우호관계에 있던 가야에 사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종래 옥전고분군 출토 로만글라스를 신라로부터 이입된 것으로 보는 통설과는 다른 견해이다. 발표자의 견해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할 부분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상술하기로 한다.

1. 다라국의 위치

발표자는 “합천 쌍책면에는 스스로의 국명을 ‘다라국’이라고 표방한 가야 정치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주장하였다. 다라국의 위치를 합천 옥전 고분군 일대로 보는 견해가 고고학계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문헌사학계에서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라국을 옥전 고분군 축조세력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옥전 고분군 주변에 ‘다라리’라는 지명이 있다는 점과 합천 지역에서 가장 탁월한 유물이 출토되는 고분군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다라리’ 지명

다라국과 옥전고분군을 관련지은 것은 多羅와 大耶가 음운상 통하여 多羅國이 합천에 비정되고, 옥전고분군에서 약 1km 이격된 곳에 다라국과 연계지을 수 있는 ‘다라리’가 소재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¹⁾.

박성현은 다라국을 합천 쌍책면 옥전고분군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고고학자들이 주로 다라국의 무덤으로 본 옥전고분군은 초팔해국(산반하국)의 지배층과 관련된 유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옥전고분군은 기존 초계군의 영역, 郡治 부근에 위치하며 그 일대에 다른 가야고분군이 없다는 점에서 초팔해(사팔해)국, 나아가 산반하(해)국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라리’는 다라곡, 즉 월곡(月谷)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명 비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다라리는 달처럼 생긴 골짜기에서 유래했으며, 다라는 곧 달(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라국의 ‘다라’는 ‘가라’국, ‘안라’국과 같은 형식으로 달과는 무관하다²⁾.” 이러한 견해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즉, 조선시대 이전의 초계군

1) 조영제, 2007, 『옥전고분군과 다라국』, 해안, 187-188쪽.

2) 옥전고분군을 다라국의 것으로 보는 견해는 그 근거의 하나로 인근에 ‘多羅里’라는 지명이 있다는 것을 든다. 이것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다라리의 가장 오래된 표기는 『호구총수』의 다라곡촌(多羅谷村)인데, 한글학회에서 출간한 『한국지명총람』에 따르면 다라리의 마을 형상이 달처럼 생겼다고 하여 다라실 혹은 다라동, 월곡(月谷)으로 불렸다고 한다(전덕재, 2011, 「탁국(탁기탄)의 위치와 역사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

의 영역은 초계면·적중면·청덕면·쌍책면·덕곡면·울곡면을 포함하며, 쌍책면 성산리에 있었던 중심지가 후대에 현 초계면 일대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³⁾.

같은 맥락에서 초팔해국(사팔해국,산반하국)의 위치를 쌍책면 옥전고분군에 비정한 김태식의 다음 견해는 주목된다.

“초계라는 이름은 신라의 八谿縣을 고려초에 고친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草溪郡 條에 근거해 보면, 현재의 행정구역에서는 합천군 초계면·쌍책면·덕곡면·청덕면·적중면과 울곡면의 동쪽 일부를 포괄한다. 이는 이 지방에 있었던 소국인 草八國의 영역을 답습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록 12곡 중의 하나인 ‘사팔해’를 지금의 초계로 비정하는 것은 이설이 없다⁴⁾”.

“草溪郡의 고토에서 발견된 고분군으로는 쌍책면 성산리 옥전 고분군이 대표적인데, 지금의 초계면 중심지에는 고분군이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고분군은 인접한 쌍책면 남단에 존재한다. 나말여초의 혼란기를 지나 현 이름이 초계로 바뀌던 고려초의 시기나, 현이 합주(陝州, 합천읍)의 속현으로 떨어졌다가 고려 후기 명종때에 지방관인 감무를 설치할 때, 현의 치소를 행정 편의를 위해 약간 옮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초계는 고려시대 이후의 치소가 설치된 곳이고 신라시대의 초팔해현이나 팔계현의 치소는 소국 존재 당시의 군사적 목적과 관련하여 쌍책면 성산리 일대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쌍책면 일대는 조선시대까지도 초계의 영역에 속해 있었고 그곳에 조성된 고분군들은 초계평야를 방어하고 장악하는 무장적 지배세력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라에 의해 초팔국(산반하국)이 통합되어 재편되기 전에는 초계지방의 중심지가 지역 방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로를 감시하고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황강 수로를 통제할 수 있는 쌍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행정구역명에 유인되어 이를 합천군 지방의 다라국과 연결짓는 것은 잘못이다⁵⁾”.

상기한 바와 같이 문헌사학자들은 대부분 쌍책면 옥전고분군을 초팔해국(사팔해국,산반하국)과 관련되는 것이지 다라국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라국이 쌍책면에 있었다면 거기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가야 소국인 초팔국(산반하국)이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한다. 즉, 가야의 두 나라의 중심부(국읍)가 그렇게 인접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⁶⁾.

2) 고분의 규모와 위세품

다라국은 『日本書紀』에 따르면 가라, 안라 다음의 제3위의 위세를 보여주기에 고고자료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력 동원과 직결되는 고총의 규모로 보면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함께 규모가 가장 큰 고분군은 합천 삼가고분군이다. 옥전 고분군의 규모는 삼가고분군의 1/10에 불과하다(표 1).

연구』61 ; 박성현, 2019, 「가야 諸國의 공간 구조와 城」, 『다라국의 도성 성산』, 합천군.

3) 박성현, 2019, 앞의 논문, 83쪽.

4) 김태식,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3권), 푸른역사, 145쪽.

5) 김태식,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3권), 푸른역사, 145-150쪽.

6) 김태식,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3권), 푸른역사, 144쪽.

(표 1) 가야 주요 고총 고분군 일람표⁷⁾

고분군	고분 기수	고분 직경	묘곽 길이	매장주체부의 특징	편년
고령 지산동 고분군	704기	30-47m 6기 30-20m 13기 20-15m 18기 15-10m 85기 10m미만 582기	44호분 9.4m 45호분 7.1m 75호분 6.9m 73호분 4.5m	11자형 혹은 T자형 주부곽식 순장곽 순장 순장자: 2-37인	5 세 기 초-6세 기중엽
함안 말이산 고분군	127기의 고 총 , 수 백 기 의 중소형분	30-35m 3기 20-30m 13기 10-20m 30기이 상	9m이상 초대형 6-9m 대형 4-6m 중형 4m이하 소형	대형 석곽묘 구조: 유물부장공간-피장자공간-순장자공 간 주곽 순장, 들보시설 순장자: 2-5인 목관(49기), 목곽(90기), 수혈식석곽(60 여기), 횡혈식석실(5기) 발굴	5 세 기 초-6세 기중엽
합천 옥전 고분군	27기	10-22m	M3호분 주곽 5.2m, 부곽 4.6m M4호분 9.5m M6호분 5.8m	순장곽 1기(M6호분) 목관(15기), 목곽(104기), 수혈식석곽 (60기), 횡구·횡혈식석실묘(3기) 발굴 격벽있는 주부곽 대형위석목곽묘가 특징(5세기후반)	5 세 기 후반-7 세기
합천 삼가 고분군	328기	30m이상11기 30-20m 20기 20-10m142기 10m미만115기	II - 8 호 목 곽 6.9m 24호주곽 8.3m	목관묘(10기), 목곽묘(47기), 석곽묘 (118기), 봉토분(43기)발굴	5 세 기 후반-7 세기

그런데, 옥전 고분군이 부각된 것은 먼저 발굴조사되고, 탁월한 유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옥전고분군에 위세품이 많이 부장된 것은 신라와 대가야의 중간에 위치한 교역상의 지정학적 이점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고분군의 규모나 크기·지속성으로 보면 삼가고분군에 미치지 못한다. 삼가고분군의 경우, 옥전고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 고총이 많지만 초대형의 고총(11기)은 발굴되지 않았고 기 발굴된 고분은 도굴이 극심하여 유물이 빈약하다.

환두대도·로만글래스·금제이식 등의 출토유물로 보면 옥전고분군이 오히려 지산동고분군보다 위세품의 빈도가 더 높다. 예컨대, 금제이식의 경우, 고령 지산동에는 5개고분(13묘곽)에서 16쌍의 이식이, 옥전에서는 18개고분에서 24쌍의 이식이 확인되었다.⁸⁾ 하지만, 이러한 위세품에 근거해 옥전세력이 고령세력보다 더 상위의 집단이었다고 논하는 연구자는 없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경우, 옥전고분군과 달리 고총의 규모가 두드러져 일제강점기 이래로 도굴의 피해가 극심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야 여러 나라의 위상은 고총의 규모·수·문헌기사 등을 종합해야 한다. 옥전 고총의 크기나 고분군의 규모는 지산동 고분군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표1 참조). 옥전고분군에서 로만글래스 등 신라에서 들어온 유물이 적지 않은 것은 대가야와 신라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와 교류의 결절지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바 크다.

7) 이동희, 2021, 「다라국 위치의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38호

8) 이한상, 2019, 「관과 이식으로 본 대가야 권역」,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고령군, 271-280쪽.

3) 대가야(가라)와의 관련성으로 본 다라국의 위치

옥전 고분군은 고유의 묘제인 대형의 보강식 목곽묘를 축조하지만 토기가 고령양식토기 양식으로 변하는 M3호분 단계인 5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점차 대가야식의 수혈식 석곽묘로 변화되고 M4·6호분 단계가 되면 대가야양식 토기 일색이 된다. 따라서 5세기후반부터는 옥전세력은 고령 대가야의 정치적 통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⁹⁾

이처럼, 옥전고분군에서 5세기 후반이후에 다량의 대가야계 유물이 출토되고 묘제도 수용되는 상황에서 타 유적에 비해 고총 규모와 수가 적은 것은 대가야 통제 속의 상황을 암시한다. 지리적으로 고령과 인접하고 독립성이 약한 옥전 세력을 독자성이 강하고 가라·안라 다음의 3위의 가야 대국인 다라국에 비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같은 합천 권역에 속하고 고총 규모가 서부 경남 소가야권에서 가장 큰 삼가고분군을 다라국으로 볼 수 있다. 즉, 삼가고분군은 5세기후반대까지 소가야문화권에 속했다가 6세기이후에 점차 대가야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옥전세력보다는 독자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륵 12곡¹⁰⁾에 등장하는 10개 나라는 대가야와 긴밀한 정치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당 나라들은 거창·남원·합천·의령·사천 등 경남 서북부권 및 호남 동부권으로서 대가야의 세력권에 속해 대가야 양식의 토기·금제 이식이 출토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5세기후반부터 대가야유물과 대가야식 묘제가 적지 않게 확인되는 옥전고분군은 우륵 12곡 중 하나인 사팔해국으로 비정이 가능하지만, 5세기대까지 소가야연맹의 중심이면서 독자성이 강한 삼가고분군은 특별한 존재이다. 공간적으로도 옥전고분군은 고령과 인접한 합천의 북동쪽 황강변이고, 삼가고분군은 합천의 가장 남쪽의 남강유역이다.

대가야토기 뿐만 아니라 대가야 양식의 금제이식이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합천 옥전고분군에 집중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륵 12곡에서의 친연관계에서 유추되듯이 대가야와 사팔해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옥전고분군은 다라국으로 보기 어렵다. 옥전세력은 공간적으로 고령과 너무 인접해 있어 대가야 연맹의 맹주국인 고령의 통제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이다. 이에 비해, 고령에서 더 멀리 떨어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삼가세력은 독자성이 뚜렷한 다라국일 가능성이 높다. 삼가고분군에서는 아직 대가야계 이식이 확인된 바 없다¹¹⁾.

2.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의 축조 배경

발표자는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을 고구려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물론 삼국시대 벽화고분이 가장 성행한 국가는 고구려이지만, 고아동 벽화고분을 바로 고구려와 연결시킬 수는 없다.

9) 김세기, 2014, 「낙동강 중상류지역 가야문화」, 『가야문화권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218-219쪽.

10) 『三國史記』卷32 雜志1 樂志 加耶琴條. “于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達已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奇物 八曰師子伎 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曰爾赦 十二曰上奇物”

11) 이동희, 2021, 「다라국 위치의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38호

고아동 벽화고분은 구조상 무령왕릉과 공주 송산리 6호분·29호분 등과 유사하여 백제의 6세기 전반 전축분계 석실분의 영향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그 조영시기는 봉토 출토 대가야양식 토기와 석실의 구조로 볼 때 6세기 중엽경으로 파악된다.

고아동벽화고분은 돌방무덤이면서도 구조는 백제 공주시대의 전축분(벽돌무덤)을 따르고 있다. 6세기 중엽은 백제의 후원을 받으며 신라의 압박에 대항하던 대가야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는 시기이다. 현재, 연꽃무늬와 구름무늬 일부가 남아 있을 뿐이다. 연꽃무늬의 넓고 둥근 꽃잎, 물방울형 꽃술 등은 백제계 연꽃무늬의 일반적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무덤 구조 뿐 아니라 벽화 내용과 표현 기법도 백제로부터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의 벽화 고분으로는 공주 송산리6호분(松山里6號墳) 및 부여 능산리벽화고분(陵山里壁畫古墳)이 있다. 송산리6호분에서는 사신(四神)의 흔적만 확인되었지만, 능산리벽화고분에서는 꽃잎이 넓고 끝이 비교적 부드러우며 원점형(圓點形) 꽃술을 지닌 연꽃이 확인된다. 백제가 고구려 벽화고분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의 벽화고분은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옥전 M1호분 출토 로만글라스의 유입 배경

합천 옥전 M1호분은 봉분 직경 21.4m로서 옥전고분군 가운데 최대분 중 하나이다. 5세기중엽으로 편년되고, 다수의 순장곽과 로만글라스(Roman-Glass)가 출토되어 최고 수장묘이다.

발표자는 당시 우호 관계에 있던 고구려가 가야에 사여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기존에 옥전고분군 출토 로만글라스를 신라로부터 이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1호분 출토 로만글라스는 원형 반점과 같은 돌출문을 붙여 장식한 유리완이다. 이 고분에서는 다수의 창녕산 토기와 신라 마구가 출토되어 낙동강 대안의 창녕 비사벌의 중계를 통하여 이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같은 형식의 유리완이 금령총에서 2점 출토되었고,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로만글라스가 확인된 곳이 신라지역이라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¹²⁾.

이와 관련하여 일본 출토 로만글라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유적이 나라현 니이자와센즈카(新澤千塚) 126호분으로, 로만글라스인 유리제 완(碗), 유리제 명(皿)이 출토되었다. 니이자와센즈카(新澤千塚) 126호분은 5세기중엽에 조영되었는데, 공반유물이 주목된다¹³⁾. 즉, 금제 수식부 귀걸이와 금제 반지는 유사한 형식이 경주의 황남대총 북분과 남분에서 각기 출토되었고, 유리완도 금령총 등 경주 고분에서 다수 확인된다. 청동제 울두도 경주 황오동 4호분 등에서 출토되고, 금동제 대장식금구도 신라계의 쌍엽문으로 장식된 것이다. 니이자와센즈카(新澤千塚) 126호분은 당시 일본열도에서 소형묘에 해당하지만 화려한 문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장된 한반도산 문물이 대부분 경주 고분 출토품과 흡사한 점에서 신라에서 이주한 왕족이나 귀족으로 볼 수 있다¹⁴⁾. 당시 고구려-왜 사이의 국제정세로 보면, 니이자와센즈카(新澤千塚)

12) 박천수, 2018, 『가야 문명사』, 진인진

13)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1977, 『新澤千塚126號墳』

14) 박천수, 2021, 『실크로드 문명교류사 서설(1 초원로)』, 진인진

126호분 출토 로만글라스는 고구려에서 선물로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